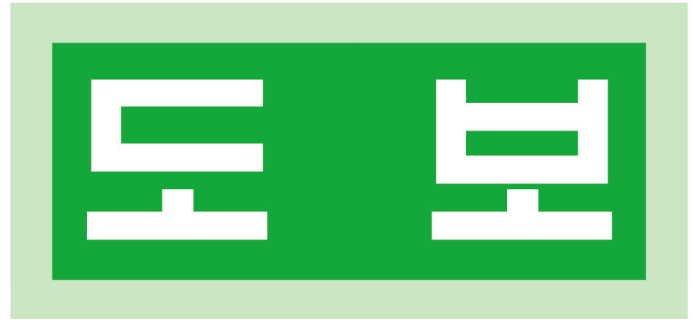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062 호

2024. 2. 29(목)

입 법 예 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3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78호 접도구역 결정(변경) 고시 20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0호 도문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준공인가 고시 2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3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22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4호 금계천 하천점용허가(무명교2) 고시 55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5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56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6호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60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8호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7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9호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8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0호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96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1호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106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2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완충녹지, 대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고시 ... 117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3호 무석지구 다목적농촌융수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120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4호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121

회								
람								

발행: 대 변 인 실(TEL: 033-249-2054, FAX: 033-249-4091)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48호	국도56호선 광원5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외 1개소 정비사업 제안서 정성적평가 결과 공고	143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4-02호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1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37호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38호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67

시 군 행 정

원주시 고시 제2024-61호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9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4
원주시 고시 제2024-62호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195
삼척시 고시 제2024-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196
삼척시 고시 제2024-4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199
삼척시 고시 제2024-50호	조비천 재해 예방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203
횡성군 공고 제2024-373호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7)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안) 열람 · 공고	207
횡성군 공고 제2024-379호	횡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37호)사업 실시계획 인가(안) 열람 · 공고	209
영월군 고시 제2024-4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211
영월군 고시 제2024-45호	영월 군계획시설(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212
고성군 공고 제2024-213호	고성 군계획시설(도로: 토성도시계획도로 소2-26)사업 공사완료 공고	214
양양군 공고 제2024-194호	주청리 군관리계획[시설도로(중로1류)] 확 · 포장공사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215
양양군 공고 제2024-203호	양양 군계획시설(시설: 시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218

입 법 예 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3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근거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상 법령 인용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 과학기술기본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제2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근거법 변경
 - － 제3조: 센터에 비용 출연 또는 보조 근거법 변경
- (공무원 파견근거 삭제) 과학기술기본법 → 삭제
 - － 제4조: 상위법령 근거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상 인용부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일자리과
- 전 화: 033-249-3241
- 팩 스: 033-249-4046
- 이메일: wjaew@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을 “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하거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을 “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과학기술기초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된 전담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 -----.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과학기술기초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관련 사무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과학기술기초법 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4조(행정지원 등) ① ----- ----- 할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작성 서식

☐ 작 성 자 : 소속 / 성명 / ☎ 000-000-0000

☐ 검토의견

조례 제정안	수 정 안	검토의견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2024. 1. 25.)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안 제6조의2)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

②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개선 (안 별표 5의3)

○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 자격기준 개선

－ (현행) 일부 자격기준에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규정

－ (개선)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졸업자 등)’로 수정

○ 민간근무 경력자(과장급 이상) 임용 시, 응시요건 개선

－ (현행)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근무 경력은,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요구되어야 하나, 조문 문구 불분명

－ (개선)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

○ 학위기준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임용 시, 응시요건 개선

－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경력)뿐만 아니라, 9호에 따른 자격기준(학위)시에도 관리자 근무 경력을 응시 요건으로 규정

－ (개선)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학위)에 대해서는 관리자 근무 경력 요구 폐지

조 항	개 정 내 용	시 행 일
제6조의2 (응시수수료)	-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	발령일 ※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
별표 제5의3	-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졸업자등)’로 수정	
	-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 ▶ 9호 경력(학위)에 대해서는 관리자 근무 경력 요구 폐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전 화 : 033-249-2218
- F A X : 033-249-4022
- E-mail : lhk5874@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참고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② (생략)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u>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u>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6.10., 2023.11.3., 2024.0.0.>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 락 처 :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연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국지도	88호선	하남~영양선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967-1, 967-3	-	도로구역 일부 변경 (편입면적 증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일부 변경(증 143㎡)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소유자	구분	비고
	계		2필지				
1	주천면	신일리	967-1	전	사유지	도로구역 추가편입(증 60㎡)	
2			967-3	답	사유지	도로구역 추가편입(증 83㎡)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 033-249-3421), 영월군 건설과(033-370-2570)

*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여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으로 갈음

첨부서류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2.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으로 갈음
------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78호

접도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국지도	노선번호	88호선	노선명	하남~영양선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및 범위	범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967-1, 967-3 구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일원				
접도구역 변경목적	민원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접도구역 변경				
비 고					

※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여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첨부서류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0호

도문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준공인가 고시

속초시에서 추진한 「도문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 업 명 : 도문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사업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문동 일원
3. 수혜면적 : 41ha
4. 사업목적 : 경지정리 지구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업생산력 향상
5. 사업내용 : 용수로 4조 L=1,663m, 배수로 2조 L=546m, 농로 1조 L=866m, 전석쌓기 A=156m²
6.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1,290 / 시군비 210)
7.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
8.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9. 기 타 : 준공도서 등 준공인가 관련서류 열람 및 문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243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 ☎ 033-639-2907)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3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적 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횡성군 학담1지구, 자포시내지구의 경미한 변경이 있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22년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사업

2. 변경내역

사업시행자 (지구명)	위 치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필지 수	면적 (㎡)	사업기간	필지 수	면적 (㎡)	사업기간	
횡성군수 (학담1지구)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8 일원	562	473,841.3	'22.1.1.~ ' 23.12.31.	598	474,225.0	'22.1.1.~ ' 24.12.31.	지구 내 분할 및 필지 추가에 따른 필지 수, 면적 변경
횡성군수 (자포시내지구)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79 일원	594	253,320.0	'22.1.1.~ ' 23.12.31.	596	253,320.0	'22.1.1.~ ' 24.12.31.	

3. 기 타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나.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지구지정(변경)토지조서										
〈횡성군〉										
구분	토지소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합계		2개지구		필지		727,161.3	1194필지		727,545.0	증38필지/증383.7㎡
소계		학담1지구		562필지		473,841.3	598필지		474,225.0	
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8	대	431.0	78	대	431.0	
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8-1	도로	147.0	78-1	도로	147.0	
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8-2	전	364.0	78-2	전	364.0	
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8-3	도로	70.0	78-3	도로	70.0	
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8-4	도로	21.0	78-4	도로	21.0	
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8-5	전	2.0	78-5	전	2.0	
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9-1	양어장	304.0	79-1	양어장	304.0	
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9-2	도로	57.0	79-2	도로	57.0	
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9-3	도로	811.0	79-3	도로	811.0	
1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9-4	도로	399.0	79-4	도로	399.0	
1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9-5	도로	55.0	79-5	도로	55.0	
1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0-1	양어장	807.0	80-1	양어장	807.0	
1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0-2	도로	43.0	80-2	도로	43.0	
1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0-3	도로	300.0	80-3	도로	300.0	
1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1-1	양어장	175.0	81-1	양어장	175.0	
1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1-2	도로	3.0	81-2	도로	3.0	
1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2-1	대	344.0	82-1	대	344.0	
1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2-2	도로	60.0	82-2	도로	60.0	
1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3-1	대	231.0	83-1	대	231.0	
2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3-2	대	1,055.0	83-2	대	1,055.0	
2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3-4	도로	20.0	83-4	도로	20.0	
2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3-5	대	66.0	83-5	대	66.0	
2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4	대	297.0	84	대	297.0	
2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4-2	대	202.0	84-2	전	202.0	
2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4-3	대	351.0	84-3	대	351.0	
2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5	대	519.0	85	대	519.0	
2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5-1	도로	7.0	85-1	도로	7.0	
2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6	전	489.0	86	전	489.0	
2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6-1	도로	552.0	86-1	도로	552.0	
3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7	도로	75.0	87	도로	75.0	
3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7-1	도로	100.0	87-1	도로	100.0	

3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8	도로	47.0	88	도로	47.0	
3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8-1	도로	26.0	88-1	도로	26.0	
3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89	전	321.0	89	전	321.0	
3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0	대	121.0	90	대	121.0	
3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0-1	도로	237.0	90-1	도로	237.0	
3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0-2	대	49.0	90-2	대	49.0	
3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1	도로	45.0	91	도로	45.0	
3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1-1	도로	178.0	91-1	도로	178.0	
4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1-2	전	197.0	91-2	전	197.0	
4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1-3	도로	86.0	91-3	도로	86.0	
4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2	전	571.0	92	전	571.0	
4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2-1	도로	417.0	92-1	도로	417.0	
4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2-2	도로	30.0	92-2	도로	30.0	
4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3	전	368.0	93	전	368.0	
4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3-1	도로	40.0	93-1	도로	40.0	
4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3-2	전	37.0	93-2	전	37.0	
4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3-3	전	41.0	93-3	전	41.0	
4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4	전	276.0	94	대	276.0	
5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4-1	도로	55.0	94-1	도로	55.0	
5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5-1	대	663.0	95-1	대	663.0	
5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5-2	도로	33.0	95-2	도로	33.0	
5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5-3	도로	483.0	95-3	도로	483.0	
5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5-4	도로	173.0	95-4	도로	173.0	
5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6	대	837.0	96	대	837.0	
5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6-1	구거	1,325.0	96-1	구거	1,325.0	
5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6-2	구거	91.0	96-2	도로	91.0	
5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6-3	대	343.0	96-3	전	343.0	
5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7	대	327.0	97	대	327.0	
6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8-1	답	1,966.0	98-1	답	1,966.0	
6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8-2	도로	36.0	98-2	도로	36.0	
6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8-3	도로	199.0	98-3	도로	199.0	
6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9-1	전	1,944.0	99-1	전	1,944.0	
6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9-2	도로	20.0	99-2	도로	20.0	
6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9-3	도로	54.0	99-3	도로	54.0	
6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99-4	전	91.0	99-4	전	91.0	
6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0-1	전	1,230.0	100-1	전	1,230.0	
6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0-2	전	1,050.0	100-2	전	1,050.0	
6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0-4	도로	112.0	100-3	도로	20.0	지구지정추가

7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0-5	도로	33.0	100-4	도로	112.0	
7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0-6	도로	249.0	100-5	도로	33.0	
7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2	전	583.0	100-6	도로	249.0	
7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3	전	919.0	101-2	도로	44.0	지구지정추가
7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4	잡종지	3,504.0	101-3	도로	12.0	지구지정추가
7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5	답	3,355.0	102-2	대	583.0	
7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6	답	5,694.0	102-3	전	919.0	
7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7	대	529.0	102-4	잡종지	3,504.0	
7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8	전	17.0	102-5	답	3,355.0	
7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9	전	250.0	102-6	답	5,694.0	
8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10	대	129.0	102-7	대	529.0	
8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11	대	88.0	102-8	전	17.0	
8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12	답	483.0	102-9	전	250.0	
8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13	대	939.0	102-10	전	129.0	
8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14	대	1,283.0	102-11	전	88.0	
8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15	전	1,134.0	102-12	전	483.0	
8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16	임야	1,874.0	102-13	답	939.0	
8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17	전	46.0	102-14	답	1,283.0	
8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19	전	75.0	102-15	전	1,134.0	
8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20	전	30.0	102-16	임야	1,874.0	
9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21	전	63.0	102-17	전	46.0	
9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22	잡종지	142.0	102-19	도로	75.0	
9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23	잡종지	56.0	102-20	도로	30.0	
9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24	잡종지	43.0	102-21	전	63.0	
9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25	전	215.0	102-22	도로	142.0	
9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26	전	20.0	102-23	도로	56.0	
9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27	도로	10.0	102-24	도로	43.0	
9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28	도로	17.0	102-25	도로	215.0	
9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29	임야	1,785.0	102-26	도로	20.0	
9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30	전	492.0	102-27	도로	10.0	
10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33	전	1,235.0	102-28	도로	17.0	
10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34	전	1,653.0	102-29	전	1,785.0	
10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35	전	387.0	102-30	전	492.0	
10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36	도로	96.0	102-33	전	1,235.0	
10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37	도로	87.0	102-34	전	1,653.0	
10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38	도로	10.0	102-35	전	387.0	
10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39	도로	117.0	102-36	도로	96.0	
10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40	도로	105.0	102-37	도로	87.0	

10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41	전	523.0	102-38	도로	10.0	
10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42	전	66.0	102-39	도로	117.0	
11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43	도로	13.0	102-40	도로	105.0	
11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2-44	전	70.0	102-41	도로	523.0	
11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3-1	전	6,365.0	102-42	도로	66.0	
11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3-2	대	129.0	102-43	도로	13.0	
11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3-3	도로	205.0	102-44	전	70.0	
11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3-4	임야	17.0	103-1	임야	6,365.0	
11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3-5	도로	254.0	103-2	대	129.0	
11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3-6	임야	1,231.0	103-3	도로	205.0	
11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3-7	도로	3.0	103-4	임야	17.0	
11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3-8	도로	4.0	103-5	도로	254.0	
12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3-9	전	285.0	103-6	임야	1,231.0	
12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3-10	임야	323.0	103-7	도로	3.0	
12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3-11	전	695.0	103-8	도로	4.0	
12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3-12	전	311.0	103-9	임야	285.0	
12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4-1	대	621.0	103-10	임야	323.0	
12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4-2	도로	53.0	103-11	전	695.0	
12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4-4	도로	78.0	103-12	창고용지	311.0	
12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4-6	대	878.0	104-1	대	621.0	
12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4-7	대	1,317.0	104-2	도로	53.0	
12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4-8	대	167.0	104-4	도로	78.0	
13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5-1	잡종지	339.0	104-6	목장용지	878.0	
13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5-2	임야	76.0	104-7	목장용지	1,317.0	
13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5-3	잡종지	489.0	104-8	목장용지	167.0	
13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5-4	임야	61.0	105-1	잡종지	339.0	
13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6	전	1,848.0	105-2	잡종지	76.0	
13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6-1	도로	473.0	105-3	잡종지	489.0	
13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7	대	334.0	105-4	잡종지	61.0	
13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8	대	399.0	106	전	1,848.0	
13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8-1	대	943.0	106-1	도로	473.0	
13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9	대	330.0	107	전	334.0	
14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9-1	전	304.0	108	대	399.0	
14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09-2	대	454.0	108-1	전	943.0	
14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0	대	169.0	109	대	330.0	
14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1	대	605.0	109-1	전	304.0	
14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2-2	잡종지	420.0	109-2	전	454.0	
14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3	학교용지	28,138.0	110	대	169.0	

14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3-1	도로	934.0	111	대	605.0	
14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3-2	도로	150.0	112-2	잡종지	420.0	
14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3-3	도로	217.0	113	학교용지	28,138.0	
14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3-4	도로	690.0	113-1	도로	934.0	
15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4-1	잡종지	377.0	113-2	도로	150.0	
15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4-2	잡종지	327.0	113-3	도로	217.0	
15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1	학교용지	31,613.0	113-4	도로	690.0	
15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2	전	490.0	114-1	잡종지	377.0	
15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9	학교용지	800.0	114-2	잡종지	327.0	
15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10	학교용지	254.0	115-1	잡종지	31,613.0	
15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11	학교용지	73.0	115-2	대	490.0	
15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12	전	978.0	115-9	도로	800.0	
15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13	잡종지	31,503.0	115-10	잡종지	254.0	
15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17	도로	668.0	115-11	잡종지	73.0	
16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18	대	127.0	115-12	전	978.0	
16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20	전	152.0	115-13	잡종지	31,503.0	
16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21	대	231.0	115-16	도로	10.0	지구지정추가
16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22	대	440.0	115-17	도로	668.0	
16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23	대	545.0	115-18	임야	127.0	
16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24	임야	21.0	115-20	임야	152.0	
16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25	전	442.0	115-21	대	231.0	
16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26	대	294.0	115-22	대	440.0	
16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27	대	109.0	115-23	대	545.0	
16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28	대	757.0	115-24	도로	21.0	
17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29	대	133.0	115-25	대	442.0	
17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30	대	493.0	115-26	대	294.0	
17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31	대	475.0	115-27	전	109.0	
17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33	대	268.0	115-28	대	757.0	
17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34	대	218.0	115-29	대	133.0	
17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35	전	341.0	115-30	전	493.0	
17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36	전	157.0	115-31	대	475.0	
17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37	도로	508.0	115-33	목장용지	268.0	
17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38	도로	229.0	115-34	목장용지	218.0	
17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39	대	297.0	115-35	전	341.0	
18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40	대	396.0	115-36	전	157.0	
18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41	대	270.0	115-37	도로	508.0	
18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42	도로	103.0	115-38	도로	229.0	
18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43	도로	132.0	115-39	전	297.0	

18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44	대	119.0	115-40	전	396.0	
18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45	대	119.0	115-41	전	270.0	
18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46	대	313.0	115-42	도로	103.0	
18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47	전	1,709.0	115-43	도로	132.0	
18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48	잡종지	1,914.0	115-44	대	119.0	
18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15-49	임야	86.0	115-45	대	119.0	
19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20-3	잡종지	347.0	115-46	목장용지	313.0	
19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34-1	도로	116.0	115-47	전	1,709.0	
19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34-2	도로	65.0	115-48	잡종지	1,914.0	
19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34-3	도로	112.0	115-49	임야	86.0	
19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34-4	도로	57.0	115-50	잡종지	590.0	지구지정추가
19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34-5	도로	24.0	120-3	잡종지	347.0	
19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35-1	도로	26.0	134-1	도로	116.0	
19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35-2	대	292.3	134-2	도로	65.0	
19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35-3	도로	69.0	134-3	도로	112.0	
19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35-5	도로	81.0	134-4	도로	57.0	
20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35-6	도로	46.0	134-5	도로	24.0	
20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54-2	구거	60.0	135-1	도로	26.0	
20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154-3	구거	50.0	135-3	도로	69.0	
20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27-1	잡종지	1,547.0	135-5	도로	81.0	
20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27-2	잡종지	9,260.0	135-6	도로	46.0	
20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27-3	잡종지	3,560.0	154-2	도로	60.0	
20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27-4	잡종지	2,771.0	154-3	도로	50.0	
20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27-5	잡종지	249.0	327-1	잡종지	1,547.0	
20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27-6	잡종지	184.0	327-2	잡종지	9,260.0	
20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29	잡종지	1,293.0	327-3	잡종지	3,560.0	
21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0	전	1,841.0	327-4	임야	2,771.0	
21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1	전	1,491.0	327-5	잡종지	249.0	
21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2-1	목장용지	1,299.0	327-6	잡종지	184.0	
21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2-2	도로	116.0	329	잡종지	1,293.0	
21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2-3	전	26.0	330	전	1,841.0	
21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2-4	잡종지	1,124.0	331	전	1,491.0	
21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2-5	답	585.0	332-1	목장용지	1,299.0	
21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2-6	목장용지	1,215.0	332-2	도로	116.0	
21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2-7	도로	75.0	332-3	전	26.0	
21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2-8	대	423.0	332-4	잡종지	1,124.0	
22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2-9	대	140.0	332-5	대	585.0	
22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2-10	임야	60.0	332-6	답	1,215.0	

22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3	전	1,156.0	332-7	도로	75.0	
22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3-1	전	224.0	332-8	대	423.0	
22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3-2	도로	120.0	332-9	임야	140.0	
22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3-3	도로	124.0	332-10	임야	60.0	
22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3-4	전	211.0	333	전	1,156.0	
22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4-1	전	2,458.0	333-1	대	224.0	
22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4-2	대	449.0	333-2	도로	120.0	
22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4-3	대	963.0	333-3	도로	124.0	
23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4-4	대	235.0	333-4	전	211.0	
23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4-5	대	775.0	334-1	전	2,458.0	
23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4-6	임야	576.0	334-2	대	449.0	
23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4-7	도로	112.0	334-3	전	963.0	
23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4-8	도로	27.0	334-4	전	235.0	
23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4-9	도로	81.0	334-5	대	775.0	
23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4-10	전	2,845.0	334-6	임야	576.0	
23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4-11	임야	235.0	334-7	도로	112.0	
23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4-12	도로	166.0	334-8	도로	27.0	
23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4-13	도로	190.0	334-9	도로	81.0	
24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5-1	대	543.0	334-10	전	2,845.0	
24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5-2	대	702.0	334-11	도로	235.0	
24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5-3	전	1,140.0	334-12	도로	166.0	
24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5-4	대	329.0	334-13	전	190.0	
24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5-5	대	122.0	335-1	대	543.0	
24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6-1	대	449.0	335-2	전	702.0	
24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6-2	도로	126.0	335-3	전	1,140.0	
24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6-3	도로	386.0	335-4	전	329.0	
24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6-4	대	512.0	335-5	전	122.0	
24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6-5	대	299.0	336-1	대	449.0	
25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6-6	도로	146.0	336-2	도로	126.0	
25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7	대	612.0	336-3	도로	386.0	
25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7-1	전	727.0	336-4	대	512.0	
25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7-2	대	397.0	336-5	전	299.0	
25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7-3	대	824.0	336-6	도로	146.0	
25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7-4	대	439.0	337	대	612.0	
25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8-1	전	1,294.0	337-1	전	727.0	
25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8-2	도로	149.0	337-2	대	397.0	
25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8-3	도로	273.0	337-3	대	824.0	
25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9-1	전	1,145.0	337-4	전	439.0	

26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9-2	도로	40.0	338-1	전	1,294.0	
26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39-3	전	614.0	338-2	도로	149.0	
26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0	대	445.0	338-3	도로	273.0	
26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0-1	대	348.0	339-1	전	1,145.0	
26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1	대	397.0	339-2	도로	40.0	
26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1-1	대	797.0	339-3	대	614.0	
26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1-2	전	773.0	340	대	445.0	
26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2	대	734.0	340-1	대	348.0	
26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3	대	1,302.0	341	대	397.0	
26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4	대	467.0	341-1	대	797.0	
27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4-1	도로	169.0	341-2	대	773.0	
27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4-2	대	1,014.0	342	전	734.0	
27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5	임야	225.0	343	전	1,302.0	
27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6	대	555.0	344	대	467.0	
27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7	임야	6,493.0	344-1	도로	169.0	
27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8	전	1,388.0	344-2	전	1,014.0	
27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9	대	602.0	345	임야	225.0	
27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49-1	구거	1,800.0	346	전	555.0	
27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0-1	대	438.0	347	임야	6,493.0	
27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0-2	도로	175.0	348	전	1,388.0	
28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0-3	대	2,624.0	349	대	602.0	
28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1-1	대	486.0	349-1	구거	1,800.0	
28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1-2	도로	3.0	350-1	대	438.0	
28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2-2	도로	102.0	350-2	도로	175.0	
28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2-3	도로	229.0	350-3	전	2,624.0	
28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3	전	153.0	351-1	대	486.0	
28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3-1	도로	95.0	351-2	도로	3.0	
28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4	전	617.0	352-2	도로	102.0	
28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5-1	전	1,171.0	352-3	도로	229.0	
28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5-2	전	826.0	353	전	153.0	
29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5-4	전	73.0	353-1	도로	95.0	
29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6	대	523.0	354	대	617.0	
29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6-1	대	221.0	355-1	전	1,171.0	
29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7-1	전	493.0	355-2	대	826.0	
29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7-2	도로	99.0	355-4	대	73.0	
29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7-3	도로	254.0	356	대	523.0	
29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8-1	대	188.0	356-1	전	221.0	
29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8-2	도로	13.0	357-1	전	493.0	

29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8-3	도로	147.0	357-2	도로	99.0	
29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8-4	대	208.0	357-3	도로	254.0	
30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8-5	대	279.0	358-1	창고용지	188.0	
30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8-6	대	1,479.0	358-2	도로	13.0	
30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59	임야	1,650.0	358-3	도로	147.0	
30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0	임야	620.0	358-4	전	208.0	
30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1-2	도로	76.0	358-5	도로	279.0	
30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1-3	도로	206.0	358-6	전	1,479.0	
30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1-4	임야	713.0	359	임야	1,650.0	
30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3-5	도로	63.0	360	대	620.0	
30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3-6	도로	106.0	361-2	도로	76.0	
30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3-7	도로	46.0	361-3	도로	206.0	
31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3-8	도로	22.0	361-4	전	713.0	
31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4-1	대	1,887.0	363-5	도로	63.0	
31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4-2	도로	23.0	363-6	도로	106.0	
31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4-5	도로	75.0	363-7	도로	46.0	
31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5-1	도로	115.0	363-8	도로	22.0	
31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5-2	도로	91.0	364-1	전	1,887.0	
31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5-3	도로	43.0	364-2	도로	23.0	
31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5-4	대	149.0	364-5	도로	75.0	
31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5-6	도로	123.0	365-1	도로	115.0	
31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5-7	도로	472.0	365-2	도로	91.0	
32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5-8	도로	1,245.0	365-3	도로	43.0	
32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5-9	도로	318.0	365-4	대	149.0	
32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5-10	도로	93.0	365-6	도로	123.0	
32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6	대	294.0	365-7	도로	472.0	
32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7	전	73.0	365-8	도로	1,245.0	
32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7-1	도로	256.0	365-9	도로	318.0	
32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7-2	도로	276.0	365-10	도로	93.0	
32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8-1	전	440.0	366	전	294.0	
32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8-2	도로	33.0	367	전	73.0	
32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9-1	답	634.0	367-1	도로	256.0	
33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9-2	도로	99.0	367-2	도로	276.0	
33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9-3	도로	333.0	368-1	대	440.0	
33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69-4	도로	250.0	368-2	도로	33.0	
33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70	답	46.0	369-1	답	634.0	
33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77	전	1,474.0	369-2	도로	99.0	
33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78-1	전	3,164.0	369-3	도로	333.0	

33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78-2	전	5,177.0	369-4	답	250.0	
33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79-1	대	660.0	370	답	46.0	
33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79-2	전	2,126.0	377	전	1,430.0	
33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79-3	대	1,241.0	377-1	전	44.0	377에서분할
34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0	대	2,220.0	378-1	전	2,656.0	
34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0-1	대	58.0	378-2	전	5,177.0	
34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1	전	1,590.0	378-3	전	508.0	378-1에서분할
34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1-1	도로	499.0	379-1	대	660.0	
34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2	전	1,064.0	379-2	전	2,119.0	
34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2-1	대	225.0	379-3	전	1,241.0	
34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4	대	660.0	379-4	전	7.0	379-2에서분할
34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4-1	도로	191.0	380	전	2,041.0	
34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4-2	대	723.0	380-1	도로	34.0	
34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5-1	전	4,924.0	380-2	전	169.0	380에서분할
35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5-2	전	1,514.0	380-3	전	10.0	380에서분할
35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5-3	도로	193.0	380-4	도로	24.0	380-1에서분할
35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5-4	도로	148.0	381	전	1,590.0	
35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5-5	도로	20.0	381-1	도로	499.0	
35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5-6	도로	54.0	382	전	1,064.0	
35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6	답	2,525.0	382-1	도로	225.0	
35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6-1	도로	47.0	384	대	660.0	
35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7	답	194.0	384-1	도로	191.0	
35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7-1	답	740.0	384-2	전	723.0	
35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7-2	도로	76.0	385-1	전	4,924.0	
36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7-3	도로	696.0	385-2	전	1,514.0	
36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9-1	구거	459.0	385-3	도로	193.0	
36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89-4	구거	14.0	385-4	도로	148.0	
36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2	전	725.0	385-5	전	20.0	
36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3-1	대	660.0	385-6	하천	54.0	
36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3-2	도로	46.0	386	답	2,525.0	
36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3-3	도로	170.0	386-1	도로	47.0	
36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3-4	대	423.0	387	대	131.0	
36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4-1	대	361.0	387-1	전	669.0	
36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4-2	전	1,412.0	387-2	하천	76.0	
37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4-3	도로	126.0	387-3	하천	696.0	
37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4-4	대	728.0	387-4	대	63.0	387에서분할
37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4-7	도로	68.0	387-5	전	71.0	387-1에서분할
37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5-1	전	1,308.0	389-1	구거	459.0	

37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5-2	전	1,716.0	389-4	구거	14.0	
37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5-3	도로	66.0	392	전	725.0	
37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5-4	전	40.0	393-1	대	660.0	
37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5-5	도로	11.0	393-2	도로	46.0	
37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6-1	전	902.0	393-3	도로	170.0	
37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6-2	전	1,588.0	393-4	전	423.0	
38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6-4	전	2,617.0	394-1	대	361.0	
38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6-5	전	981.0	394-2	목장용지	1,412.0	
38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8	전	685.0	394-3	도로	126.0	
38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399	전	143.0	394-4	전	728.0	
38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0-1	임야	664.0	394-7	도로	68.0	
38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0-2	대	582.0	395-1	전	1,308.0	
38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0-3	전	192.0	395-2	전	1,716.0	
38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0-4	전	3,617.0	395-3	도로	66.0	
38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0-5	답	1,428.0	395-4	전	40.0	
38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0-6	대	607.0	395-5	도로	11.0	
39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0-7	전	3,095.0	396-1	전	902.0	
39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0-8	대	350.0	396-2	공장용지	1,588.0	
39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0-9	대	1,195.0	396-4	전	2,617.0	
39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0-10	도로	1.0	396-5	전	981.0	
39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0-11	대	3,784.0	398	전	685.0	
39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1	임야	668.0	399	답	143.0	
39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2	전	2,231.0	400-1	전	664.0	
39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3	전	717.0	400-2	대	582.0	
39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4	전	4,385.0	400-3	전	192.0	
39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4-1	전	491.0	400-4	전	3,366.0	
40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5	전	241.0	400-5	전	1,428.0	
40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5-1	임야	116.0	400-6	대	607.0	
40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5-2	전	119.0	400-7	전	3,095.0	
40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6-1	전	649.0	400-8	답	350.0	
40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6-2	도로	274.0	400-9	전	1,195.0	
40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6-3	대	332.0	400-10	도로	1.0	
40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6-4	종교용지	744.0	400-11	전	3,780.0	
40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6-5	전	509.0	400-12	전	251.0	400-4에서분할
40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6-6	도로	315.0	400-13	전	4.0	400-11에서분할
40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6-7	도로	8.0	401	임야	668.0	
41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6-8	임야	644.0	402	전	2,223.0	
41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6-9	도로	359.0	402-1	전	8.0	402에서분할

41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6-10	도로	47.0	403	전	717.0	
41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6-11	도로	414.0	404	전	4,384.0	
41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6-12	도로	49.0	404-1	임야	99.0	
41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6-13	임야	190.0	404-2	전	1.0	404에서분할
41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6-14	전	744.0	404-3	임야	392.0	404-1에서분할
41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7-1	답	410.0	405	임야	241.0	
41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7-3	답	284.0	405-1	임야	116.0	
41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8	답	142.0	405-2	전	119.0	
42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8-1	도로	89.0	406-1	임야	649.0	
42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09	답	552.0	406-2	도로	274.0	
42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0-1	답	78.0	406-3	대	332.0	
42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0-4	도로	76.0	406-4	종교용지	744.0	
42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0-5	도로	71.0	406-5	전	509.0	
42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1	답	1,035.0	406-6	도로	315.0	
42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2-1	답	451.0	406-7	도로	8.0	
42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2-3	도로	108.0	406-8	대	644.0	
42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3	답	1,550.0	406-9	도로	359.0	
42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4	답	405.0	406-10	도로	47.0	
43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4-1	답	397.0	406-11	도로	414.0	
43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4-2	답	2,340.0	406-12	도로	49.0	
43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4-3	답	374.0	406-13	임야	190.0	
43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4-4	도로	53.0	406-14	전	744.0	
43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4-5	도로	3.0	407-1	답	373.0	
43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4-6	도로	194.0	407-3	답	233.0	
43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4-7	도로	50.0	407-4	답	33.0	407-1에서분할
43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4-8	도로	108.0	407-5	답	4.0	407-1에서분할
43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5	전	2,740.0	407-6	답	8.0	407-3에서분할
43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5-1	전	258.0	407-7	답	43.0	407-3에서분할
44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6	전	552.0	408	답	1,543.0	
44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6-1	도로	367.0	408-1	하천	89.0	
44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7	전	1,061.0	408-2	답	258.0	408에서분할
44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8	전	568.0	408-3	답	6.0	408에서분할
44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8-1	대	327.0	410-4	도로	76.0	
44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8-3	대	724.0	410-5	도로	71.0	
44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8-4	대	335.0	412-1	답	451.0	
44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9	전	2,020.0	412-3	도로	108.0	
44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19-1	도로	92.0	413	전	1,550.0	
44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0	전	1,385.0	414	창고용지	405.0	

45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1	답	724.0	414-1	대	365.0	
45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2	답	2,017.0	414-2	전	2,340.0	
45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3	전	3,950.0	414-3	전	352.0	
45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3-1	도로	179.0	414-4	하천	53.0	
45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4	전	379.0	414-5	하천	3.0	
45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4-1	도로	41.0	414-6	하천	194.0	
45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5	전	546.0	414-7	하천	50.0	
45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5-1	대	708.0	414-8	하천	108.0	
45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5-2	대	113.0	414-9	대	32.0	414-1에서분할
45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5-3	도로	413.0	414-10	전	22.0	414-3에서분할
46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5-4	도로	109.0	415	전	2,740.0	
46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5-5	공장용지	1,121.0	415-1	전	258.0	
46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5-6	전	826.0	416	전	522.0	
46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5-7	대	405.0	416-1	하천	367.0	
46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6	대	208.0	416-2	전	30.0	416에서분할
46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6-1	대	450.0	417	전	1,038.0	
46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6-2	대	28.0	417-1	전	23.0	지구지정추가
46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6-3	대	159.0	418	전	512.0	
46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6-4	도로	895.0	418-1	대	327.0	
46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6-5	도로	191.0	418-3	목장용지	724.0	
47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7-1	대	64.0	418-4	대	335.0	
47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7-4	대	65.0	418-5	전	56.0	지구지정추가
47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7-5	도로	47.0	419	전	1,951.0	
47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7-6	도로	394.0	419-1	하천	92.0	
47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7-7	도로	94.0	419-2	전	69.0	419에서분할
47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8-1	대	862.0	420	전	1,385.0	
47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8-3	대	450.0	421	전	699.0	
47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8-4	대	434.0	421-1	전	25.0	421에서분할
47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8-5	대	631.0	422	답	2,017.0	
47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8-6	대	462.0	423	전	3,950.0	
48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8-7	전	251.0	423-1	도로	179.0	
48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8-8	대	630.0	424	전	379.0	
48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8-10	대	1,013.0	424-1	도로	41.0	
48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8-11	대	19.0	425	전	546.0	
48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8-12	전	138.0	425-1	대	708.0	
48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8-14	도로	56.0	425-2	대	113.0	
48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8-15	도로	26.0	425-3	도로	413.0	
48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8-16	대	131.0	425-4	도로	109.0	

48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9-1	대	1,215.0	425-5	공장용지	1,121.0	
48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9-5	전	911.0	425-6	전	826.0	
49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9-7	대	386.0	425-7	전	405.0	
49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9-11	도로	189.0	426	대	208.0	
49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9-13	도로	338.0	426-1	대	450.0	
49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9-14	도로	225.0	426-2	도로	28.0	
49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9-15	도로	136.0	426-3	대	159.0	
49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9-16	도로	189.0	426-4	도로	895.0	
49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29-17	도로	212.0	426-5	도로	191.0	
49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30-1	대	1,239.0	427-1	전	64.0	
49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30-5	도로	329.0	427-4	대	65.0	
49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30-6	도로	45.0	427-5	도로	47.0	
50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31-3	대	124.0	427-6	도로	394.0	
50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31-5	도로	180.0	427-7	도로	94.0	
50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32-3	도로	20.0	428-1	대	862.0	
50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33-3	전	947.0	428-3	대	450.0	
50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33-6	도로	712.0	428-4	대	434.0	
50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34-3	전	1,829.0	428-5	대	631.0	
50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34-9	전	20.0	428-6	대	462.0	
50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34-10	전	3.0	428-7	대	251.0	
50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69-15	대	6.0	428-8	대	630.0	
50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69-18	도로	30.0	428-10	대	1,013.0	
51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69-22	도로	454.0	428-11	대	19.0	
51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69-24	도로	129.0	428-12	대	138.0	
51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69-29	도로	73.0	428-14	도로	56.0	
51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69-31	도로	58.0	428-15	도로	26.0	
51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550	전	1,831.0	428-16	대	131.0	
51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564-1	대	801.0	429-1	잡종지	1,215.0	
51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564-2	도로	463.0	429-5	전	911.0	
51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564-3	도로	85.0	429-7	전	386.0	
51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565-1	대	5,266.0	429-11	도로	189.0	
51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565-3	도로	552.0	429-13	도로	338.0	
52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2-79	도로	328.0	429-14	도로	225.0	
52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2-96	임야	459.0	429-15	도로	136.0	
52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2-97	임야	1,111.0	429-16	도로	189.0	
52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2-104	도로	16,851.0	429-17	도로	212.0	
52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2-108	도로	4,445.0	430-1	답	1,239.0	
52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5-1	임야	510.0	430-5	도로	329.0	

52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5-2	임야	424.0	430-6	도로	45.0	
52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5-3	도로	20.0	431-3	전	124.0	
52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5-4	도로	137.0	431-5	도로	180.0	
52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5-7	도로	43.0	432-3	도로	20.0	
53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5-9	도로	8,390.0	433-3	공장용지	947.0	
53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	도로	1,400.0	433-6	도로	712.0	
53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1	잡종지	523.0	434-3	전	1,829.0	
53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2	도로	42.0	434-9	전	20.0	
53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3	도로	28.0	434-10	전	3.0	
53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4	도로	42.0	469-15	전	6.0	
53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5	도로	135.0	469-18	도로	30.0	
53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6	도로	71.0	469-22	도로	454.0	
53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7	도로	1,226.0	469-24	도로	129.0	
53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8	도로	23.0	469-29	도로	73.0	
54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9-1	도로	96.0	469-31	도로	58.0	
54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9-2	도로	49.0	550	전	1,717.0	
54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9-4	도로	257.0	550-1	전	114.0	550에서분할
54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9-5	도로	4.0	564-1	대	801.0	
54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9-6	도로	60.0	564-2	도로	463.0	
54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	도로	515.0	564-3	도로	85.0	
54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1	도로	44.0	565-1	전	5,266.0	
54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4	도로	33.0	565-3	도로	552.0	
54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5	도로	8.0	722-79	도로	328.0	
54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6	도로	84.0	722-96	하천	459.0	
55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7	도로	66.0	722-97	하천	1,111.0	
55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8	전	70.0	722-104	하천	16,851.0	
55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9	도로	924.0	722-108	하천	4,445.0	
55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10	임야	105.0	725-1	전	413.0	
55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33-1	임야	12,802.0	725-2	전	395.0	
55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33-4	임야	1,686.0	725-3	도로	20.0	
55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33-8	임야	106.0	725-4	도로	137.0	
55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35	임야	6,248.0	725-7	도로	43.0	
55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07-4	전	4,354.0	725-9	도로	8,390.0	
55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07-7	전	996.0	725-10	전	11.0	725-1에서분할
56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07-8	전	1,653.0	725-11	전	86.0	725-1에서분할
56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07-9	임야	1,448.0	725-12	전	29.0	725-2에서분할
56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07-10	전	1,608.0	728	도로	1,400.0	

56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1	잡종지	523.0	
56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2	도로	42.0	
56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3	도로	28.0	
56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4	도로	42.0	
56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5	도로	135.0	
56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6	도로	71.0	
56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7	도로	1,226.0	
57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8-8	도로	23.0	
57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9-1	도로	96.0	
57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9-2	하천	49.0	
57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9-4	도로	257.0	
57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9-5	도로	4.0	
57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29-6	하천	60.0	
57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	도로	515.0	
57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1	도로	44.0	
57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4	도로	33.0	
57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5	도로	8.0	
58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6	도로	84.0	
58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7	도로	66.0	
58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8	도로	70.0	
58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9	도로	924.0	
58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30-10	도로	105.0	
58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33-1	임야	12,802.0	
58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33-4	임야	1,025.0	
58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33-8	임야	106.0	
588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33-9	임야	661.0	산33-4에서분할
589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35	임야	6,248.0	
590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07-4	임야	3,278.0	
591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07-7	임야	996.0	
592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07-8	임야	1,653.0	
593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07-9	임야	948.0	
594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07-1 0	임야	1,580.0	
595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07-1 6	임야	405.0	산107-4에서분할
596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07-1 7	임야	671.0	산107-4에서분할
597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07-1 8	임야	500.0	산107-9에서분할

598	횡성군	공근면	학답리				산107-1 9	임야	28.0	산107-10에서분할
소계	자포시내지구			594필지		253,320.0	596필지		253,320.0	
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79	대	400.0	379	대	400.0	
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79-1	답	1,765.0	379-1	답	1,765.0	
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79-2	제방	2,312.0	379-2	제방	2,312.0	
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79-3	대	660.0	379-3	대	660.0	
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79-4	제방	2,760.0	379-4	제방	2,760.0	
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79-5	전	2,405.0	379-5	전	2,405.0	
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79-6	대	1,655.0	379-6	전	1,655.0	
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0	대	280.0	380	대	280.0	
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0-1	대	368.0	380-1	창고용지	368.0	
1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0-2	대	67.0	380-2	전	67.0	
1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0-3	제방	227.0	380-3	제방	227.0	
1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0-4	제방	1,041.0	380-4	제방	1,041.0	
1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1	대	1,795.0	381	전	1,795.0	
1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1-1	제방	192.0	381-1	제방	192.0	
1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2	대	2,018.0	382	전	2,018.0	
1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2-1	제방	722.0	382-1	제방	722.0	
1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3	전	3,616.0	383	전	3,616.0	
1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3-1	제방	5,141.0	383-1	제방	5,141.0	
1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1	대	353.0	384-1	대	353.0	
2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2	대	136.0	384-2	대	136.0	
2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3	제방	2,060.0	384-3	수도용지	2,060.0	
2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4	대	899.0	384-4	전	899.0	
2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5	전	632.0	384-5	전	632.0	
2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6	제방	233.0	384-6	전	233.0	
2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7	대	145.0	384-7	대	145.0	
2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8	대	943.0	384-8	전	943.0	
2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9	제방	281.0	384-9	전	281.0	
2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10	대	490.0	384-10	전	490.0	
2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11	대	472.0	384-11	전	472.0	
3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14	임야	396.0	384-14	임야	396.0	
3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15	제방	507.0	384-15	임야	507.0	
3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16	전	724.0	384-16	전	724.0	
3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18	제방	149.0	384-18	전	149.0	
3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19	제방	5,768.0	384-19	임야	5,768.0	
3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20	제방	141.0	384-20	임야	141.0	

3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21	제방	493.0	384-21	임야	493.0	
3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22	제방	1,109.0	384-22	임야	1,109.0	
3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23	전	406.0	384-23	임야	406.0	
3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24	제방	7.0	384-24	대	7.0	
4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25	임야	296.0	384-25	대	296.0	
4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26	임야	313.0	384-26	도로	313.0	
4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27	임야	4,456.0	384-27	과수원	4,456.0	
4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28	임야	1,087.0	384-28	임야	1,087.0	
4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29	임야	116.0	384-29	대	116.0	
4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30	대	913.0	384-30	임야	913.0	
4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4-31	임야	455.0	384-31	임야	455.0	
4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1	대	292.0	385-1	대	292.0	
4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2	제방	9.0	385-2	대	9.0	
4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3	대	1,481.0	385-3	전	1,481.0	
5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4	대	275.0	385-4	대	275.0	
5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6	대	257.0	385-6	대	257.0	
5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7	대	461.0	385-7	대	461.0	
5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8	제방	33.0	385-8	대	33.0	
5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9	제방	340.0	385-9	전	340.0	
5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10	대	383.0	385-10	전	383.0	
5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11	제방	2.0	385-11	대	2.0	
5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12	제방	26.0	385-12	전	26.0	
5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13	제방	54.0	385-13	전	54.0	
5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14	제방	74.0	385-14	대	74.0	
6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15	제방	20.0	385-15	대	20.0	
6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16	제방	76.0	385-16	전	76.0	
6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17	대	627.0	385-17	대	627.0	
6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5-18	대	210.0	385-18	대	210.0	
6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	전	208.0	386	전	208.0	
6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1	대	1,767.0	386-1	대	1,767.0	
6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2	대	1,488.0	386-2	대	1,488.0	
6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3	제방	23.0	386-3	전	23.0	
6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4	전	95.0	386-4	전	95.0	
6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5	제방	183.0	386-5	도로	183.0	
7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6	전	369.0	386-6	전	369.0	
7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7	제방	29.0	386-7	전	29.0	
7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8	대	201.0	386-8	대	201.0	
7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9	제방	110.0	386-9	전	110.0	

7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10	제방	67.0	386-10	전	67.0	
7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11	대	8.0	386-11	대	8.0	
7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12	제방	36.0	386-12	전	36.0	
7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13	제방	68.0	386-13	전	68.0	
7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14	대	1.0	386-14	대	1.0	
7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15	제방	45.0	386-15	전	45.0	
8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16	전	76.0	386-16	전	76.0	
8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6-17	대	29.0	386-17	대	29.0	
8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7-1	전	328.0	387-1	전	328.0	
8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7-2	제방	47.0	387-2	답	47.0	
8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7-3	제방	278.0	387-3	전	278.0	
8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7-4	제방	98.0	387-4	전	98.0	
8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7-5	전	416.0	387-5	전	416.0	
8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7-6	제방	86.0	387-6	전	86.0	
8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7-7	제방	43.0	387-7	전	43.0	
8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7-8	제방	147.0	387-8	답	147.0	
9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7-9	전	1,289.0	387-9	전	1,289.0	
9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7-10	제방	3.0	387-10	답	3.0	
9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1	답	774.0	388-1	답	774.0	
9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2	학교용지	3,584.0	388-2	학교용지	3,584.0	
9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4	제방	2,606.0	388-4	제방	2,606.0	
9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5	대	3,802.0	388-5	전	3,802.0	
9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6	임야	175.0	388-6	수도용지	175.0	
9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7	전	444.0	388-7	전	444.0	
9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8	제방	343.0	388-8	도로	343.0	
9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9	제방	333.0	388-9	제방	333.0	
10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10	제방	608.0	388-10	도로	608.0	
10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11	제방	120.0	388-11	제방	120.0	
10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12	학교용지	1,873.0	388-12	하천	1,873.0	
10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13	제방	1,704.0	388-13	제방	1,704.0	
10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14	제방	1,566.0	388-14	도로	1,566.0	
10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15	제방	288.0	388-15	학교용지	288.0	
10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16	제방	3,350.0	388-16	대	3,350.0	
10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17	학교용지	14,256.0	388-17	학교용지	14,256.0	
10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18	제방	322.0	388-18	학교용지	322.0	
10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19	제방	122.0	388-19	대	122.0	
11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20	제방	130.0	388-20	대	130.0	
11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21	제방	301.0	388-21	학교용지	301.0	

11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22	제방	31.0	388-22	대	31.0	
11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23	제방	310.0	388-23	답	310.0	
11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8-24	답	473.0	388-24	답	473.0	
11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89	대	664.0	389	대	664.0	
11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1	전	456.0	391	전	456.0	
11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2	학교용지	8,287.0	392	학교용지	8,287.0	
11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1	제방	2,488.0	393-1	도로	2,488.0	
11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3	대	87.0	393-3	대	87.0	
12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4	학교용지	936.0	393-4	학교용지	936.0	
12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5	대	63.0	393-5	대	63.0	
12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7	대	20.0	393-7	대	20.0	
12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8	제방	78.0	393-8	도로	78.0	
12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9	대	66.0	393-9	대	66.0	
12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10	제방	19.0	393-10	도로	19.0	
12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11	제방	52.0	393-11	도로	52.0	
12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12	대	35.0	393-12	대	35.0	
12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13	제방	29.0	393-13	도로	29.0	
12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14	대	23.0	393-14	대	23.0	
13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15	제방	29.0	393-15	도로	29.0	
13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16	제방	7,923.0	393-16	하천	7,923.0	
13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17	전	402.0	393-17	전	402.0	
13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18	전	133.0	393-18	전	133.0	
13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19	대	194.0	393-19	전	194.0	
13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20	대	211.0	393-20	전	211.0	
13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21	대	26.0	393-21	대	26.0	
13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22	대	20.0	393-22	대	20.0	
13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23	대	4.0	393-23	대	4.0	
13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24	대	14.0	393-24	대	14.0	
14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3-25	대	3.0	393-25	대	3.0	
14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4-1	대	132.0	394-1	대	132.0	
14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4-2	대	177.0	394-2	대	177.0	
14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4-3	도로	10.0	394-3	도로	10.0	
14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4-4	대	94.0	394-4	대	94.0	
14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4-5	대	69.0	394-5	대	69.0	
14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4-6	제방	58.0	394-6	도로	58.0	
14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4-7	대	25.0	394-7	대	25.0	
14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5-1	대	273.0	395-1	대	273.0	
14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5-2	대	39.0	395-2	대	39.0	

15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5-3	도로	76.0	395-3	도로	76.0	
15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5-4	제방	33.0	395-4	도로	33.0	
15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5-5	도로	81.0	395-5	도로	81.0	
15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5-6	대	39.0	395-6	대	39.0	
15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5-7	제방	1.0	395-7	도로	1.0	
15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6-1	대	165.0	396-1	대	165.0	
15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6-2	도로	4.0	396-2	도로	4.0	
15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6-3	도로	26.0	396-3	도로	26.0	
15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1	제방	638.0	397-1	전	638.0	
15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2	대	138.0	397-2	대	138.0	
16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3	대	609.0	397-3	대	609.0	
16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4	대	208.0	397-4	대	208.0	
16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5	제방	96.0	397-5	도로	96.0	
16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6	제방	134.0	397-6	대	134.0	
16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7	제방	9.0	397-7	도로	9.0	
16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10	대	327.0	397-10	대	327.0	
16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12	제방	30.0	397-12	도로	30.0	
16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13	제방	149.0	397-13	도로	149.0	
16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14	대	507.0	397-14	전	507.0	
16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15	제방	1.0	397-15	도로	1.0	
17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16	제방	41.0	397-16	대	41.0	
17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17	제방	11.0	397-17	도로	11.0	
17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18	제방	1.0	397-18	도로	1.0	
17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19	대	178.0	397-19	종교용지	178.0	
17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7-20	제방	63.0	397-20	도로	63.0	
17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8	제방	951.0	398	대	951.0	
17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8-1	제방	134.0	398-1	대	134.0	
17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98-2	제방	49.0	398-2	대	49.0	
17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0	대	642.0	400	종교용지	642.0	
17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1-3	대	235.0	401-3	대	235.0	
18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1-6	제방	33.0	401-6	도로	33.0	
18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1-10	도로	3.0	401-10	도로	3.0	
18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2	제방	5,666.0	402	대	5,666.0	
18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2-1	제방	585.0	402-1	전	585.0	
18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2-2	제방	13.0	402-2	대	13.0	
18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2-3	대	93.0	402-3	대	93.0	
18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5-1	대	99.0	405-1	대	99.0	
18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5-2	대	1,765.0	405-2	대	1,765.0	

18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5-3	제방	202.0	405-3	대	202.0	
18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5-4	제방	142.0	405-4	대	142.0	
19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5-6	제방	288.0	405-6	도로	288.0	
19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5-7	제방	615.0	405-7	대	615.0	
19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5-8	제방	241.0	405-8	도로	241.0	
19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5-9	대	8.0	405-9	대	8.0	
19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5-10	제방	23.0	405-10	도로	23.0	
19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5-11	제방	3.0	405-11	도로	3.0	
19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5-12	제방	49.0	405-12	도로	49.0	
19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5-14	제방	256.0	405-14	도로	256.0	
19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6-1	도로	46.0	406-1	도로	46.0	
19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6-2	도로	58.0	406-2	대	58.0	
20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6-3	도로	83.0	406-3	대	83.0	
20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6-4	대	112.0	406-4	대	112.0	
20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6-5	제방	19.0	406-5	도로	19.0	
20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6-6	제방	37.0	406-6	도로	37.0	
20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6-7	대	33.0	406-7	대	33.0	
20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6-8	대	64.0	406-8	대	64.0	
20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1	대	77.0	407-1	대	77.0	
20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2	대	522.0	407-2	대	522.0	
20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4	대	64.0	407-4	대	64.0	
20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5	도로	139.0	407-5	도로	139.0	
21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6	대	2.0	407-6	대	2.0	
21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7	도로	116.0	407-7	도로	116.0	
21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8	도로	99.0	407-8	도로	99.0	
21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9	도로	132.0	407-9	도로	132.0	
21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10	제방	79.0	407-10	도로	79.0	
21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11	대	155.0	407-11	대	155.0	
21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12	대	30.0	407-12	대	30.0	
21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13	도로	3.0	407-13	도로	3.0	
21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15	대	52.0	407-15	대	52.0	
21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17	대	36.0	407-17	대	36.0	
22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18	대	90.0	407-18	대	90.0	
22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21	대	73.0	407-21	대	73.0	
22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23	대	15.0	407-23	도로	15.0	
22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24	대	4.0	407-24	대	4.0	
22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25	제방	15.0	407-25	도로	15.0	
22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26	제방	8.0	407-26	도로	8.0	

22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27	제방	1.0	407-27	도로	1.0	
22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28	대	3.0	407-28	도로	3.0	
22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7-29	제방	19.0	407-29	도로	19.0	
22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1	대	63.0	408-1	대	63.0	
23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2	대	109.0	408-2	대	109.0	
23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3	대	13.0	408-3	대	13.0	
23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4	대	13.0	408-4	대	13.0	
23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5	제방	40.0	408-5	도로	40.0	
23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6	대	17.0	408-6	대	17.0	
23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7	도로	99.0	408-7	도로	99.0	
23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8	대	7.0	408-8	대	7.0	
23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10	대	83.0	408-10	대	83.0	
23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11	대	2.0	408-11	대	2.0	
23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12	대	152.0	408-12	대	152.0	
24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13	대	166.0	408-13	대	166.0	
24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14	제방	47.0	408-14	도로	47.0	
24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15	제방	8.0	408-15	도로	8.0	
24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16	제방	7.0	408-16	도로	7.0	
24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17	도로	3.0	408-17	도로	3.0	
24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8-18	대	6.0	408-18	대	6.0	
24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1	학교용지	205.0	409-1	학교용지	205.0	
24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2	대	96.0	409-2	대	96.0	
24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3	도로	992.0	409-3	도로	992.0	
24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4	대	315.0	409-4	대	315.0	
25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5	대	158.0	409-5	대	158.0	
25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6	대	57.0	409-6	대	57.0	
25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7	대	156.0	409-7	대	156.0	
25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8	대	81.0	409-8	대	81.0	
25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10	대	46.0	409-10	대	46.0	
25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11	대	311.0	409-11	대	311.0	
25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12	대	69.0	409-12	대	69.0	
25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13	대	23.0	409-13	대	23.0	
25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14	대	104.0	409-14	대	104.0	
25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15	대	82.0	409-15	대	82.0	
26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16	대	163.0	409-16	대	163.0	
26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17	대	69.0	409-17	대	69.0	
26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18	대	121.0	409-18	대	121.0	
26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19	대	43.0	409-19	대	43.0	

26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20	대	25.0	409-20	대	25.0	
26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22	대	139.0	409-22	대	139.0	
26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23	대	30.0	409-23	대	30.0	
26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24	대	79.0	409-24	대	79.0	
26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25	대	105.0	409-25	대	105.0	
26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26	대	50.0	409-26	대	50.0	
27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27	대	111.0	409-27	대	111.0	
27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29	답	149.0	409-29	답	149.0	
27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30	답	139.0	409-30	대	139.0	
27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31	대	149.0	409-31	대	149.0	
27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32	대	73.0	409-32	대	73.0	
27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33	대	116.0	409-33	대	116.0	
27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34	대	136.0	409-34	대	136.0	
27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35	대	207.0	409-35	대	207.0	
27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36	대	23.0	409-36	대	23.0	
27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37	대	169.0	409-37	대	169.0	
28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39	제방	30.0	409-39	도로	30.0	
28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40	대	30.0	409-40	대	30.0	
28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41	대	76.0	409-41	대	76.0	
28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42	대	116.0	409-42	대	116.0	
28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43	대	93.0	409-43	대	93.0	
28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45	대	169.0	409-45	전	169.0	
28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46	제방	6.0	409-46	도로	6.0	
28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47	제방	9.0	409-47	도로	9.0	
28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48	제방	14.0	409-48	도로	14.0	
28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49	제방	20.0	409-49	도로	20.0	
29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50	제방	6.0	409-50	도로	6.0	
29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53	제방	71.0	409-53	도로	71.0	
29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55	제방	613.0	409-55	도로	613.0	
29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63	대	12.0	409-63	대	12.0	
29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64	제방	56.0	409-64	도로	56.0	
29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65	제방	12.0	409-65	도로	12.0	
29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66	제방	100.0	409-66	도로	100.0	
29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9-70	대	69.0	409-70	대	69.0	
29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1	제방	50.0	410-1	도로	50.0	
29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2	대	767.0	410-2	대	767.0	
30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3	대	222.0	410-3	대	222.0	
30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4	대	207.0	410-4	대	207.0	

30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5	제방	85.0	410-5	도로	85.0	
30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6	대	2.0	410-6	대	2.0	
30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7	대	214.0	410-7	대	214.0	
30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8	대	298.0	410-8	대	298.0	
30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9	대	322.0	410-9	대	322.0	
30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10	대	183.0	410-10	대	183.0	
30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11	제방	211.0	410-11	도로	211.0	
30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12	대	161.0	410-12	대	161.0	
31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13	대	453.0	410-13	대	453.0	
31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14	대	428.0	410-14	대	428.0	
31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15	대	190.0	410-15	대	190.0	
31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0-18	제방	81.0	410-18	도로	81.0	
31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1	답	1,372.0	411	답	1,372.0	
31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1-1	제방	61.0	411-1	제방	61.0	
31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1-2	제방	221.0	411-2	도로	221.0	
31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1-3	답	476.0	411-3	답	476.0	
31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1-4	제방	168.0	411-4	답	168.0	
31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1	대	169.0	412-1	대	169.0	
32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2	도로	218.0	412-2	도로	218.0	
32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3	대	297.0	412-3	대	297.0	
32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4	도로	238.0	412-4	도로	238.0	
32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5	도로	192.0	412-5	도로	192.0	
32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6	도로	99.0	412-6	도로	99.0	
32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7	제방	59.0	412-7	도로	59.0	
32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8	대	952.0	412-8	대	952.0	
32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10	대	40.0	412-10	대	40.0	
32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11	대	311.0	412-11	대	311.0	
32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13	대	111.0	412-13	대	111.0	
33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14	대	190.0	412-14	대	190.0	
33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15	대	45.0	412-15	대	45.0	
33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16	대	103.0	412-16	대	103.0	
33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17	답	3.0	412-17	대	3.0	
33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18	대	13.0	412-18	대	13.0	
33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19	대	135.0	412-19	대	135.0	
33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20	대	41.0	412-20	대	41.0	
33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21	대	26.0	412-21	대	26.0	
33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22	대	10.0	412-22	대	10.0	
33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23	대	202.0	412-23	대	202.0	

34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25	대	50.0	412-25	대	50.0	
34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26	대	146.0	412-26	대	146.0	
34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27	대	170.0	412-27	대	170.0	
34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29	대	216.0	412-29	대	216.0	
34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30	도로	3.0	412-30	도로	3.0	
34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31	제방	12.0	412-31	도로	12.0	
34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32	대	1.0	412-32	도로	1.0	
34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33	제방	51.0	412-33	도로	51.0	
34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34	제방	11.0	412-34	도로	11.0	
34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35	제방	5.0	412-35	도로	5.0	
35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36	제방	16.0	412-36	도로	16.0	
35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38	제방	41.0	412-38	도로	41.0	
35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39	도로	31.0	412-39	도로	31.0	
35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40	제방	16.0	412-40	도로	16.0	
35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41	답	4.0	412-41	대	4.0	
35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42	제방	102.0	412-42	도로	102.0	
35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43	제방	49.0	412-43	도로	49.0	
35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44	대	230.0	412-44	창고용지	230.0	
35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45	대	127.0	412-45	창고용지	127.0	
35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2-46	제방	215.0	412-46	도로	215.0	
36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3-1	대	3.0	413-1	대	3.0	
36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3-2	도로	63.0	413-2	도로	63.0	
36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3-3	대	101.0	413-3	대	101.0	
36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3-4	대	116.0	413-4	대	116.0	
36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3-5	대	14.0	413-5	대	14.0	
36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3-6	제방	39.0	413-6	도로	39.0	
36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3-7	제방	22.0	413-7	도로	22.0	
36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3-8	도로	3.0	413-8	도로	3.0	
36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1	제방	13.0	414-1	도로	13.0	
36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2	대	134.0	414-2	대	134.0	
37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3	대	53.0	414-3	대	53.0	
37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4	제방	630.0	414-4	도로	630.0	
37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5	대	118.0	414-5	대	118.0	
37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6	대	134.0	414-6	대	134.0	
37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7	대	89.0	414-7	대	89.0	
37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8	대	146.0	414-8	대	146.0	
37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10	대	168.0	414-10	대	168.0	
37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12	대	279.0	414-12	대	279.0	

37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13	답	3.0	414-13	대	3.0	
37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14	대	137.0	414-14	대	137.0	
38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15	대	229.0	414-15	대	229.0	
38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16	제방	183.0	414-16	대	183.0	
38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18	제방	8.0	414-18	도로	8.0	
38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19	제방	221.0	414-19	도로	221.0	
38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23	도로	4.0	414-23	도로	4.0	
38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25	제방	74.0	414-25	도로	74.0	
38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26	대	149.0	414-26	대	149.0	
38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27	대	531.0	414-27	대	531.0	
38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28	대	2.0	414-28	대	2.0	
38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29	대	6.0	414-29	대	6.0	
39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30	대	124.0	414-30	대	124.0	
39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32	대	21.0	414-32	대	21.0	
39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33	대	48.0	414-33	창고용지	48.0	
39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34	대	14.0	414-34	대	14.0	
39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35	대	53.0	414-35	창고용지	53.0	
39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36	대	90.0	414-36	창고용지	90.0	
39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37	제방	10.0	414-37	대	10.0	
39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38	제방	42.0	414-38	대	42.0	
39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4-39	제방	43.0	414-39	대	43.0	
39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5-1	제방	186.0	415-1	대	186.0	
40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5-2	대	163.0	415-2	대	163.0	
40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5-3	제방	433.0	415-3	도로	433.0	
40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5-4	대	17.0	415-4	대	17.0	
40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5-5	대	210.0	415-5	대	210.0	
40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5-6	대	41.0	415-6	대	41.0	
40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5-7	대	49.0	415-7	대	49.0	
40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5-8	대	17.0	415-8	대	17.0	
40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5-9	제방	17.0	415-9	도로	17.0	
40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5-12	제방	8.0	415-12	도로	8.0	
40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5-13	제방	352.0	415-13	도로	352.0	
41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5-15	제방	38.0	415-15	도로	38.0	
41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15-18	제방	49.0	415-18	대	49.0	
41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2-1	제방	33.0	422-1	도로	33.0	
41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2-2	대	161.0	422-2	대	161.0	
41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2-3	제방	63.0	422-3	도로	63.0	
41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2-4	대	37.0	422-4	대	37.0	

41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2-5	제방	65.0	422-5	도로	65.0	
41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2-6	제방	219.0	422-6	도로	219.0	
41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2-7	대	229.0	422-7	대	229.0	
41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2-8	대	196.0	422-8	대	196.0	
42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2-9	대	174.0	422-9	대	174.0	
42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3-3	제방	1,256.0	423-3	잡종지	1,256.0	
42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3-8	잡종지	232.0	423-8	잡종지	232.0	
42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3-9	제방	1,225.0	423-9	임야	1,225.0	
42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3-10	잡종지	359.0	423-10	대	359.0	
42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3-12	대	658.0	423-12	대	658.0	
42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3-13	대	1,537.0	423-13	임야	1,537.0	
42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23-14	대	77.0	423-14	대	77.0	
42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3-1	답	2,029.0	453-1	답	1,171.0	
42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3-2	제방	221.0	453-2	도로	221.0	
43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3-3	제방	645.0	453-3	하천	645.0	
43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3-4	제방	620.0	453-4	제방	620.0	
43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3-5	제방	68.0	453-5	답	68.0	
43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3-6	제방	104.0	453-6	도로	104.0	
43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3-7	대	633.0	453-7	대	633.0	
43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3-8	제방	514.0	453-8	도로	514.0	
43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3-9	제방	385.0	453-9	제방	385.0	
43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3-10	제방	175.0	453-10	제방	175.0	
43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3-11	제방	101.0	453-11	답	101.0	
43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3-12	제방	75.0	453-12	답	75.0	
44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4	대	660.0	453-13	답	431.0	453-1에서분할
44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4-1	제방	180.0	453-14	답	427.0	453-1에서분할
44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4-2	대	1,881.0	454	대	660.0	
44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4-3	제방	55.0	454-1	제방	180.0	
44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4-4	제방	52.0	454-2	답	1,881.0	
44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4-5	제방	330.0	454-3	도로	55.0	
44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4-7	제방	49.0	454-4	도로	52.0	
44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4-8	대	542.0	454-5	도로	330.0	
44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	대	148.0	454-7	답	49.0	
44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1	대	155.0	454-8	답	542.0	
45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2	대	206.0	455	대	148.0	
45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3	대	178.0	455-1	대	155.0	
45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4	대	156.0	455-2	대	206.0	
45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5	대	195.0	455-3	대	178.0	

45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6	대	150.0	455-4	대	156.0	
45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7	제방	961.0	455-5	대	195.0	
45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8	대	162.0	455-6	대	150.0	
45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9	대	160.0	455-7	도로	961.0	
45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10	대	184.0	455-8	대	162.0	
45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11	대	186.0	455-9	대	160.0	
46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12	대	282.0	455-10	대	184.0	
46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13	대	425.0	455-11	대	186.0	
46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14	대	311.0	455-12	답	282.0	
46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15	대	250.0	455-13	답	425.0	
46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16	대	191.0	455-14	대	311.0	
46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17	대	100.0	455-15	대	250.0	
46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19	대	117.0	455-16	대	191.0	
46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20	대	71.0	455-17	대	100.0	
46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5-21	대	98.0	455-19	대	117.0	
46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1	대	302.0	455-20	답	71.0	
47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2	제방	357.0	455-21	대	98.0	
47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3	제방	76.0	456-1	대	302.0	
47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4	대	220.0	456-2	도로	357.0	
47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5	대	643.0	456-3	하천	76.0	
47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6	대	250.0	456-4	대	220.0	
47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7	제방	214.0	456-5	대	643.0	
47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8	대	388.0	456-6	대	250.0	
47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9	대	173.0	456-7	도로	214.0	
47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10	대	160.0	456-8	대	388.0	
47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11	대	389.0	456-9	대	173.0	
48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12	대	753.0	456-10	대	160.0	
48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13	대	455.0	456-11	대	389.0	
48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14	대	655.0	456-12	답	753.0	
48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15	제방	190.0	456-13	주유소용지	455.0	
48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16	제방	215.0	456-14	대	655.0	
48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17	제방	29.0	456-15	도로	190.0	
48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18	제방	2.0	456-16	도로	215.0	
48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19	대	8.0	456-17	도로	29.0	
48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20	제방	21.0	456-18	도로	2.0	
48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21	제방	14.0	456-19	주유소용지	8.0	
49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22	제방	46.0	456-20	도로	21.0	
49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23	제방	2.0	456-21	도로	14.0	

49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24	제방	354.0	456-22	도로	46.0	
49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25	제방	370.0	456-23	도로	2.0	
49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6-26	제방	51.0	456-24	도로	354.0	
49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	제방	21,009.0	456-25	도로	370.0	
49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7	대	8.0	456-26	답	51.0	
49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8	학교용지	60.0	463-1	하천	21,009.0	
49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0	대	10.0	463-7	대	8.0	
49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1	대	69.0	463-8	학교용지	60.0	
50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2	대	116.0	463-10	대	10.0	
50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3	대	46.0	463-11	대	69.0	
50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4	대	18.0	463-12	대	116.0	
50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5	제방	225.0	463-13	대	46.0	
50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6	대	4.0	463-14	대	18.0	
50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7	대	45.0	463-15	도로	225.0	
50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8	답	106.0	463-16	대	4.0	
50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9	답	26.0	463-17	대	45.0	
50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20	대	85.0	463-18	대	106.0	
50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21	대	48.0	463-19	대	26.0	
51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22	대	49.0	463-20	대	85.0	
51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23	제방	76.0	463-21	대	48.0	
51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24	도로	20.0	463-22	대	49.0	
51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25	대	466.0	463-23	도로	76.0	
51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26	제방	1,210.0	463-24	도로	20.0	
51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33	대	63.0	463-25	도로	466.0	
51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34	제방	10.0	463-26	제방	1,210.0	
51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35	제방	4.0	463-33	대	63.0	
51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36	제방	35.0	463-34	도로	10.0	
51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37	제방	38.0	463-35	도로	4.0	
52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42	제방	62.0	463-36	도로	35.0	
52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44	제방	1,697.0	463-37	도로	38.0	
52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45	제방	1,757.0	463-42	도로	62.0	
52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46	제방	348.0	463-44	하천	1,697.0	
52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47	제방	1,216.0	463-45	하천	1,757.0	
52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52	제방	66.0	463-46	대	348.0	
52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53	답	1,328.0	463-47	도로	1,216.0	
52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54	제방	90.0	463-52	도로	66.0	
52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55	대	36.0	463-53	답	1,328.0	
52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56	제방	47.0	463-54	대	90.0	

53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57	대	1,049.0	463-55	대	36.0	
53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58	제방	70.0	463-56	하천	47.0	
53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59	제방	50.0	463-57	창고용지	1,049.0	
53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61	제방	162.0	463-58	하천	70.0	
53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62	대	108.0	463-59	대	50.0	
53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63	대	157.0	463-61	대	162.0	
53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64	대	26.0	463-62	대	108.0	
53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65	대	118.0	463-63	대	157.0	
53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66	제방	17.0	463-64	하천	26.0	
53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67	대	63.0	463-65	대	118.0	
54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68	대	73.0	463-66	하천	17.0	
54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69	대	8.0	463-67	대	63.0	
54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70	제방	475.0	463-68	대	73.0	
54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71	대	4.0	463-69	대	8.0	
54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76	제방	828.0	463-70	도로	475.0	
54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77	제방	18.0	463-71	대	4.0	
54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78	제방	9.0	463-76	대	828.0	
54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79	제방	5.0	463-77	대	18.0	
54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80	대	7.0	463-78	대	9.0	
54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81	대	20.0	463-79	대	5.0	
55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82	대	123.0	463-80	대	7.0	
55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83	대	146.0	463-81	대	20.0	
55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84	대	74.0	463-82	대	123.0	
55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85	대	75.0	463-83	대	146.0	
55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86	대	29.0	463-84	대	74.0	
55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87	대	16.0	463-85	도로	75.0	
55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88	제방	185.0	463-86	도로	29.0	
55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89	제방	43.0	463-87	도로	16.0	
55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90	제방	188.0	463-88	도로	185.0	
55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91	대	99.0	463-89	도로	43.0	
56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93	제방	2,489.0	463-90	제방	188.0	
56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94	제방	236.0	463-91	도로	99.0	
56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95	제방	1,470.0	463-93	하천	2,489.0	
56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96	제방	556.0	463-94	도로	236.0	
56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97	제방	188.0	463-95	하천	1,470.0	
56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98	제방	155.0	463-96	도로	556.0	
56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99	제방	110.0	463-97	도로	188.0	
56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00	제방	6.0	463-98	도로	155.0	

56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06	제방	37.0	463-99	도로	110.0	
56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08	제방	23.0	463-100	도로	6.0	
57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09	제방	35.0	463-106	대	37.0	
57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10	제방	236.0	463-108	대	23.0	
57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11	제방	46.0	463-109	하천	35.0	
57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15	제방	114.0	463-110	창고용지	236.0	
57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116	제방	64.0	463-111	하천	46.0	
57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	제방	446.0	463-115	답	114.0	
57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1	대	24.0	463-116	대	64.0	
57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2	대	9.0	465	도로	446.0	
57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3	제방	400.0	465-1	대	24.0	
57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5	제방	12.0	465-2	대	9.0	
58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7	대	42.0	465-3	도로	400.0	
58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8	대	18.0	465-5	도로	12.0	
58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9	대	2.0	465-7	대	42.0	
58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11	대	4.0	465-8	대	18.0	
58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12	대	26.0	465-9	대	2.0	
58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15	제방	598.0	465-11	대	4.0	
58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16	대	192.0	465-12	대	26.0	
587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17	대	106.0	465-15	대	598.0	
58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21	대	19.0	465-16	대	192.0	
589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5-22	대	5.0	465-17	대	106.0	
59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산2-2	제방	297.0	465-21	대	19.0	
591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산2-28	임야	496.0	465-22	도로	5.0	
592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산2-29	대	1,091.0	산2-2	수도용지	297.0	
59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산5-2	임야	593.0	산2-28	임야	496.0	
594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산10-2	임야	15,565.0	산2-29	임야	1,091.0	
595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산5-2	임야	593.0	
596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산10-2	임야	15,565.0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4호

금계천 하천점용허가(무명교2)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하천의 명칭		금계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횡성군수(재난안전과장)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상동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하천점용								
	개 요	<table><tr><td>시설명</td><td>재 원</td><td>점용면적(㎡)</td></tr><tr><td>무명교2</td><td>L=38m, B=7.5m</td><td>531</td></tr></table>			시설명	재 원	점용면적(㎡)	무명교2	L=38m, B=7.5m	531
		시설명	재 원	점용면적(㎡)						
무명교2	L=38m, B=7.5m	531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673번지 외 5필지 (No.16+300)								
	면 적	영구 : 53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 시설물 존치시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5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면적

○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1.376ha

2. 변경·해제 사유 :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3.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단위 : ha)

행 정 구역별	변경·해제 전			변경·해제 후			증감		
	농 업 진흥지역	진 흥 구역	보 호 구역	농 업 진흥지역	진 흥 구역	보 호 구역	농 업 진흥지역	진 흥 구역	보 호 구역
강원특별자치도	44,701.6694	40,043.8551	4,657.8143	44,700.2934	40,042.4791	4,657.8143	감1.376	감1.376	-
춘천시	690.7726	606.2100	84.5626	690.7726	606.2100	84.5626	-	-	-
원주시	3,833.7277	3,124.3550	709.3727	3,832.3517	3,122.9790	709.3727	감1.376	감1.376	-
강릉시	3,201.4233	2,888.0722	313.3511	3,201.4233	2,888.0722	313.3511	-	-	-
동해시	17.7935	-	17.7935	17.7935	-	17.7935	-	-	-
태백시	233.0695	199.7816	33.2879	233.0695	199.7816	33.2879	-	-	-
삼척시	597.6701	540.2693	57.4008	597.6701	540.2693	57.4008	-	-	-
홍천군	5,248.5699	4,593.8766	654.6933	5,248.5699	4,593.8766	654.6933	-	-	-
횡성군	3,743.4866	3,211.5544	531.9322	3,743.4866	3,211.5544	531.9322	-	-	-
영월군	2,102.8427	1,950.9993	151.8434	2,102.8427	1,950.9993	151.8434	-	-	-
평창군	1,877.7364	1,618.1253	259.6111	1,877.7364	1,618.1253	259.6111	-	-	-
정선군	1,586.1072	1,517.4760	68.6312	1,586.1072	1,517.4760	68.6312	-	-	-
철원군	12,849.9635	11,754.2426	1,095.7209	12,849.9635	11,754.2426	1,095.7209	-	-	-
화천군	1,050.4830	943.6283	106.8547	1,050.4830	943.6283	106.8547	-	-	-
양구군	2,561.3230	2,403.1230	158.2000	2,561.3230	2,403.1230	158.2000	-	-	-
인제군	758.2676	691.3348	66.9328	758.2676	691.3348	66.9328	-	-	-
고성군	2,782.8888	2,566.3113	216.5775	2,782.8888	2,566.3113	216.5775	-	-	-
양양군	1,565.5440	1,434.4954	131.0486	1,565.5440	1,434.4954	131.0486	-	-	-

4.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도면 : 게재 생략
5. 열 람 :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는 해당 시·군(읍·면·동)에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6. 기 타 : 농업진흥지역 확인 등 증명서는 1/5,000 도면에 의하여 발급하고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
이한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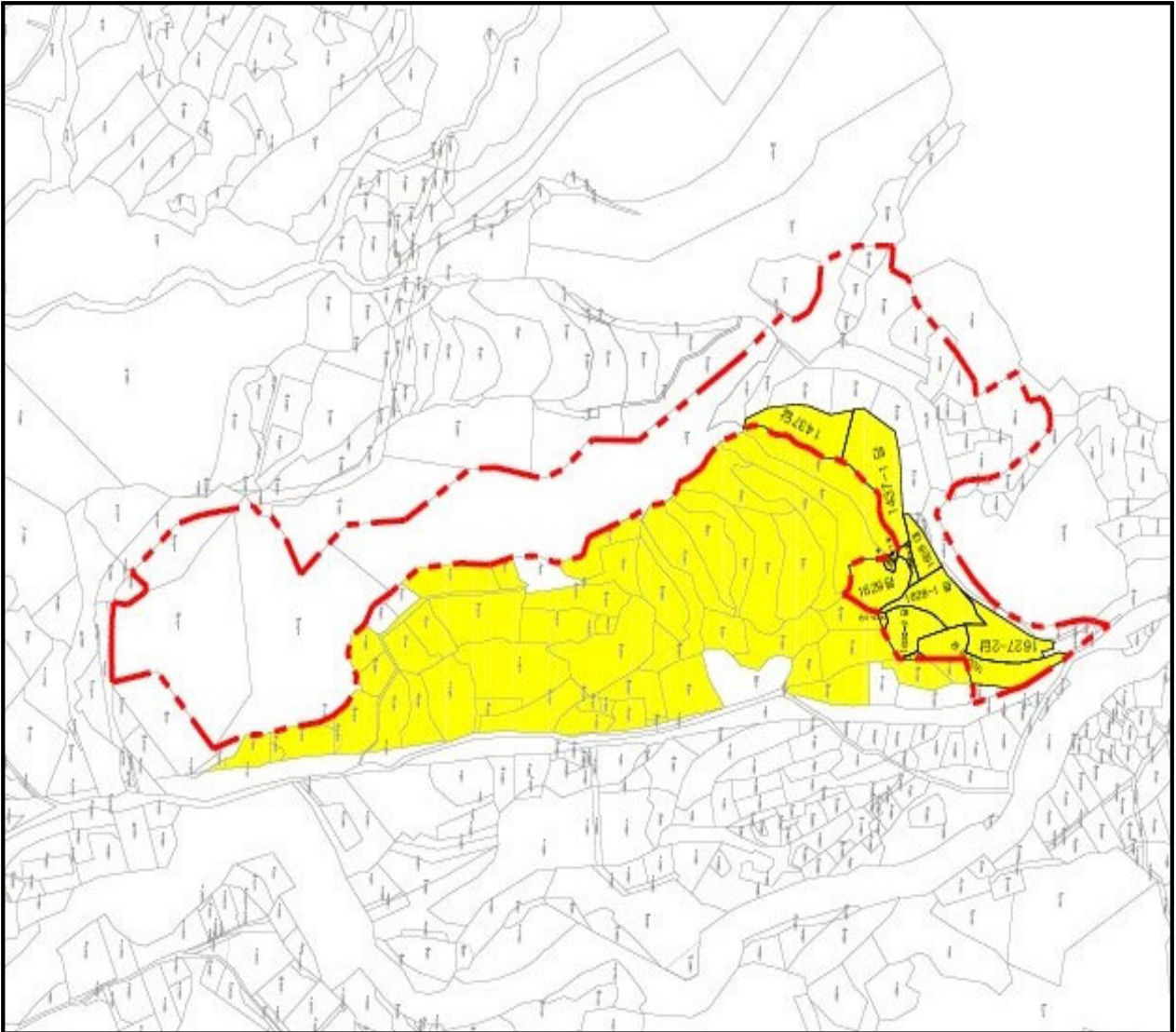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변경·해제대상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해제요청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시·군	읍·면	리·동					
합 계				13필지		13,760	13,760	
1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1426-3	답	68	68	농업진흥구역
2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1435-1	답	77	77	농업진흥구역
3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1436-1	답	39	39	농업진흥구역
4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1437	답	2,000	2,000	농업진흥구역
5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1437-1	답	2,684	2,684	농업진흥구역
6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1627-2	답	1,752	1,752	농업진흥구역
7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1628-1	답	1,608	1,608	농업진흥구역
8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1628-2	답	205	205	농업진흥구역
9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1629	답	1,484	1,484	농업진흥구역
10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1630-2	답	1,170	1,170	농업진흥구역
11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1631-6	답	64	64	농업진흥구역
12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1632-6	답	1,949	1,949	농업진흥구역
13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1628	대	660	660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지적도)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6호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춘천시 투자유치과(☎033-250-4225)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I. 산업단지 개요(변경)

1. 소재지 및 면적

－ 춘천시 후평동 622-1번지 일원 / 483,288㎡

2. 관리기관(변경) :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위탁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위탁 관리업무 내용

－ 산업(농공)단지 입주지원업무(입주민원 및 지산설립승인 등 포함)

* 산단 내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는 제외

－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업무

－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 기타 협력사업

3. 조성목적

○ 소양댐 수몰지구 이주민 생활대책

○ 산업화의 촉진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유휴인력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추진경위(변경)

- 1968. 08. 22 : 공업단지지구 지정 (건설부고시 제509호)
- 1968. 12. 11 : 공업단지조성 실시인가 (건설부고시 제740호)
- 1969. 04. 05 : 공업단지실시계획인가 (건설부고시 제2120호)
- 1969. 12. 31 : 공업단지조성공사 완료
- 1973. 05. 04 :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지정 (건설부고시 제54호)
- 1976. 11. 10 : 공업단지관리법 적용 공업단지 지정
- 1979. 08. 03 : 관리대상 공업단지면적고시
- 1982. 10. 29 : 공업단지면적및용도별구획고시 (상공부고시제82-40호)
- 1992. 05. 20 : 용도별구획고시 (강원도고시 제1992-64호)
- 1993. 02. 02 : 용도별구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3-11호)
- 1993. 07. 28 : 용도별구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3-85호)
- 1994. 12. 02 : 용도별구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4-181호)
- 1997. 02. 19 : 용도별구획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7-29호)
- 1999. 01. 19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9-11호)
- 2001. 03. 26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고시 (중기청고시 제2001-6호)
- 2002. 05. 25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02-130호)
- 2003. 07. 28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03-171호)
- 2005. 04. 02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05- 55호)
- 2016. 12. 12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16-512호)
- 2017. 03. 16 : 재생사업지구(재생계획) 지정(춘천시 고시 제2017-106호)
- 2019. 05. 24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19-209호)
- 2020. 01. 02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19-536호)
- 2021. 04. 29 : 재생사업지구(재생계획) 지정 변경(춘천시 고시 제2021-201호)
- 2022. 07. 01 :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고시(강원도 고시 제2022-203호)
- 2022. 10. 20 : 재생사업지구 지정(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지형도면 고시(춘천시 고시 제2022-448호)
- 2023. 04. 04 :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3-121호)

5.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천㎡)	분 양	분양 미대상			계	조성기간	조 성 기 관
			조성	미조성	소 계			
계	483	334	56	93	149	483	'68.11.6 ~ '69.12.31 / 재생사업 : 2015년~ 2025년	춘천시
산업시설	263	263	—	—	—	263		
지원시설	71	71	—	—	—	71		
공공시설	145	—	52	93	145	145		
주거시설	4	—	4	—	4	4		

6. 입주현황(변경)

입주 업체수					면적(m ²)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주거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주거시설
387	373	11	2	1	483,288	263,376	70,741	144,780	4,391

II.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 방향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과 「산업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의 규정에 의거한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도모

나. 입주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다.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하고 산업구조 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

라. 기능인력 수급에 따른 고용 창출 및 근로자 후생복지 증진

2.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가. 용도별 구획면적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483,288	100	
산업시설	263,376	55	
지원시설	70,741	14	주거시설 제외
공공시설	144,780	30	학교, 공원, 주차장 등
주거시설	4,391	1	

나. 용도구역별 건축할 건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지원시설)

2) 지원시설구역

가) 지원시설

구분	지원 1, 9	지원 2, 8	지원3, 4, 5, 6, 7, 10
범위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단란주점, 안마 시설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단란주점, 안마 시설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단란주점, 안마 시설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구분	지원 1, 9	지원 2, 8	지원3, 4, 5, 6, 7, 10
	- 제18호 창고시설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해당하는 아래의 시설에 한함) 1.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6.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함)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나목 세차장, 바목 정비공장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8호 창고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2-1에 따른 행위제한의 완화 적용

나) 주거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3) 공공시설구역

가) 주차장 용지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가목 내지 라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바목 내지 사목
 - 자목(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차고

나) 학교 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속용도

다) 기타 공공용 건축물 및 관련시설

※ 용도별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용도별구획 평면도 : 붙임 1

3. 입주관리계획

가. 입주대상 업종

1)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10~34)

2) 비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비축시설
- 창고업(52) / 운송업(49) 단, 여객운송업은 제외 / 태양광 발전업(35114)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임대업 :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68112) 단,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신고를 한 자에 한함
- 공급업 :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 단,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한함

나. 입주자격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 및 「관리지침」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종(도금업, 기초무기화합물 등), 폐수배출업종(피혁, 염색 등), 대기오염 발생 업종(시멘트 제조업 등)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공장이전을 위해 협약(양해각서)을 체결한 기업체
 - 2순위 :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체
 - 3순위 :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기업체

2)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 입주제한

1) 산업시설구역

가) 제조업

- 용수다소비업종 및 입주부적격 업종
 - C10 식료품 제조업 중 C1011 도축업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중 C142 모피제품 제조업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C23311 시멘트 제조업, C23322 레미콘 제조업, C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 화합물, 화학제품 및 악취발생업종
 - C10 식료품 제조업 중 C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중 C203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 기타 업종 중 악취 및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중 C25922 도금업, C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페놀 및 중금속 배출업종

나) 비제조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중 악취물질배출업종
 -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중 E3702 분뇨처리업
 -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관련 [별표1]의 제한업종

2) 지원시설구역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한함.
(단, 한 획지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일부 구간 포함 되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에 한함)

라. 입주절차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 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마. 업종별 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 계획

《업종별 배치 계획표》

(단위 : m²)

구분	면적	배치 업종
계	263,376	
산업1	8,264	• 바이오산업 - C10 식료품 제조업 - C11 음료 제조업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정보통신업 - J58 ~ J63 • 지식산업센터

산업2	4,834	• 바이오산업	• 정보통신업
산업3	74,046	- C10 식료품 제조업	- J58 ~ J63
산업4	42,246	- C11 음료 제조업	
산업5	6,346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산업6	30,098	• 차세대 전자·정보산업	
산업7	34,656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산업8	19,062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산업9	9,835	- C28 전기장비 제조업	
산업10	33,989	• 정보통신업	• 지식산업센터
		- J58 ~ J63	
산업 1~10		태양광 발전업(35114)	※ 입주기업 공장 지붕 등의 설치에 한함

2) 배치의 기준

- 업종별 배치계획표에 따라 입주를 권장하되,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입주대상 업종은 산업시설 전 지역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규입주 및 업종 전환이 용이하도록 계획
- 현재 운영 중인 공장 등은 이전 및 신규업종 입주시까지 현 업종 유지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은 산업시설 전 구역에 지식산업센터 설립 가능
-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10~34, 단 입주제한업종 제외) 및 산업집적업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입주를 허용
- 임대업(68112)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만 허용되며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신고 이후 가능 단, 전세임대는 임대인의 공장등록(사업개시)일 기준 1년 이후 부터 가능. 다만, 변경고시 시행 전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사업개시)을 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 각 업종별 성격 및 특성과 공해발생요인 등을 고려 배치
- 원료 운송 및 구입과 관련되는 주요도로와의 접근성을 고려 배치
- 타 산업과의 연계성 및 인접성 등을 고려 배치
- 원료를 원제품으로 전환하는데 관련된 용수공급과 폐기물 처리문제를 감안하여 배치

※ 업종별배치 계획도 : 붙임 2

4. 사후관리 계획

가. 분양용지관리

- 1)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법」, 「관리지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함
- 2)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 하는 등 「산업집적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함
- 3)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공장 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관리기관의 승인(입주계약 체결)이후 가능하며,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에 따라야 함
- 4)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업집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5)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42조에 의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내의 시정을 명하고,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미착수시
 -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의2 또는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 법 제39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 6) 산업용지의 최소분할 면적은 「산업집적법」 제3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거 1,650 m²이상으로 하며, 분할시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함

나. 환경관리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안전관리

- 1)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서 등 관리기관과 긴밀 협조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협력체제를 구축
- 2)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3)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음

라. 기반시설지원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Ⅲ.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운영방침

- 가. 입주기업의 생산기반 구축 및 인력수급 지원
- 나. 근로자의 여가활동 지원 및 공공복리 증진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지원

- 1)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연도별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적용
- 2) 강원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 연도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계획 공고 적용
 - ※ 세부내용은 관련법률 및 조례에 의거하며, 자금관리기관의 자금운영·지원계획 및 법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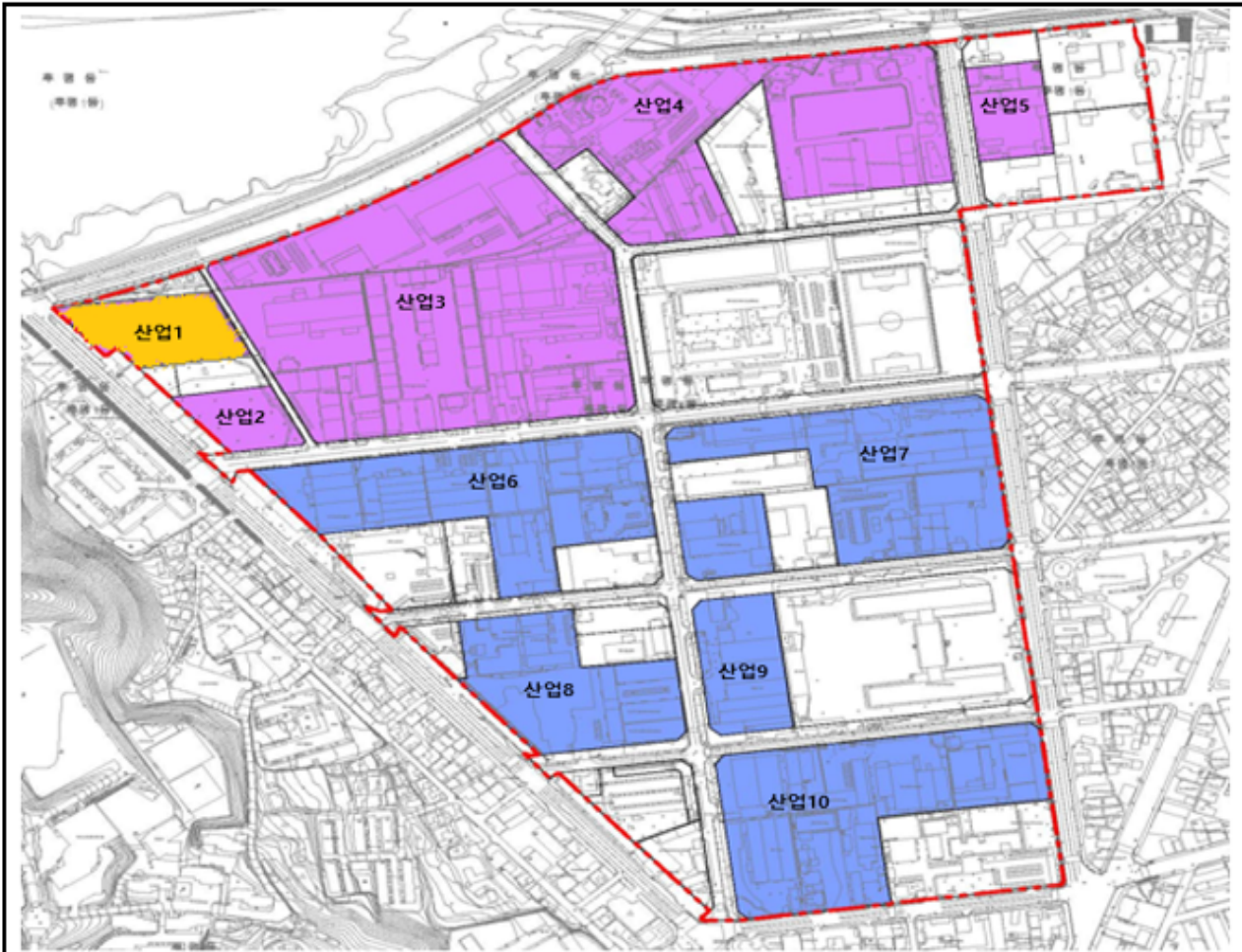
3. 지원시설 설치운영

(단위 : 개소, 천㎡)

시설명	전체면적		비 고
	업체수	면 적	
총 계	11	71	
가스등 주유시설	2	5	
후생시설	5	14	
복지회관	1	3	
공공기관	3	49	

(붙임 2)

□ 업종별 배치 계획도



구분	배치 업종	
산업1	· 바이오산업 - C10 식료품제조업 - C11 음료 제조업 - C21 의약품 물질 의약품 제조업	· 정보통신업 - J58~J63 · 지식산업센터
산업2	· 바이오산업	· 정보통신업
산업3	- C10 식료품제조업	- J58~J63
산업4	- C11 음료 제조업	
산업5	- C21 의약품 물질 의약품 제조업	
산업6	· 차세대 전자 · 정보산업	
산업7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산업8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산업9	- C28 전기장비 제조업	
산업10	· 정보통신업	· 지식산업센터
	- J58~J63	
산업 1~10	태양광 발전업(35114) ※ 입주기업 공장 지붕 등의 설치에 한함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8호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남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춘천시 투자유치과(☎033-250-4225)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

I. 산업단지 개요

1.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변경)

가. 관리권자 : 강원특별자치도

나. 관리기관 :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위탁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

○ 위탁 관리업무 내용

－ 산업(농공)단지 입주지원업무(입주민원 및 지산설립승인 등 포함)

* 산단 내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는 제외

－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업무

－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 기타 협력사업

2. 조성목적

가. 춘천을 중심으로 동서 고속도로 교통망, 경춘선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의 개선에 따른 수도권 기능부여에 따라 중부 내륙권의 경제중심도시의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

나. 점차 증가하는 첨단 지식기반산업 수요에 대비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산업용지의 공급을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춘천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성장 유망업종, 미래성장 가능 업종, 환경 오염도가 낮은 업종 및 일반적인 제조업 등의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3.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광관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

나. 면 적 : 266,955.5㎡

4. 추진경위(변경)

- 2013. 01. 16. :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설립
- 2013. 10. 11.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강원도고시 제2013-401호)
- 2018. 01. 19.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강원도고시 제2018-11호)
- 2018. 01. 31. :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 2018. 06. 15. :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실시 (10.31일 기준 보상을 73%)
- 2018. 11. 30. :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8-455호)
- 2019. 12. 13.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9-475호)
- 2020. 01. 13.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15호)
- 2020. 03. 11.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107호)
- 2020. 08. 10.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328호)
- 2022. 02. 25.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2-56호)
- 2022. 03. 11.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107호)
- 2020. 08. 10.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328호)
- 2022. 02. 25.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2-56호)
- 2022. 03. 11.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강원도고시 제2022-67호)
- 2022. 05. 13.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2-152호)
- 2022. 07. 19. : 산업단지(1단계) 준공인가 공고(강원도고시 제2022-1141호)
- 2023. 02. 27.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3-75호)
- 2023. 06. 16.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15호)
- 2023. 06. 23.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25호)
- 2023. 10. 20.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제2023-363호)

5. 분양계획(변경)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 분 양			계		
			조성완료	조성중	소 계			
계	266,955.5	266,955.5	—	—	—	266,955.5	2012 ~ 2022	남춘천 산업단지개발(주)
산업시설구역	192,695.5	192,695.5	—	—	—	192,695.5		
지원시설구역	6,800.8	6,800.8	—	—	—	6,800.8		
공공시설구역	46,315.9	46,315.9	—	—	—	46,315.9		
녹지시설구역	21,143.3	21,143.3	—	—	—	21,143.3		

6. 입주계획(변경)

(단위 : 개소, m²)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 24. 1월 현재	21	2	23	192,695.5	4,702.3	197,397.8
향 후 계 획	-	1	1	-	2,098.5	2,098.5
계	21	3	24	192,695.5	6,800.8	199,496.3

※ 상기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7. 입지여건(기반시설)

가. 교통여건

- 서울춘천고속도로 남춘천IC에 직접 연결 되며, 춘천시 남부지역 관문으로써 광역접근성 양호하며 춘천 도심과 약 20~30분 이내 지역에 위치

나. 기반시설 공급계획

시 설 명	확 충 계 획	
	규 모	시행기관
용 수	생활용수 : 114m ³ /일 공업용수 : 898m ³ /일	춘천시
전 력	55,064MWh/년	한국전력
통 신	768회선	개별 통신서비스 기관
환 경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 발생량 : 528m ³ /일	춘천시

II.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방향

- 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운영 및 활성화 도모
- 나. 합리적 업종배치,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 경영활동 지원 전개
- 다. 친환경 기업 유치에 위한 적정 규모의 산업 시설용지 제공 및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
- 라. 환경 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운영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주대상업종

(1) 산업시설구역

- 식품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25),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제품 제조업(33),태양력발전업(3511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연구개발업(70)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KISC)			비 고
	분류코드		업 종 별	
산업시설용지	C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D	35114	태양력 발전업	
	H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	70	연구개발업	

주1)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 코드임

주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중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13221),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13222), 커튼 및 유사제품제조업(13223)에 한함

주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산·재생에너지 발전업(태양에너지발전업에 한하며, 공장부지내 옥상, 지붕에 설치 허용)나. 입주자격기준

(1)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주 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우선입주자격

- 단지 내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하고 관리기관과 MOU/MOA등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검토가 완료된 업체
- 수도권 및 타 사·군·구에서 본사 또는 공장 이전 기업
- 지역 실정에 맞는 유망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사업성 검토가 적합한 업체
-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체로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보유업체
-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저공해 업종 영위 기업

라. 입주절차

(1) 처분계획 및 분양 공고에 따른 입주 절차

- 당해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분양계획 공고 후 관리 기관에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입주 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주계약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분양 공고상 입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동순위 경쟁일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3항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선정된 입주자는 산집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분양가격

- 산업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분양가격 결정
 - 가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하고 총 분양원가 확정 후 본 계약을 체결, 분양가격은 추후 최종 정산
- 산업시설용지
 - 분양가격 : 227,530원/㎡ ※예정가격으로 향후 확정
 - 조성원가 : (478억원 - 80억원) + 5.5%(이윤) = 420억원
- 지원시설용지 : 감정가격

3.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가. 용도별 구역 면적(단위 : ㎡, %)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총 계	266,955.5	100	
산업시설구역	192,695.5	72.2	
지원시설구역	6,800.8	2.5	
공공시설구역	46,315.9	17.4	
녹지시설구역	21,143.3	7.9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위치	구 분		산업시설용지	비고
산업1 ~ 산업5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연구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0m이하(5층 이하)	
	배 치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감을 형성	
	색 채		춘천시 「경관형성기본계획」 에서 제시하는 색채가이드라인에 의거 계획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권장 (단, 자연재료, 벽돌, 석재타일, 유리 등 자재색은 그대로 사용) 지역적 특색 반영을 위한 추가 색채 선택시 반영하여 계획	
	건축선		춘천시 건축조례를 따름	결정도면 참조

(2) 지원시설구역

위치	구 분		지원시설용지	비고
지원1 ~지원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목 중 장의사,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나목 전신전화국, 라목 통신용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15m이하(4층 이하)	
	배 치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감을 형성	
	색 채		춘천시 「경관형성기본계획」 에서 제시하는 색채가이드라인에 의거 계획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권장 (단, 자연재료, 벽돌, 석재타일, 유리 등 자체색은 그대로 사용) 지역적 특색 반영을 위한 추가 색채 선택시 반영하여 계획	
	건축선		춘천시 건축조례를 따름	결정도면 참조

(3)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법 제2조 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관리를 위한 부속건축물

(4)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산집법 제33조제7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붙임 1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가.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업종별		구분	배 치 계 획	
			업체수	면적(m ²)
합 계			21	192,695.5
공장시설용도	식료품 제조업(10)		3	19,833.7
	식료품제조업 (1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10,052.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4	33,446.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11,891.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5	42,171.1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제품 제조업(33), 창고 및 운송관련 · 서비스업(52)		1	7,054.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25)		1	8,265.9
	전기장비 제조업(28)		1	18,000.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3	30,087.8
	연구개발업(7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11,891.4

※태양광발전시설은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 및 지붕에 설치

나. 배치기준

- 유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종별로 집단화 하여 생산성 도모
- 업종 배치 시 단지의 토지이용 고려, 획지구도 및 분할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집단화, 계열화도모
- 실제 공장부지 분양시 실수요에 따라 업종별 공장배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부여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산업단지 내 종업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적 측면에서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 수립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 2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지원시설 설치계획

시 설 명	전 체 면 적	
	개소수	면적(m ²)
계	3	6,800.8
기타 지원시설	3	6,800.8

6. 사후 관리계획

가. 목표

-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관리 도모

나. 세부관리계획

(1) 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한다.
-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

도하는 등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집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 등이 있는 때에는 산집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 수출,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 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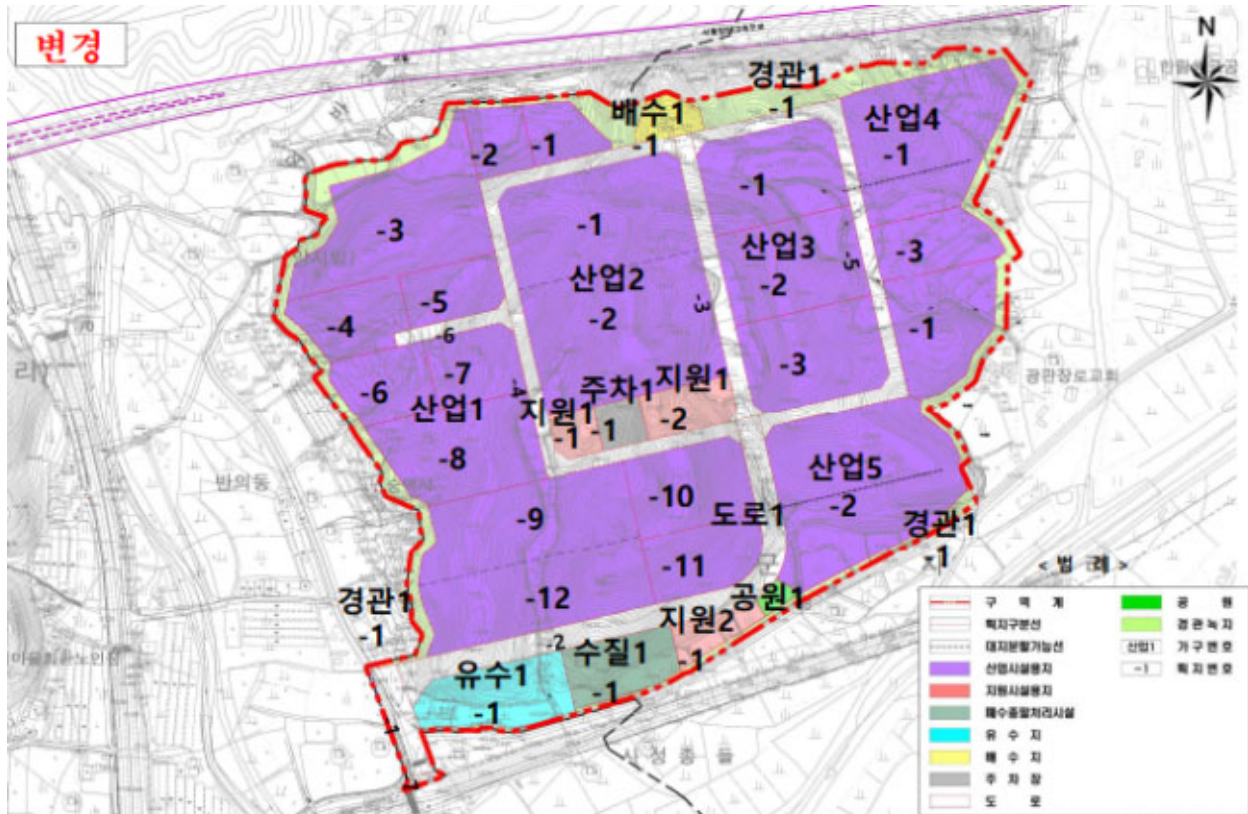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내 공원과 완충 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 운동 공간 및 녹지 공간 확보
- 산업단지내 건축물 축조시에는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색상·형태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건축 경관 기준을 준수 후 건축 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 입주업체의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기타시설 운용계획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

【붙임1】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용도별 구획 평면도〉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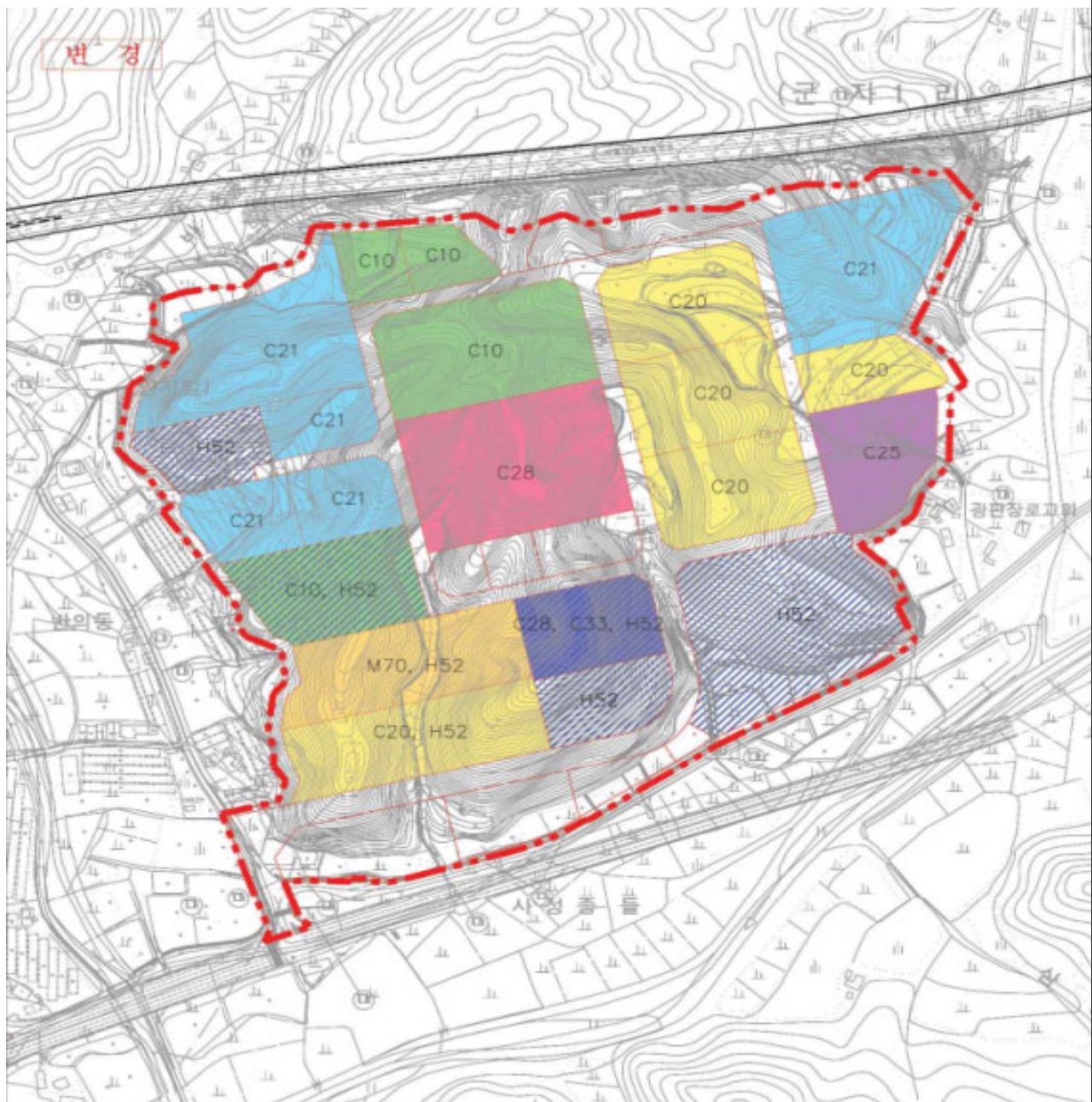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S = 1 : 1,500

0 30m 75m 150m

【붙임2】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업종별 배치 계획도〉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도
(변경:1단계)

S = 1 : 1,500

0 30m 75m 150m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9호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춘천시 투자유치과(☎033-250-4225)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I. 산업단지개요

가. 소재지(변경)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현암리 일원

나. 산업단지면적 : 186,922.5㎡

다. 관리기관(변경) :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위탁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위탁 관리업무 내용

- 산업(농공)단지 입주지원업무(입주민원 및 지산설립승인 등 포함)
 - * 산단 내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는 제외
-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업무
-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 기타 협력사업

라. 조성목적

- 문화산업(애니메이션)의 집중적 육성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지방문화산업의 경쟁력 배양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마. 추진경위(변경)

- 2008. 01. 25.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승인(강원도고시 제2008-14호)
- 2009. 02. 27.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강원도고시 제2009-81호)
- 2010. 08. 27.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0-298호)
- 2011. 02. 11.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강원도고시 제2011-56호)
- 2011. 09. 09.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1-312호)
- 2012. 05. 18.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2-167호)
- 2012. 10. 12.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2-309호)
- 2012. 11. 01.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2-336호)
- 2012. 12. 17.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준공(부분 1공구)인가(강원도 고시 제2012-999호)
- 2014. 04. 04.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4-118호)
- 2014. 12. 08.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강원도고시 제2014-513호)
- 2015. 06. 30.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5-250호)
- 2015. 09. 25.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준공(전체)인가(강원도공고 제2015-1143호)
- 2015. 12. 04.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강원도고시 제2015-472호)
- 2021. 10. 22.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강원도고시 제2021-391호)
- 2021. 11. 04.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도고시 제2021-398호)
- 2023. 11. 24.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강원도고시 제2023-428호)

바. 분양계획

(단위 : m²)

구분	총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비고
		소계	조성완료	조성중	소계	조성완료	조성중	
계	186,922.5	104,272.2	104,272.2	-	82,650.3	82,650.3	-	
산업시설	47,251.2	47,251.2	47,251.2	-	-	-	-	
지원시설	67,979.4	57,021.0	57,021.0	-	10,958.4	10,958.4	-	
공공시설	36,143.6	-	-	-	36,143.6	36,143.6	-	
녹지시설	35,548.3	-	-	-	35,548.3	35,548.3	-	

사. 입주현황(계획)(변경)

(단위 : 업체, m²)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 24. 1월 현재	9	20	29	47,251.2	57,021.0	104,272.2
향 후 계 획	-	1	1	-	10,958.4	10,958.4
계	9	21	30	47,251.2	67,979.4	115,230.6

※ 입주업체수는 분양 및 입주계약체결, 공장설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입지 및 기반시설 여건

시설명	규모 및 용량	시행기관	비고
도 로	- 지방도 403호선 접합 - 단지내도로 : 중로 6개 노선 (L=1,130m, B=12~20m), 소로 1개 노선 (L=78m, B=6m)	춘천시	
용 수	산업단지 용수 지원 (서면지방상수도에서 용수를 공급) - 생활용수 : 1,000.8m³/일	춘천시	
전 력	수요량 : 20,542 MWH/년	한국전력 공 사	
통 신	수요량 : 1,794회선	(주)KT	
오 수	서면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생활오수 : 990.0 m³/일	춘천시	

II.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1. 관리 기본방향

-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업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 도모
- 토지이용, 교통체계, 단계별 사업계획 등에 적합하고 획지별 교환, 분할이 가능하도록 업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 대처
- 공공시설과 녹지는 단지 종업원들의 편의성 및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

2. 입주(분양) 계획

가. 입주대상 및 자격

(1) 입주대상업종

구분	입주대상업종	비 고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항목 중 사업지원서비스업(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35114)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이라함)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입주 제외대상

- (1)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 (2)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업단지 관리상 문제가 우려되는 업종

다. 입주우선순위

(1) 산업시설구역

-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 공장설립 협약이 체결된 업체
- 신기술 보유,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큰 업종
- 관리기본계획 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건실한 기업의 입주유치를 위해 자체자금 조달 및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기업체
 - ※ 신청이 많은 해당 획지에 대해서는 입주평가 위원회에서 순위 최종 결정

(2) 지원시설구역

- 공공지원시설 및 복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기여도가 높은 업종

라. 분양한도

-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기준 건축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기준

마. 최소분양면적

- 「산업집적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규정에 의하여 900㎡ ~ 1,650㎡로 한다.

바. 입주절차

- 「산업집적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입주심사 후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

사. 분양가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분양 가격결정
 - － 분양가격 : 208,000원/㎡ (687,000원/3.3㎡)
 - ⇒ 산출근거 : 조성원가/조성면적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계획

가. 총 관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면 적(㎡)	186,922.5	47,251.2	67,979.4	36,143.6	35,548.3
구성비(%)	100	25.3	36.4	19.3	19.0

나. 구역별 시설내용

(단위 : m²)

구 분		면 적
합 계		186,922.5
산업시설구역	소 계	47,251.2
	산업시설용지	8,468.9
	복합시설용지	20,530.8
	문화산업지원센터	4,289.8
	애니메이션박물관	5,918.6
	스튜디오스튜디오	8,043.1
지원시설구역	소 계	67,979.4
	상업시설용지	10,958.4
	공공용지	57,021.0
공공시설구역	소 계	36,143.6
	도 로	18,115.8
	주차장	6,773.1
	광 장	9,362.0
	하수도	798.8
	구 거	1,093.9
녹지시설구역	소 계	35,548.3
	경관녹지	11,657.4
	유수지	4,468.8
	공 원	19,422.1

다.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관리처분사항
계		186,922.5	100.0	
산업시설구역		47,251.2	25.3	
	산 업 용 지	8,468.9		수요자 자체관리
	복 합 용 지	20,530.8		수요자 자체관리
	문화산업지원센터	4,289.8		수요자 자체관리
	애니메이션박물관	5,918.6		수요자 자체관리
	스튜디오스튜디오	8,043.1		수요자 자체관리
지원시설구역		67,979.4	36.4	
	상업시설용지	10,958.4		수요자 자체관리
	공 공 용 지	57,021.0		수요자 자체관리
공공시설구역		36,143.6	19.3	

	도	로	18,155.8		춘천시	
	주	차	장	6,773.1	춘천시	
	광	장	9,362.0		춘천시	
	하	수	도	798.8	춘천시	
	구	거	1,093.9		춘천시	
녹지시설구역			35,548.3	19.0		
	경	관	녹	지	11,657.4	춘천시
	유	수	지	4,468.8	춘천시	
	공	원	19,422.1		춘천시	

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산업시설
- 입주대상업종 영위를 위한 건축물 및 부대시설
- ※ 단, 복합용지구역은 산업시설50% 이상, 상업시설50%이하 건축이 가능

① 산업시설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C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방송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라목 (「전시산업발전법」 상의 부대시설 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1)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건물의 전면방향은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태		가로경관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토록 계획	
	색채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외벽면의 70%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 채도가 높은색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1m : 중로 3-73호선에 면한 용지	
C2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방송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사무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라목 (「전시산업발전법」 상의 부대시설 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1)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높이	• 4층이하	
	배치	•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건물의 전면방향은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태	• 가로경관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서터로 처리토록 계획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외벽면의 70%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 채도가 높은색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 1m : 중로 2-106호선에 면한 용지	

② 복합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바,자,차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아,자,하,너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라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1)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건물의 전면방향은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태		• 가로경관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토록 계획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외벽면의 70%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 채도가 높은색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 1m : 중로 3-73호선에 면한 용지	

(2)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공공, 공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공시설
- 상업시설용지로서 3층 이하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함)

①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D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바,자,차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아,자,파,하,너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라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1)에 한함	
		불허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건물의 전면방향은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외벽면의 70%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고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하며,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1m : 중로 3-73호선에 면한 용지 -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D2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마,바,자,차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아,자,파,하,너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불허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2층이하	
	배치		•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건물의 전면방향은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외벽면의 70%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고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하며,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1m: 중로 2-107호선에 면한 용지	

② 상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비고
E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바,자,차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아,자,하,너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		3층이하	
	배치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건물의 전면방향은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태		가로경관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서터로 처리토록 계획	
	색채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외벽면의 70%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 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 채도가 높은색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1m : 중로 2-107호선에 면한 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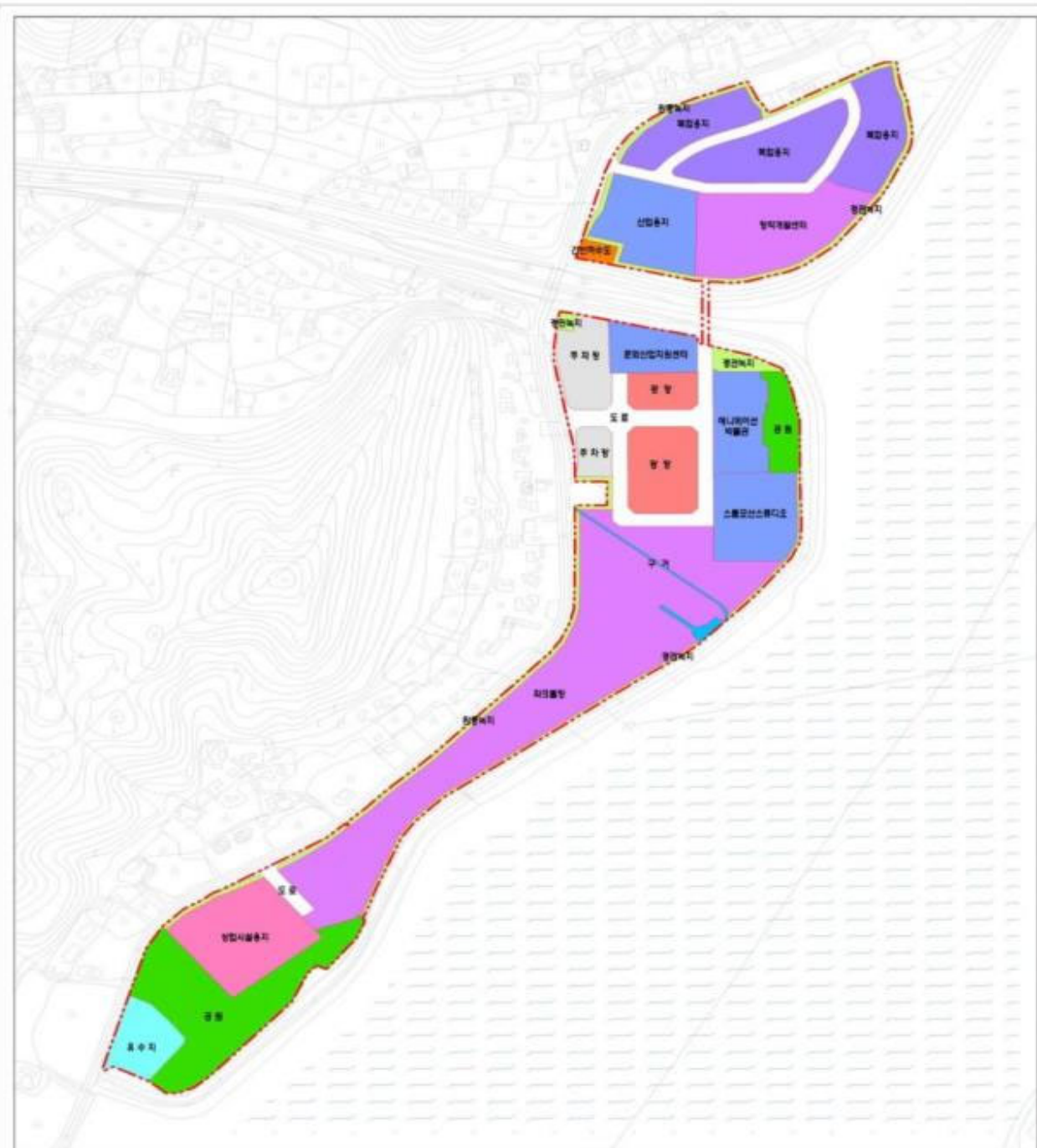
(3) 공공시설구역

- 산업시설용지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 도로, 광장 등

(4) 녹지시설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마. 용도별 구획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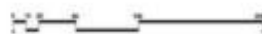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산업용지		간선하수도		공원
	복합용지		주차장		원지
	상업시설용지		광장		구
	지원시설용지		유수지		거

SCALE = 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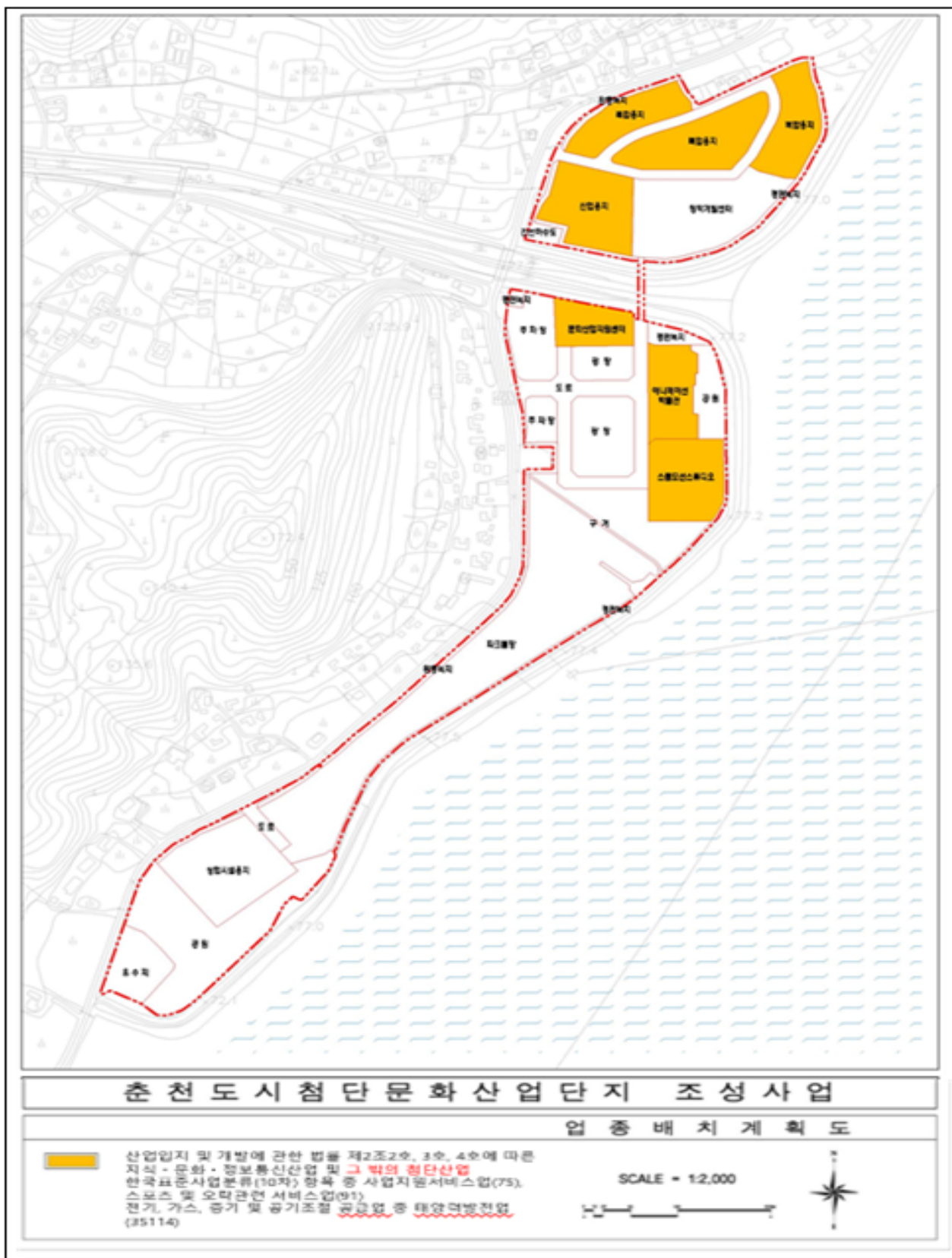
4.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

가. 배치기준

구분	분류번호		업체수	면적(㎡)	구성비(%)
	대분류	중분류			
첨단업종주)	C.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	47,251.2	100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	J.정보통신업	58.출판업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1.우편 및 통신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연구개발업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사업지원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 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 첨단업종
- 유치업종은 기반시설의 여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종추가 시 관련법 검토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검토완료하여야 함
- 업종별 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에 의하며, 업종별 배치계획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 등 단지조성목적에 적합한 기타 업종이 입주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음
- 태양광발전시설은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 및 주차장 상부에 설치

나. 업종별 배치 계획도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지원시설 설치 계획

구 분		면적(㎡)	획지수	비 고
지원 시설	계	67,979.4	3	
	상업시설용지	10,958.4	1	
	공공용지	57,021.0	2	

(1) 지원시설 운영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 동의를 얻어 지원시설 구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기타시설 설치 · 운영계획

(1) 도로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비 고	관리처분사항
계		-	-	7	1,208	-	춘천시관리
집산도로	중로	소계		6	1,130	-	
		1	20	1	120	일반도로	
		2	15	1	42	일반도로	
		2	15	1	115	일반도로	
		2	15	1	275	일반도로	
		2	15	1	60	일반도로	
		3	12	1	518		
특수도로	소로	소계	-	1	78	-	
		3	6	1	78	보행자 전용	

주) 지구 외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총괄면적에서 제외

(2) 주차장

구 분	시설의 세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관리처분사항
계				6,773.1	232대 (대형7대)	
주차장	노 외 주차장	39	춘천시 서면 현암리 874	4,855.1	187대	춘천시 관리
		50	춘천시 서면 현암리 878	1,888.0	45대 (대형7대)	춘천시 관리

(3) 공원

구 분	시설의 세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관리처분사항
계				19,422.1		
공원	소공원	25	춘천시 서면 현암리 882	3,378.5	—	춘천시 관리
공원	근린공원	3	춘천시 서면 현암리 894	16,043.6	—	춘천시 관리

(4) 녹지

구 분	시설의 세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관리처분사항
계				11,657.4		
녹지	완충녹지	45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26 일원	1,104.8	금산 지구	춘천시관리
	완충녹지	46	춘천시 서면 현암리 340 일원	3,700.8	현암 지구	
	경관녹지	15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26 일원	3,374.9	금산 지구	
	경관녹지	16	춘천시 서면 현암리 342-1 일원	3,476.9	현암 지구	

(5) 저류시설

구 분	시설의 세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관리처분사항
유수지	저류시설	5	춘천시 서면 현암리 895일원	4,468.8		춘천시관리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계획

(1) 설립 지원

- 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설립 완료신고 시 완료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

(2) 생산활동 지원

- 산·학·연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기술지도, 공동기술개발 등으로 기업생산성 제고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정보의 확보 및 제공
- 융자자금(산업기반자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알선

(3)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
-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4) 근로자 복지사업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
- 단지 내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단지 내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 및 입주기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지원

(5) 기타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용지의 불법전매 및 장기 유희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관리

- 「산업집적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 등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입주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 산업용지나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 내에 미 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수출·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 관리기관은 공해와 관련되는 특정업체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3) 안전관리

- 입주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공해·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 지시할 수 있다.

다. 기타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명 승인사항(강원도고시 제2021-398호) : 게재생략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0호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춘천시 투자유치과(☎033-250-4225)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수립목적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3조에서 정한 기본적인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

나.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변경)

(1) 산업단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일원

(2) 관리기관 :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위탁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위탁 관리업무 내용

－ 산업(농공)단지 입주지원업무(입주민원 및 자산설립승인 등 포함)

* 산단 내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는 제외

－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업무

－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 기타 협력사업

다. 조성 및 추진경위(변경)

- 2019. 4. 24.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교육부-국토부-증기부)
- 2019. 8. 29.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결과 발표(강원대, 한양대에리카, 한남대)
- 2021. 1. 11.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호)
- 2022. 1. 21.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강원도고시 제2022-20호)

라. 임대현황(변경)

(단위 : m²)

구 분	총면적	임 대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임 대	미 임 대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합 계	66,416.6	－	28,164.6	38,250	66,414.6	66,414.6	2020 ~ 2026	1단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2단계 : 강원대학교
산업시설구역	27,973.2	－	14,753.4	13,219.8	27,973.2	27,973.2		
복 합 구 역	12,017.5	－	－	12,017.5	12,017.5	12,017.5		
공공시설구역	26,423.9	－	13,411.2	13,012.7	26,423.9	26,423.9		

※ 조성기간 : 1단계 : 2020년~2022년, 2단계 : 2023년~2026년

※ 본 사업은 대학부지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후 임대하는 사업으로 분양계획 없음.

마. 입주현황

(단위 : m²)

구 분	입주업체수(개사)			면 적(m ²)		
	첨단제조산업	첨단연구산업	계	첨단제조산업	첨단연구산업	계
계	-	-	-	-	-	-
현 재						
향후계획						

바.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시설명		2021.09월현재	확충계획		
			일정	규모	시행기관
교통 시설	도로	• 남동측으로 우석로(대로3-1호선) 인접	2021 ~ 2026	• 단지내 신설노선 - 중로 2개 노선 736m, 12,227㎡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대학교
	철도	• 남춘천역(경춘선) 인접(2km내)	-	-	-
유통 공급 시설	용수	-	-	• 소양정수장, 소양배수지 • 공업용수 : 143.3㎡/일 • 생활용수 : 301.7㎡/일	-
	전력	-	-	• 7,958kW	한국전력공사
	통신	-	-	• 928회선	KT
	도시 가스	-	-	• 열수요 : 8,082Gcal/년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 대학은 인적·물적 혁신역량을 보유하여 미래 신사업 입지의 최적지로서, 대학 캠퍼스에서 창업부터 본격 기업 경영까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여 대학의 혁신역량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추진
- 대학 캠퍼스 내 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입주시설 신축 지원, 정부의 산학연 협력사업 및 기업역량강화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나. 관리기본 방향

- (1) 대학캠퍼스 내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특성을 살려 첨단산업, 연구가 조화된 혁신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 (2) 합리적인 산업시설 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 (3) 산·학·연·관의 연구·기술개발·생산 등 협력 및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추구
- (4)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활용 등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66,500 (100.0)	28,000 (42.1)	12,027 (18.1)	15,427 (23.2)	11,046 (16.6)

(2) 용도별구역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 가)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중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변업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할 수 있다.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첨단제조산업, 첨단연구산업 중 유치업종(별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다)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 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 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0. 교육연구시설 중 마. 연구소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환경오염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의3의 1중사업장부터 4중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3) 업종별 배치기준

- 가) 관련 업종의 인접 배치를 통한 계열화 추진
- 나) 시설투자의 경제성을 제고한 최적 배치
- 다)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공조처리 가능토록 배치

(4)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총 계			-		28,000m ²	100.0	
산업 시설 용지	산업 1	첨단 제조 산업 [A]	C10	식료품 제조업	6,823m ²	24.4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첨단 연구 산업 [B]	M70	연구개발업	6,412m ²	22.9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산업 2	첨단 제조 산업 [A] + 첨단 연구 산업 [B]	C10	식료품 제조업	14,765m ²	52.7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5) 유치업종배치계획도 : 별첨#2

바. 복합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중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변업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할 수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첨단제조산업, 첨단연구산업 중 유치업종(별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산업집적

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마) 「산업집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와 같은 용도별 건축물
-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예식장 및 회의장, 전시장
 - 5)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6)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 7)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8) 운동시설
 - 9)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환경오염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의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합은 전체 연면적의 15%이하로, 2층 이하에만 입지할 수 있다.

(3) 배치계획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		12,027㎡	100.0	
복합 용지	복합 1	첨단 연구 산업 B	M70	연구개발업	12,027㎡ (복합용지의 50% 적용)	100.0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지원 시설			지원시설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강원대학교 또는 이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주차장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강원대학교 또는 이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1)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3) 입주절차 :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 및 연구소는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4) 입주심사 및 선정

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상 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업체 선정

나) 입주심사위원회는 관리기관이 산학연 혁신허브 관리운영위원회, 강원도, 춘천시 등 관련기관의 관계자로 구

성하여 운영

다) 입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대상업체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5)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

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정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으로 1,650㎡를 말함

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환경 및 안전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7) 안전관리

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나)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다)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8) 기반시설지원

가) 산업단지내 설치된 공공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2제2항제3호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학에 귀속하여 운영

나)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9)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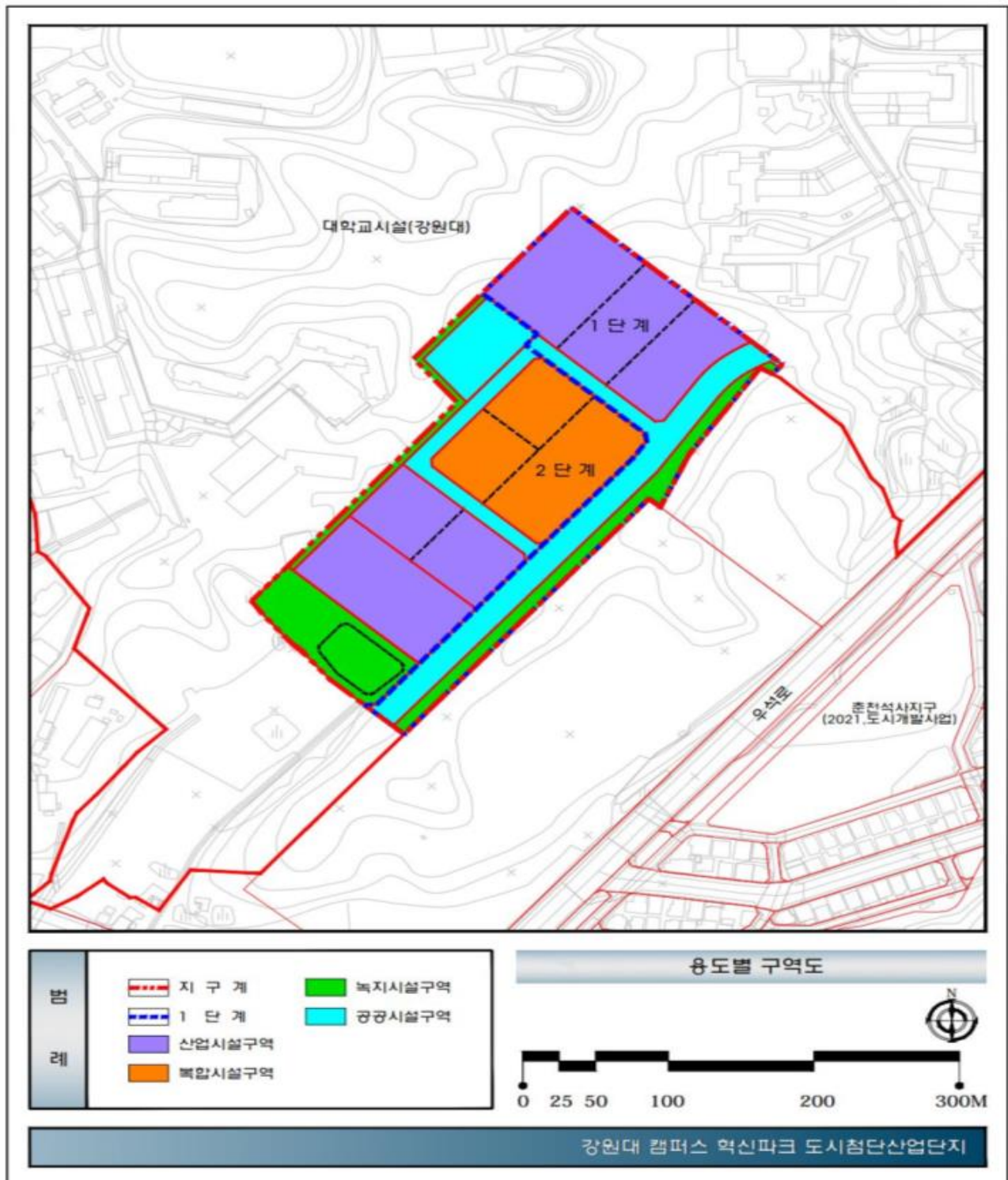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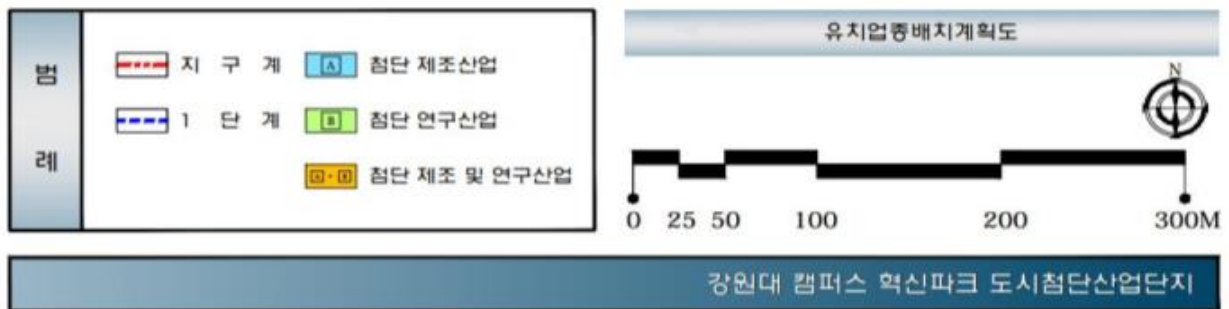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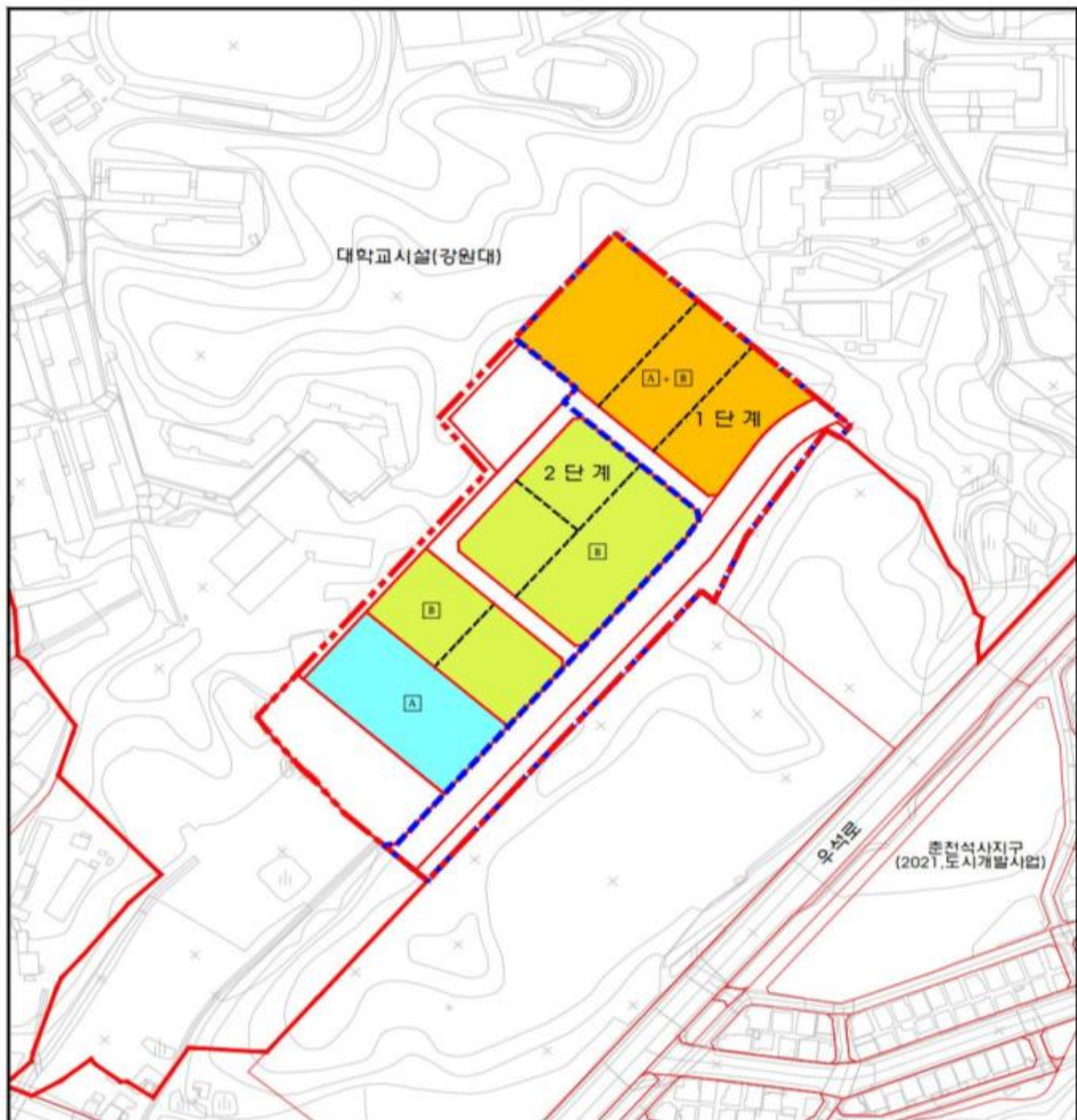
별 첨 1. 용도별 구역도

2. 유치업종배치계획도

[별첨#1] 용도별 구역도



[별첨 #2] 유치업종배치계획도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1호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춘천시 투자유치과(☎033-250-4225)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 관리권자(변경): 강원특별자치도
- 관리기관(변경):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위탁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위탁 관리업무 내용
 - 산업(농공)단지 입주지원업무(입주민원 및 지산설립승인 등 포함)
 - * 산단 내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는 제외
 -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업무
 -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 기타 협력사업

나. 조성목적

- 춘천지역 동서고속도로, 경춘선 복선전철 등 광역 교통망의 개선에 따른 수도권기업 이주수요 수용을 통해 중부 내륙권의 경제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
- 증가하는 산업입지 수요에 대비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다. 위치 및 면적

- 위 치: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일원
- 면 적: 538,575m²

라. 추진경위(변경)

- 2012. 03. 09.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강원도고시 제2012-72호)
- 2012. 12. 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인가고시 (강원도고시 제2012-432호)
- 2013. 06. 20.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14. 03. 11.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강원도고시 제2014-83호)
- 2014. 12. 04.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4-510호)
- 2015. 01. 20.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5-18호)
- 2016. 07. 07.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6-268호)
- 2017. 08. 01.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7-303호)
- 2017. 10. 12. 준공인가 공고(강원도공고 제2017-1040호)
- 2017. 12. 14.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7-531호)
- 2019. 05. 31.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9-233호)
- 2020. 01. 02.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9-534호)
- 2020. 10. 06.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403호)
- 2021. 10. 07.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1-366호)
- 2021. 12. 24. 준공인가 공고(강원도공고 제2021-2708호)
- 2022. 03. 17.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춘천시고시 제2022-111호)

마. 분양계획(변경)

(단위: m²)

구 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성완료	조성중	소 계			
계	538,575.0	329,554.1	－	－	－	329,554.1	2012 ~ 2021	(주)봉명 테크노 밸리
산업시설구역	314,211.4	314,211.4	－	－	－	314,211.4		
지원시설구역	15,342.7	15,342.7	－	－	－	15,342.7		
공공시설구역	106,404.6	－	－	－	－	－		
녹지시설구역	102,616.3	－	－	－	－	－		

바. 입주계획(변경)

(단위: 개소, m²)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24년 1월 현재	24	6	30	285,925.1	13,518.1	299,443
향 후 계 획	1	1	2	28,286.3	1824.6	30,110.9
계	25	7	32	314,211.4	15,342.7	329,554.1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지여건(기반시설)

(1) 교통여건

- 북측으로 중앙고속도로, 남측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조양IC, 남춘천IC)와 인접하여 수도권 및 강원도 내륙 도시와의 접근이 양호하며 춘천 도심과 20분 이내 지역에 위치하여 배후지역 확보가 가능

(2) 기반시설 공급계획

시 설 명	확 충 계 획	
	규 모	시행기관
용 수	생활용수: 139톤/일 공업용수: 11,882톤/일	춘천시
전 력	126,450MWh/년	한국전력
통 신	2,352 회선	개별 통신서비스 기관
환 경	생활오수 발생량: 120톤/일 공장폐수 발생량: 1,667톤/일	춘천시

2.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운영 및 활성화 도모
- 합리적 업종배치,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 경영활동 지원 전개
- 친환경 기업 유치를 위한 적정 규모의 산업 시설용지 제공 및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최대한의 행정·재정적 지원
- 환경 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운영

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1) 입주대상업종

(가) 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D3511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KISC)		비 고
	분류코드	업 종 별	
산업시설용지	C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H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입주자격기준

(가)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우선입주자격

- 단지 내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하고 관리기관과 MOU/MOA등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검토가 완료된 업체
- 수도권 및 타 시·군·구에서 본사 또는 공장 이전 기업
- 지역 실정에 맞는 유망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사업성 검토가 적합한 업체
-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체로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보유업체
-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저공해 업종 영위 기업

(4) 입주절차

(가) 처분계획 및 분양 공고에 따른 입주 절차

- 당해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분양계획 공고 후 관리 기관에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주계약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분양 공고상 입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동순위 경쟁일 경우

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3항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선정된 입주자는 산업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주)봉명테크노밸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분양가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분양가격 결정
－ 총 분양원가 확정 후 본 계약을 체결, 최종 정산 금액
- 산업시설용지: 필지별 산정된 조성원가에 이윤(2.25%)를 적용한 가격
- 지원시설용지: 감정가격

다.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1) 용도별 구역 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총 계	538,575.0	100.0	
산업시설구역	314,211.4	58.6	
지원시설구역	15,342.7	2.8	
공공시설구역	106,404.6	19.5	
녹지시설구역	102,616.3	19.1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관련시설
-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 산업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목 중 장의사,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나목 통신전화국, 라목 통신용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산집법 제33조제7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붙임 1

라.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1) 업종별 배치계획

구분	필지수	면적(㎡)	분류코드	기 정	변 경
산업1	1	16,549.1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산업2	4	118,192.2	C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3	1	76,000.0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산업4	4	24,195.4	C	10	식료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	-
				25	-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14	-
			H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5	3	23,479.4	C	10	식료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구분	필지수	면적(㎡)	분류코드		기 정	변 경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6	5	22,758.8	C	10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음료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	351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
산업7	6	26,704.5	C	10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D	351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
산업8	1	6,332.0	C	10	-	식료품 제조업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8	-	전기장비 제조업
			D	35114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

※ 태양광발전시설은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 및 주차장 상부에 설치

(2) 배치기준

- 유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종별로 집단화 하여 생산성 도모
- 업종 배치 시 단지의 토지이용 고려, 획지구묘 및 분할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집단화, 계열화 도모
- 실제 공장부지 분양 시 실수요에 따라 업종별 공장배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부여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산업단지 내 종업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적 측면에서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수립

(3) 업종별 배치 계획도: 붙임 2

마.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지원시설 설치계획

시 설 명	전 체 면 적	
	개소수	면적(m ²)
계	7	15,342.7
기타 지원시설	7	15,342.7

(2) 지원시설 관리운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본문Ⅱ.3. 2), (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바. 사후 관리계획

(1) 목표

-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 기본계획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한다.
-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집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 내 미계약 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 등이 있는 때에는 산집법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 수출,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 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 내 공원과 완충 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 공간 및 녹지 공간 확보
- 산업단지 내 건축물 축조 시에는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색상·형태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건축 경관 기준을 준수 후 건축 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 입주업체의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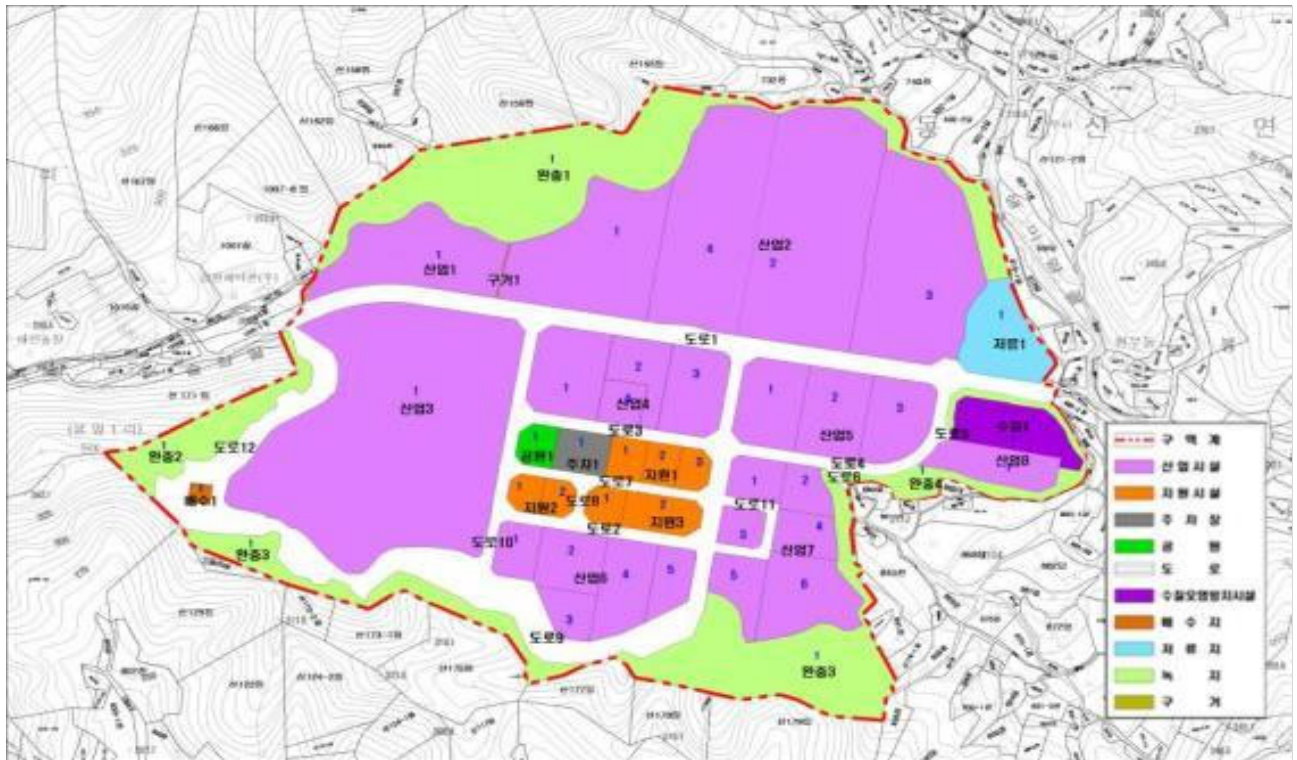
(다) 기타시설 운용계획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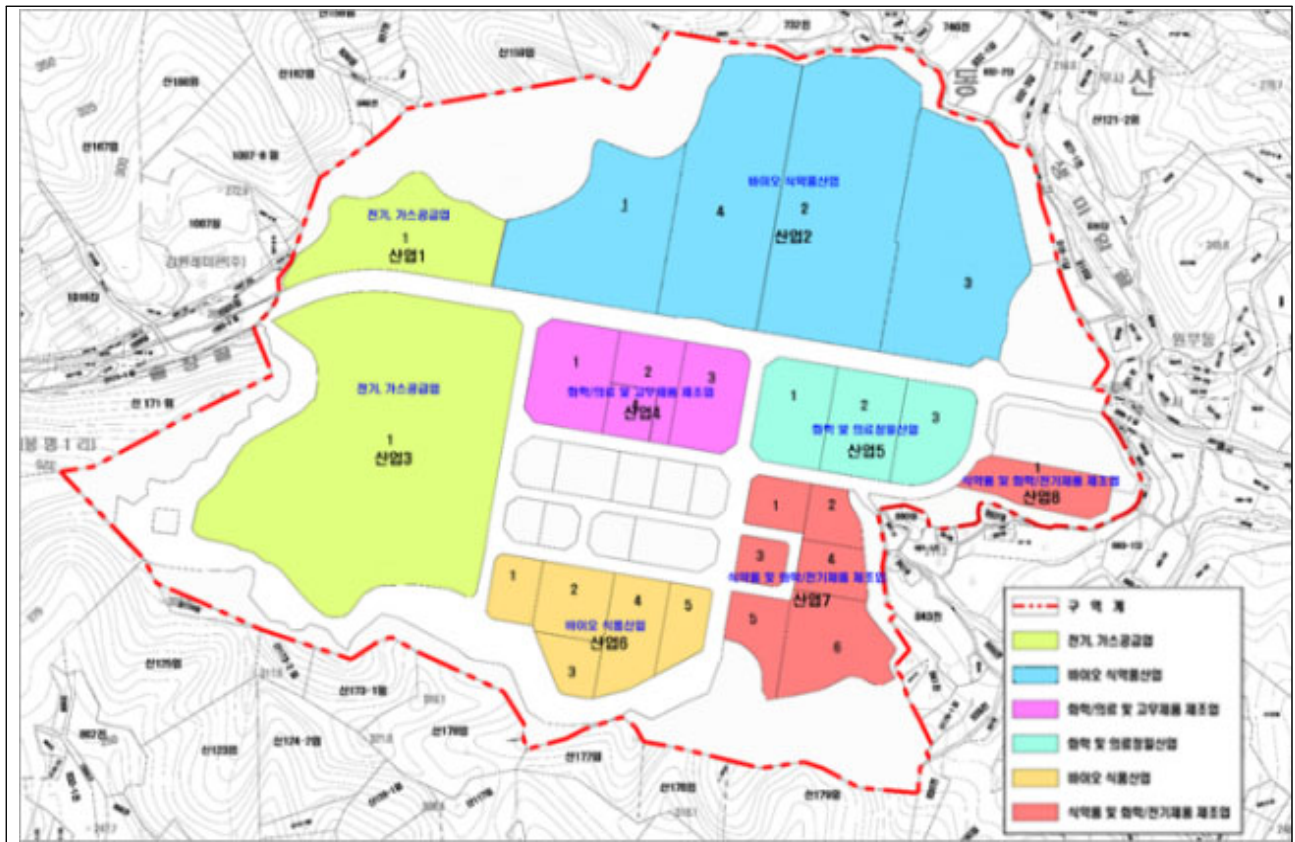
[붙임 1]

용도별 구획 평면도



[붙임 2]

업종별배치 계획도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2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완충녹지, 대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완충녹지, 대로,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결정(변경) 취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2020.07.01.)에 따른 연접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조정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 및 관리로 도시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 완충녹지, 대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하고자 함.

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정구역 전역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2개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3	35	주간선 도 로	9,984	대1-2 (태장동 2042-2일원)	대로1-4 (단구동 1506)	일반 도로		건고제283호 (1967.04.19)	
변경	대로	1	13	35	주간선 도 로	9,411	대1-2 (태장동 2042-2일원)	대로1-4 (단구동 1506)	일반 도로		건고제283호 (1967.04.19)	
기정	대로	3	25	25	주간선 도 로	2,909	소로1-701 (홍양리 1644-1일원)	대로2-1 (태장동 870-2일원)	일반 도로		건고제549호 (1985.12.16)	
변경	대로	3	25	25	주간선 도 로	4,057	소로1-701 (홍양리 1644-1일원)	광로3-4 (우산동 141)	일반 도로		건고제549호 (1985.12.16)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3	대로1-13	도로 연장변경 - L=9,984m → 9,411m 감) 573m	실시설계 반영(동부순환로 터널구간 제척)에 따른 노선 연장변경
대로3-25	대로3-25	도로 연장변경 - L=2,909m → 4,057m 증) 1,148m	1군지사 이전개발, 학성 저류지 조성 등에 따라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연장 및 선형변경

2) 자동차정류장

(1)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신설 1개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01	자동차 정류장	공 영 차고지	홍업면 홍업리 1581-7일원	-	증) 20,271	20,271	금회	

(2)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01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자동차정류장 신설 - A=20,271㎡	교통환경 개선 및 대형화물차 주차공간 필요성에 따라 신설

나) 공간시설

1) 녹지

(1)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3개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제7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태장동 164-4 일원	7,411	감) 87	7,324	건고제549호 (85.12.16)	
변경	10	제10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무실동 1773 일원	31,741	감) 561	31,180	건고제549호 (85.12.16)	
변경	13	제13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태장동 1507-1 일원	70,645	감) 8,188	62,457	강고제51호 (03.02.27)	

(2) 완충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제7호 완충녹지	• 녹지 면적변경 - A = 7,411㎡ → 7,324㎡ 감) 87㎡	• 대로3-25 노선 변경 계획반영에 따라 완충녹지 면적변경
10	제10호 완충녹지	• 녹지 면적변경 - A = 31,741㎡ → 31,180㎡ 감) 561㎡	• 서부순환로 연계도로(송삼마을길) 신설 및 현황에 맞춰 완충녹지 면적변경
13	제13호 완충녹지	• 녹지 면적변경 - A = 70,645㎡ → 62,457㎡ 감) 8,188㎡	• 동부순환도로변 도로개선 설계반영에 따라 진입도로 확보 및 선형조정 등으로 녹지면적 변경

라. 도시관리계획(시설: 완충녹지, 대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도시계획과(☎ 033-737-3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3호

무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을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목 적

가뭄 상습지에 농업, 생활, 환경 등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2. 사업내용

사 업 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동리				
무쇠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양구	양구읍 · 국토정 중앙면	학조리 , 청리 등	404	저수지 1개소 (L=230m, H=47m, Q=3,750천m ³) 양수장 2개소, 진입도로 1조 1,740m, 이설도로 2조 2.620m 평야부 용수로 8조 12.01km	46,009	한국 농어촌공사 홍천·춘천 지사장

3. 사업기간 : 2011. 08. 29. ~ 2023. 12. 31.

4. 기 타 : 준공도서 등 준공인가 관련서류 열람 및 문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읍 홍천로 671 / TEL. 033-430-9530)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4호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산업단지계획 주요 변경사항

- 사업시행자 변경 : 기정)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 변경) 한국자산신탁 (주)
- 시행방법 변경 : 기정) 민·관 합동개발 → 변경) 신탁개발(관리형 토지신탁사업)
- 토지소유자(노림리 300-1번지) 변경 : 기정) 국(국토교통부) → 변경) 한태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기정)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317-1 일원 →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317-1 일원
- 면 적 : 609,289.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간선교통망을 확보한 강원도·경기도·충청북도 접경지역의 산업거점 구축을 통한 이전기업 수요의 적극적인 수용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단지 개발 필요
- 개발심리에 부합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 － 지역개발 가속화로 인해 소규모 산업입지가 조성됨으로서 발생하는 오·폐수 방출 등 자연환경훼손요인을 최소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시행자 : 기정)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 변경) 한국자산신탁 (주)
- 주 소 : 기정) 강원도 원주시 송삼길 212 → 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2010. 04. ~ 2024. 12.
- 시행방법 : 기정) 민·관 합동개발 → 변경) 신탁개발(관리형 토지신탁사업)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 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

품제외) (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제품 제조업(C3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C10. 식품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152,700	41.32	증)152,700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	-	143,195	38.75	증)143,195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	73,668	19.93	증)73,668	
■ 14개항목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10. 식품품 제조업 / C11. 음료 제조업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609,289.20	100	
산업시설용지		369,563.00	60.7	
지원시설용지		19,675.00	3.2	
	공공 및 판매시설	12,985.00	2.1	
	생산활동지원시설	6,690.00	1.1	
	주차장	3,690.00	0.6	2개소
	배수지	3,000.00	0.5	1개소
공공시설용지		220,051.20	36.1	
	폐수종말처리장	7,000.00	1.1	1개소
	저류지	10,557.00	1.7	1개소
	공원	35,308.00	5.8	근린공원 1개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소 공 원 1개소
	녹지		91,755.20	완충녹지 5개소 경관녹지 3개소 연결녹지 1개소
	도로	보행자도로	3,172.00	총 6개 노선
		도로	72,259.00	총 7개 노선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류 별		폭원 (m)				비 고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13	3,999	75,431	
일반 도로	대로	소계		2	449	12,910		
		3	25	2	449	12,910		
	중로	소계		4	2,939	57,465		
		1	20	1	2,112	45,316		
		2	15	2	594	9,303		
		3	12	1	233	2,846		
	소로	소계		1	214	1,731		
		2	8	1	214	1,731	변경	
	특수 도로	소로	소계		6	397	3,172	
2			8	6	397	3,172	변경	
기타		소계		-	-	153	진입도로변(지구외 도로)버스정차대	

※ 원주시 도시계획시설 관리번호를 적용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3,690	
주차장	701	노림리 296번지 일원	1,845	
	702	노림리 1575-4번지 일원	1,845	

※ 원주시 도시계획시설 관리번호를 적용

3) 공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35,308	2개소
근린공원	소계		27,000	
	701	노림리 산64-1번지 일원	27,000	
소공원	소계		8,308	
	701	노림리 1575-3번지 일원	8,308	

※ 원주시 도시계획시설 관리번호를 적용

4) 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9개소	91,755.2		
소 계				5개소	18,958		
기정	701	녹지	완충녹지	노림리 315-2번지 일원	2,372	2010. 04. 30	
기정	702	녹지	완충녹지	노림리 299-2번지 일원	9,744	"	
기정	703	녹지	완충녹지	노림리 927번지 일원	1,236	"	
기정	704	녹지	완충녹지	노림리 1507-1번지 일원	3,995	"	
기정	705	녹지	완충녹지	노림리 1555-1번지 일원	1,611	"	
소 계				3개소	69,334.2		
기정	701	녹지	경관녹지	노림리 316번지 일원	8,482	2010. 04. 30	
기정	702	녹지	경관녹지	노림리 산49번지 일원	39,354	"	
기정	703	녹지	경관녹지	노림리 산66-4번지 일원	21,498.2	"	
소 계				1개소	3,463		
기정	701	녹지	연결녹지	노림리 907번지 일원	3,463	2010. 04. 30	

※ 원주시 도시계획시설 관리번호를 적용

5) 저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10,557	
저류시설	702	노림리 317-1번지 일원	10,557	

※ 원주시 도시계획시설 관리번호를 적용

6) 배수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1 개 소	3,000	
배수지	702	노림리 산64-15번지 일원	3,000	

※ 원주시 도시계획시설 관리번호를 적용

7) 폐수종말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1개소	7,000	
폐수종말처리장	701	노림리 284-2번지 일원	7,000	

※ 원주시 도시계획시설 관리번호를 적용

8)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상수도

구 분	계획용수량 (m³/일)	공 급 계 획	비 고
합 계	3,636.3	-	
공업용수	3,447.7	○ 섬강에서 취수하여 부론배수지에서 배수관로를 통해서 공급	
생활용수	188.6	○ 횡성댐 호소수를 수원으로 하는 원주권 광역상수도를 통하여 용수 공급	

· 하수도

구 분	계획용수량 (m³/일)	공 급 계 획	비 고
합 계	1,239.4	-	
공장폐수	1,033.8	○ 지구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자체처리	
생활오수	205.6		

9)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발생 폐기물량 예측 : 239.689ton/일

구 분	계 획	비 고
합 계	239.689ton/일	
생활폐기물	0.855ton/일	
사업장 폐기물	238.154ton/일	
폐수 슬러지	0.680ton/일	

- 생활폐기물은 원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폐수슬러지는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폐수슬러지는 유기성물질의 함량을 분석하여 유·무기성 여부를 판단 후 적법하게 처리

10)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 전력

구 분	전력사용량 (MWh/년)	공 급 계 획	비 고
전력	128,710	○ 한국전력공사(원주지점)과 협의하여 공급	

· 통신

구 분	통신수요량 (회선)	공 급 계 획	비 고
통신	584	○ KT(원주지점)과 협의하여 공급	

· 에너지

구 분	열수요량 (Gcal/년)	공 급 계 획	비 고
에너지	330,128	○ 참빛원주도시가스공업(주)와 협의하여 공급	

11) 지구 외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진입도로

구 분	위 치	개 요	비 고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노림리 883-6번지 일원	[1단계] - 구 간 :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 일부구간 - 제 원 : L=7.0km(문막교~산업단지 진입부), W=18m ※ 국가지원지방도 선형개량 및 확·포장사업, 부문I·C개설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2단계] - 구 간 :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 일부구간 - 제 원 : L=1.8km(산업단지 통과구간), W=20m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대상시설		시설개요
산업단지 진입도로		-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국지도49호선 확장 및 개설계획을 실시할 예정임
용 수 공급시설	가압장	- 주요내용 : 산업단지 용수공급 및 배수지를 위한 가압장 설치 - 위 치 : 산업단지 외 문막읍 후용리
	배수지	- 주요내용 : 산업단지 공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설치 - 위 치 : 산업단지 근린공원 내 - 면 적 : 3,000㎡
폐수종말 처리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 주요내용 :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위 치 : 산업단지 내 저류지 인접 - 면 적 : 7,000㎡
	오수 펌프장	- 주요내용 : 사업지구 내 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기 위한 처리시설 - 위 치 : 산업단지 내 동 북측 완충녹지 내 - 형 식 : 맨홀펌프장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성명·주소(별첨1)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및 원주시 투자유치과(☎033-737-3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성 명 : 기정)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인선)
변경) 한국자산신탁 (주) (대표자 김규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간선교통망을 확보한 강원도·경기도·충청북도 접경지역의 산업거점 구축을 통한 이전기업 수요의 적극적인 수용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단지 개발 필요
- 개발심리에 부합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증 감(m ²)	비 고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52,700	0.00		
C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143,195	0.00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73,668	0.00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609,289.20	100	
산업시설용지		369,563.00	60.7	
지원시설용지		19,675.00	3.2	
	공공 및 판매시설	12,985.00	2.1	
	생산활동지원시설	6,690.00	1.1	
	주차장	3,690.00	0.6	2개소
	배수지	3,000.00	0.5	1개소
공공시설용지		220,051.20	36.1	
	폐수종말처리장	7,000.00	1.1	1개소
	저류지	10,557.00	1.7	1개소
	공원	35,308.00	5.8	근린공원 1개소 소 공 원 1개소
	녹지	91,755.20	15.1	완충녹지 5개소 경관녹지 3개소 연결녹지 1개소
도로	보행자도로	3,172.00	0.5	총 6개 노선
	도로	72,259.00	11.9	총 7개 노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317-1 일원
- 면 적 : 609,289.2㎡

5.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2010. 04. ~ 2024. 12.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별첨2)

7. 의제처리 되는 인·허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8.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및 원주시 투자유치과(☎033-737-3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 성명·주소(변경)

일련 번호	기정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지분	종류	권리자	권리자 주소
합계						609,289.2						
1	기정	노림리	232	전	245.0	245.0	원주시					
2	기정	노림리	233	전	655.0	655.0	원주시					
3	기정	노림리	233-1	임	602.0	602.0	원주시					
4	기정	노림리	233-2	임	1,074.0	1,074.0	원주시					
5	기정	노림리	234	임	301.0	301.0	원주시					
6	기정	노림리	234-1	전	460.0	460.0	원주시					
7	기정	노림리	235	답	294.0	294.0	원주시					
8	기정	노림리	236	전	10,093.0	10,093.0	원주시					
9	기정	노림리	239	전	2,161.0	2,161.0	원주시					
10	기정	노림리	242	답	482.0	482.0	원주시					
11	기정	노림리	242-4	전	383.0	383.0	원주시					
12	기정	노림리	243-1	답	77.0	77.0	원주시					
13	기정	노림리	248-1	임	825.0	825.0	원주시					
14	기정	노림리	250-1	전	220.0	220.0	원주시					
15	기정	노림리	251	답	70.0	70.0	원주시					
16	기정	노림리	257	전	922.0	922.0	원주시					
17	기정	노림리	258	전	1,025.0	1,025.0	원주시					
18	기정	노림리	259	전	1,418.0	1,418.0	원주시					
19	기정	노림리	263	전	1,306.0	1,306.0	원주시					
20	기정	노림리	264	답	605.0	605.0	원주시					
21	기정	노림리	265	전	516.0	516.0	원주시					
22	기정	노림리	266	전	380.0	380.0	원주시					
23	기정	노림리	267	전	1,484.0	1,484.0	원주시					
24	기정	노림리	268	전	569.0	569.0	원주시					
25	기정	노림리	269	전	575.0	575.0	원주시					
26	기정	노림리	270	답	1,762.0	1,762.0	원주시					
27	기정	노림리	271	전	992.0	992.0	원주시					
28	기정	노림리	272	답	3,025.0	3,025.0	원주시					
29	기정	노림리	276-2	전	606.0	606.0	원주시					
30	기정	노림리	277	전	2,443.0	2,443.0	원주시					
31	기정	노림리	278	답	2,602.0	2,602.0	원주시					
32	기정	노림리	279	답	767.0	767.0	원주시					
33	기정	노림리	280	전	2,218.0	2,218.0	원주시					
34	기정	노림리	281	전	2,704.0	2,704.0	원주시					
35	기정	노림리	282	전	172.0	172.0	원주시					
36	기정	노림리	283	전	684.0	684.0	원주시					
37	기정	노림리	284-1	도	288.0	288.0	국(국토교통부)					
38	기정	노림리	284-2	전	2,382.0	2,382.0	원주시					
39	기정	노림리	284-3	도	34.0	34.0	원주시					
40	기정	노림리	288	답	615.0	615.0	원주시					
41	기정	노림리	289	전	347.0	347.0	원주시					
42	기정	노림리	290	전	1,164.0	1,164.0	원주시					
43	기정	노림리	296	전	4,227.0	4,227.0	원주시					
44	기정	노림리	296-2	전	270.0	270.0	원주시					
45	기정	노림리	297	임	973.0	973.0	원주시					
46	기정	노림리	299-1	답	287.0	287.0	원주시					

일련 번호	기정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지분	종류	권리자	권리자 주소
47	기정	노림리	299-2	도	337.0	337.0	국(국토교통부)					
48	기정	노림리	299-6	도	37.0	37.0	강원도					
49	기정	노림리	300-1	도	547.0	547.0	국(국토교통부)					
	변경	노림리	300-1	도	547.0	547.0	한태구					
50	기정	노림리	300-2	답	135.0	135.0	강원도					
51	기정	노림리	300-4	도	363.0	363.0	강원도					
52	기정	노림리	301-2	도	50.0	50.0	원주시					
53	기정	노림리	301-6	도	124.0	124.0	강원도					
54	기정	노림리	301-11	도	38.0	38.0	강원도					
55	기정	노림리	301-9	답	15.0	15.0	강원도					
56	기정	노림리	301-10	답	462.0	462.0	강원도					
57	기정	노림리	303-4	도	6.0	6.0	국(국토교통부)					
58	기정	노림리	312-4	답	129.0	129.0	원주시					
59	기정	노림리	312-5	도	11.0	11.0	강원도					
60	기정	노림리	315	전	2,036.0	2,036.0	원주시					
61	기정	노림리	315-2	전	700.0	700.0	강원도					
62	기정	노림리	316	전	2,172.0	2,172.0	원주시					
63	기정	노림리	316-1	전	10.0	10.0	원주시					
64	기정	노림리	317	목	1,900.0	1,900.0	원주시					
65	기정	노림리	317-1	잡	15,493.0	15,493.0	원주시					
66	기정	노림리	317-4	목	1,454.0	1,454.0	원주시					
67	기정	노림리	317-5	전	291.0	291.0	원주시					
68	기정	노림리	317-6	대	478.0	478.0	원주시					
69	기정	노림리	317-11	임	378.0	378.0	원주시					
70	기정	노림리	317-12	잡	1,100.0	1,100.0	원주시					
71	기정	노림리	317-13	전	407.0	407.0	원주시					
72	기정	노림리	318	전	212.0	212.0	원주시					
73	기정	노림리	319	전	3,564.0	3,564.0	원주시					
74	기정	노림리	320	답	625.0	625.0	원주시					
75	기정	노림리	321	전	2,671.0	2,671.0	원주시					
76	기정	노림리	322	전	1,028.0	1,028.0	원주시					
77	기정	노림리	323	전	3,233.0	3,233.0	원주시					
78	기정	노림리	324	답	1,256.0	1,256.0	원주시					
79	기정	노림리	325	답	1,669.0	1,669.0	원주시					
80	기정	노림리	326	전	1,481.0	1,481.0	원주시					
81	기정	노림리	327	전	694.0	694.0	원주시					
82	기정	노림리	328	전	2,228.0	2,228.0	원주시					
83	기정	노림리	329	전	569.0	569.0	원주시					
84	기정	노림리	330	전	1,779.0	1,779.0	원주시					
85	기정	노림리	331	전	3,557.0	3,557.0	원주시					
86	기정	노림리	332	전	846.0	846.0	원주시					
87	기정	노림리	333	전	1,845.0	1,845.0	원주시					
88	기정	노림리	334	전	1,590.0	1,590.0	원주시					
89	기정	노림리	858-7	도	54.0	54.0	원주시					
90	기정	노림리	858-3	답	3.0	3.0	원주시					
91	기정	노림리	859-5	도	31.0	31.0	원주시					
92	기정	노림리	859-6	도	169.0	169.0	강원도					
93	기정	노림리	860	답	31.0	31.0	원주시					
94	기정	노림리	861	대	352.0	352.0	원주시					
95	기정	노림리	861-1	전	474.0	474.0	원주시					
96	기정	노림리	862	답	52.0	52.0	원주시					
97	기정	노림리	864	전	1,852.0	1,852.0	원주시					
98	기정	노림리	865	전	1,689.0	1,689.0	원주시					

일련 번호	기정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지분	종류	권리자	권리자 주소
99	기정	노림리	866	전	2,130.0	2,130.0	원주시					
100	기정	노림리	866-1	전	597.0	597.0	원주시					
101	기정	노림리	867	전	3,005.0	3,005.0	원주시					
102	기정	노림리	868	전	582.0	582.0	원주시					
103	기정	노림리	869	답	212.0	212.0	원주시					
104	기정	노림리	883-8	도	27.0	27.0	국(국토교통부)					
105	기정	노림리	893	전	1,154.0	1,154.0	원주시					
106	기정	노림리	894	전	3,808.0	3,808.0	원주시					
107	기정	노림리	895	전	1,438.0	1,438.0	원주시					
108	기정	노림리	895-1	전	321.0	321.0	원주시					
109	기정	노림리	896	전	813.0	813.0	원주시					
110	기정	노림리	897	전	1,101.0	1,101.0	원주시					
111	기정	노림리	898	전	1,342.0	1,342.0	원주시					
112	기정	노림리	899	전	1,560.0	1,560.0	원주시					
113	기정	노림리	899-1	전	1,914.0	1,914.0	원주시					
114	기정	노림리	899-2	전	1,527.0	1,527.0	원주시					
115	기정	노림리	899-3	전	1,676.0	1,676.0	원주시					
116	기정	노림리	900	전	2,420.0	2,420.0	원주시					
117	기정	노림리	901	답	512.0	512.0	원주시					
118	기정	노림리	901-1	전	1,610.0	1,610.0	원주시					
119	기정	노림리	902	전	2,129.0	2,129.0	원주시					
120	기정	노림리	902-1	전	3,987.0	3,987.0	원주시					
121	기정	노림리	903	전	2,268.0	2,268.0	원주시					
122	기정	노림리	903-1	전	1,005.0	1,005.0	원주시					
123	기정	노림리	904-1	전	2,036.0	2,036.0	원주시					
124	기정	노림리	904-2	전	1,359.0	1,359.0	원주시					
125	기정	노림리	905-1	전	8,969.0	8,969.0	원주시					
126	기정	노림리	905-2	전	2,248.0	2,248.0	원주시					
127	기정	노림리	906	전	4,707.0	4,707.0	원주시					
128	기정	노림리	907	전	2,268.0	2,268.0	원주시					
129	기정	노림리	908	답	4,354.0	4,354.0	원주시					
130	기정	노림리	909	전	4,948.0	4,948.0	원주시					
131	기정	노림리	910	답	274.0	274.0	원주시					
132	기정	노림리	911	전	664.0	664.0	원주시					
133	기정	노림리	922-1	전	1,845.0	1,845.0	원주시					
134	기정	노림리	922-2	전	1,124.0	1,124.0	원주시					
135	기정	노림리	927	전	1,005.0	1,005.0	원주시					
136	기정	노림리	928	전	716.0	716.0	원주시					
137	기정	노림리	928-2	도	54.0	54.0	강원도					
138	기정	노림리	1195-15	구	3,275.0	3,275.0	국(농림축산식품부)					
139	기정	노림리	1195-16	구	128.0	128.0	국(농림축산식품부)					
140	기정	노림리	1195-5	구	682.0	682.0	국(농림축산식품부)					
141	기정	노림리	1195-7	구	90.0	90.0	국(농림축산식품부)					
142	기정	노림리	1195-9	구	496.0	496.0	국(농림축산식품부)					
143	기정	노림리	1195-13	구	61.0	61.0	국(농림축산식품부)					
144	기정	노림리	1435-1	답	353.5	353.5	원주시					
145	기정	노림리	1436-1	답	377.3	377.3	원주시					
146	기정	노림리	1437-1	답	529.7	529.7	원주시					
147	기정	노림리	1476-1	도	1.7	1.7	국(농림축산식품부)					
148	기정	노림리	1479-1	구	809.1	809.1	국(농림축산식품부)					
149	기정	노림리	1480-1	구	6.0	6.0	국(농림축산식품부)					
150	기정	노림리	1488-1	답	2,259.0	2,259.0	원주시					
151	기정	노림리	1489-1	답	792.7	792.7	원주시					

일련 번호	기정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지분	종류	권리자	권리자 주소
152	기정	노림리	1490-1	답	2,690.7	2,690.7	원주시					
153	기정	노림리	1491-1	답	2,762.4	2,762.4	원주시					
154	기정	노림리	1492-1	답	2,946.9	2,946.9	원주시					
155	기정	노림리	1493-1	답	2,486.6	2,486.6	원주시					
156	기정	노림리	1494-1	답	1,033.3	1,033.3	원주시					
157	기정	노림리	1495-1	답	1,000.6	1,000.6	원주시					
158	기정	노림리	1496-1	답	1,614.3	1,614.3	원주시					
159	기정	노림리	1497-1	답	1,604.0	1,604.0	원주시					
160	기정	노림리	1498-1	답	1,616.8	1,616.8	원주시					
161	기정	노림리	1499-1	답	1,330.0	1,330.0	원주시					
162	기정	노림리	1500-1	답	1,048.1	1,048.1	원주시					
163	기정	노림리	1501-1	답	923.6	923.6	원주시					
164	기정	노림리	1502-1	답	972.2	972.2	원주시					
165	기정	노림리	1503-1	답	1,172.3	1,172.3	원주시					
166	기정	노림리	1504-1	답	1,495.9	1,495.9	원주시					
167	기정	노림리	1505-1	답	1,942.3	1,942.3	원주시					
168	기정	노림리	1506-1	답	1,959.2	1,959.2	원주시					
169	기정	노림리	1507-1	답	2,046.5	2,046.5	원주시					
170	기정	노림리	1508	도	1,063.1	1,063.1	국(농림축산식품부)					
171	기정	노림리	1509	구	1,353.0	1,353.0	국(농림축산식품부)					
172	기정	노림리	1510	도	1,029.5	1,029.5	국(농림축산식품부)					
173	기정	노림리	1511	구	1,672.0	1,672.0	국(농림축산식품부)					
174	기정	노림리	1512-1	도	1,608.3	1,608.3	국(농림축산식품부)					
175	기정	노림리	1514-1	구	45.8	45.8	국(농림축산식품부)					
176	기정	노림리	1515-1	도	426.0	426.0	국(농림축산식품부)					
177	기정	노림리	1554-1	구	11.2	11.2	국(농림축산식품부)					
178	기정	노림리	1554-2	구	243.4	243.4	국(농림축산식품부)					
179	기정	노림리	1555-1	답	3,456.1	3,456.1	원주시					
180	기정	노림리	1556	도	195.3	195.3	국(농림축산식품부)					
181	기정	노림리	1557	도	98.1	98.1	국(농림축산식품부)					
182	기정	노림리	1558	전	257.4	257.4	원주시					
183	기정	노림리	1559	구	1,094.8	1,094.8	국(농림축산식품부)					
184	기정	노림리	1560-1	답	1,737.5	1,737.5	원주시					
185	기정	노림리	1560-2	답	2,544.8	2,544.8	원주시					
186	기정	노림리	1560-3	답	1,473.2	1,473.2	원주시					
187	기정	노림리	1560-4	답	1,740.2	1,740.2	원주시					
188	기정	노림리	1560-5	답	3,274.2	3,274.2	원주시					
189	기정	노림리	1560-6	구	24.3	24.3	국(농림축산식품부)					
190	기정	노림리	1560-7	답	3,139.0	3,139.0	원주시					
191	기정	노림리	1560-8	답	2,681.5	2,681.5	원주시					
192	기정	노림리	1560-9	답	2,506.8	2,506.8	원주시					
193	기정	노림리	1560-10	과	1,585.0	1,585.0	원주시					
194	기정	노림리	1560-11	답	1,123.9	1,123.9	원주시					
195	기정	노림리	1560-12	답	2,434.1	2,434.1	원주시					
196	기정	노림리	1560-13	답	2,595.0	2,595.0	원주시					
197	기정	노림리	1560-14	답	1,356.2	1,356.2	원주시					
198	기정	노림리	1560-15	답	899.4	899.4	원주시					
199	기정	노림리	1560-16	답	1,835.3	1,835.3	원주시					
200	기정	노림리	1560-17	답	1,917.6	1,917.6	원주시					
201	기정	노림리	1560-18	답	1,996.5	1,996.5	원주시					
202	기정	노림리	1560-19	답	1,770.3	1,770.3	원주시					
203	기정	노림리	1561	구	765.0	765.0	국(농림축산식품부)					
204	기정	노림리	1562	구	483.4	483.4	국(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기정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지분	종류	권리자	권리자 주소
205	기정	노림리	1563	도	49.7	49.7	국(농림축산식품부)					
206	기정	노림리	1564	도	1,091.0	1,091.0	국(농림축산식품부)					
207	기정	노림리	1565	구	173.9	173.9	국(농림축산식품부)					
208	기정	노림리	1566-1	답	934.0	934.0	원주시					
209	기정	노림리	1566-2	답	653.7	653.7	원주시					
210	기정	노림리	1566-3	답	1,614.4	1,614.4	원주시					
211	기정	노림리	1566-4	답	901.3	901.3	원주시					
212	기정	노림리	1567	구	561.6	561.6	국(농림축산식품부)					
213	기정	노림리	1568	구	124.7	124.7	국(농림축산식품부)					
214	기정	노림리	1569	구	575.1	575.1	국(농림축산식품부)					
215	기정	노림리	1570	도	873.0	873.0	국(농림축산식품부)					
216	기정	노림리	1571	도	1,050.6	1,050.6	국(농림축산식품부)					
217	기정	노림리	1572	도	1,076.2	1,076.2	국(농림축산식품부)					
218	기정	노림리	1573	구	576.2	576.2	국(농림축산식품부)					
219	기정	노림리	1574	구	938.2	938.2	국(농림축산식품부)					
220	기정	노림리	1575-1	답	961.3	961.3	원주시					
221	기정	노림리	1575-2	구	11.0	11.0	국(농림축산식품부)					
222	기정	노림리	1575-3	답	1,855.1	1,855.1	원주시					
223	기정	노림리	1575-4	답	2,453.7	2,453.7	원주시					
224	기정	노림리	1575-5	답	1,170.6	1,170.6	원주시					
225	기정	노림리	1575-6	답	1,931.9	1,931.9	원주시					
226	기정	노림리	1575-7	답	3,538.5	3,538.5	원주시					
227	기정	노림리	1575-8	답	3,645.5	3,645.5	원주시					
228	기정	노림리	1575-9	답	3,893.8	3,893.8	원주시					
229	기정	노림리	1575-10	답	3,124.9	3,124.9	원주시					
230	기정	노림리	1575-11	전	1,319.5	1,319.5	원주시					
231	기정	노림리	1575-12	답	322.0	322.0	원주시					
232	기정	노림리	1575-13	답	920.1	920.1	원주시					
233	기정	노림리	1575-14	답	1,004.5	1,004.5	원주시					
234	기정	노림리	1576	구	582.9	582.9	국(농림축산식품부)					
235	기정	노림리	1577	구	503.5	503.5	국(농림축산식품부)					
236	기정	노림리	1578	구	678.6	678.6	국(농림축산식품부)					
237	기정	노림리	1579	전	1,348.0	1,348.0	원주시					
238	기정	노림리	1580	도	1,228.1	1,228.1	국(농림축산식품부)					
239	기정	노림리	1581	구	263.2	263.2	국(농림축산식품부)					
240	기정	노림리	1582	구	261.6	261.6	국(농림축산식품부)					
241	기정	노림리	1583	도	592.4	592.4	국(농림축산식품부)					
242	기정	노림리	1584	도	877.5	877.5	국(농림축산식품부)					
243	기정	노림리	산39-1	임	4,047.0	4,047.0	원주시					
244	기정	노림리	산41-6	임	1,642.0	1,642.0	원주시					
245	기정	노림리	산41-7	임	785.0	462.0	원주시					
246	기정	노림리	산43-2	임	1,388.0	1,388.0	원주시					
247	기정	노림리	산43-5	임	7,959.0	7,959.0	원주시					
248	기정	노림리	산43-6	임	826.0	826.0	원주시					
249	기정	노림리	산43-14	임	330.0	330.0	원주시					
250	기정	노림리	산43-15	도	874.0	874.0	원주시					
251	기정	노림리	산43-9	임	826.0	826.0	원주시					
252	기정	노림리	산43-17	도	863.0	863.0	강원도					
253	기정	노림리	산43-18	도	14.0	14.0	강원도					
254	기정	노림리	산43-13	도	2,062.0	2.5	강원도					
255	기정	노림리	산43-19	도	2,052.0	2,052.0	강원도					
256	기정	노림리	산44-1	임	295.0	295.0	원주시					
257	기정	노림리	산44-3	임	295.0	295.0	원주시					

일련 번호	기정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지분	종류	권리자	권리자 주소
258	기정	노림리	산44-4	임	19,838.0	19,838.0	원주시					
259	기정	노림리	산44-5	임	126.0	126.0	원주시					
260	기정	노림리	산44-6	임	669.0	669.0	원주시					
261	기정	노림리	산45	임	18,545.0	18,545.0	원주시					
262	기정	노림리	산46	임	1,289.0	1,289.0	원주시					
263	기정	노림리	산47	임	3,967.0	3,967.0	원주시					
264	기정	노림리	산48	임	8,430.0	8,430.0	원주시					
265	기정	노림리	산49	임	3,938.0	3,938.0	원주시					
266	기정	노림리	산49-1	임	12,442.0	12,442.0	원주시					
267	기정	노림리	산49-5	임	303.0	303.0	원주시					
268	기정	노림리	산49-3	임	2,361.0	2,361.0	원주시					
269	기정	노림리	산50-1	임	4,126.0	4,126.0	원주시					
270	기정	노림리	산52-3	임	1,829.0	1,829.0	원주시					
271	기정	노림리	산54-2	임	461.0	461.0	원주시					
272	기정	노림리	산55-2	임	123.0	123.0	원주시					
273	기정	노림리	산58-8	임	563.0	563.0	원주시					
274	기정	노림리	산58-9	임	2,420.0	2,420.0	원주시					
275	기정	노림리	산60-1	임	8,231.0	8,231.0	원주시					
276	기정	노림리	산64-1	임	23,207.0	23,207.0	원주시					
277	기정	노림리	900-1	전	3,035.0	3,035.0	원주시					
278	기정	노림리	산64-5	임	793.0	793.0	원주시					
279	기정	노림리	산64-6	임	7,577.0	7,577.0	원주시					
280	기정	노림리	산64-14	임	7,507.0	7,507.0	원주시					
281	기정	노림리	산64-15	임	19,984.0	19,984.0	원주시					
282	기정	노림리	산65	임	21,856.0	21,856.0	원주시					
283	기정	노림리	산65-1	임	6,139.0	6,139.0	원주시					
284	기정	노림리	산65-2	임	2,009.0	2,009.0	원주시					
285	기정	노림리	산66-5	임	13,231.0	13,231.0	원주시					
286	기정	노림리	산66-4	임	8,681.0	8,681.0	원주시					
287	기정	노림리	산66-2	임	8,997.0	8,997.0	원주시					
288	기정	노림리	산66-7	도	380.0	380.0	원주시					
289	기정	노림리	산67	묘	318.0	318.0	원주시					
290	기정	노림리	산67-1	도	66.0	43.0	강원도					
291	기정	홍호리	1	답	3,269.0	3,269.0	원주시					
292	기정	홍호리	2	답	2,836.0	2,836.0	원주시					
293	기정	홍호리	3	전	1,464.0	1,464.0	원주시					
294	기정	홍호리	4	전	294.0	294.0	원주시					
295	기정	홍호리	130	답	598.0	598.0	원주시					
296	기정	홍호리	131	답	2,291.0	2,291.0	원주시					
297	기정	홍호리	132	답	1,455.0	1,455.0	원주시					
298	기정	홍호리	133	전	1,478.0	1,478.0	원주시					
299	기정	홍호리	134	전	555.0	555.0	원주시					
300	기정	홍호리	135	전	569.0	569.0	원주시					
301	기정	홍호리	136-1	전	1,185.0	1,185.0	원주시					
302	기정	홍호리	산1-3	임	4,168.0	4,168.0	원주시					
303	기정	홍호리	산1-1	임	10,473.0	10,473.0	원주시					
304	기정	홍호리	산1-2	임	405.0	405.0	원주시					
305	기정	홍호리	산2-5	임	17,090.0	17,090.0	원주시					

[별첨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원주시 전체)(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867,815,242	100.00	
도 시 지 역	합 계		87,488,161	10.08
	주거 지역	소 계	25,320,634	2.92
		제1종전용주거지역	237,381	0.03
		제2종전용주거지역	401,634	0.05
		제1종일반주거지역	6,348,212	0.73
		제2종일반주거지역	11,545,332	1.33
		제3종일반주거지역	4,631,421	0.53
		준주거지역	2,156,654	0.25
	상업 지역	소 계	2,424,350	0.28
		중심상업지역	210,787	0.02
		일반상업지역	2,185,218	0.25
		근린상업지역	28,345	0.01
	공업 지역	소 계	6,360,330	0.73
		일반공업지역	4,866,460	0.56
		준공업지역	1,493,870	0.17
	녹지 지역	소 계	53,382,847	6.15
		생산녹지지역	3,831,676	0.44
		자연녹지지역	49,551,171	5.71
비 도 시 지 역	합 계		780,327,081	89.92
	관리 지역	소 계	271,292,142	31.27
		관리지역	1,571	0.01
		보전관리지역	71,897,856	8.29
		생산관리지역	38,481,951	4.43
		계획관리지역	160,910,764	18.54
	농림지역		397,933,330	45.85
	자연환경보전지역		111,101,609	12.80

2)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계		609,289.2	100.0	
도시지역		609,289.2	100.0	
공업 지역	소계	609,289.2	100.0	
	일반공업지역	588,222.2	96.5	
	준공업지역	21,067.0	3.5	
비도시지역		1,165.8	—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708.0	—	
	생산관리지역	457.8	—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가) 도로 총괄표

구분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도로	합계	13	3,999	75,431	1	2,112	45,316	9	1,205	14,206	3	682	15,756	
	일반 도로	소계	7	3,602	72,106	1	2,112	45,316	3	808	11,034	3	682	15,756
		대로	2	449	12,910	—	—	—	—	—	2	449	12,910	
		중로	4	2,939	57,465	1	2,112	45,316	2	594	9,303	1	233	2,846
		소로	1	214	1,731	—	—	—	1	214	1,731	—	—	—
	특수 도로	소계	6	397	3,172	—	—	—	6	397	3,172	—	—	—
		소로	6	397	3,172	—	—	—	6	397	3,172	—	—	—
	기타	소계	—	—	153	—	—	—	—	—	—	—	—	진입도로변 (지구외도로) 버스정차대

(나)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707	25	집산 도로	105	부론면 노람리 산43-15 일원	부론면 노람리 317-5 일원	일반도로		2010. 04. 30	
기정	대로	3	708	25	집산 도로	344	부론면 노람리 1507-1 일원	부론면 노람리 산66-4 일원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708	20	집산 도로	2,112	부론면 노람리 산65 일원	부론면 노람리 908 일원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704	15	집산 도로	213	부론면 노람리 산60-1 일원	부론면 노람리 236 일원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705	15	집산 도로	381	부론면 노람리 산65 일원	부론면 노람리 산66-4 일원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701	12	집산 도로	233	부론면 노람리 896 일원	부론면 노람리 236 일원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762	8	특수 도로	130	부론면 노림리 산44-4 일원	부론면 노림리 산39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763	8	특수 도로	90	부론면 노림리 1488-1 일원	부론면 노림리 866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764	8	특수 도로	45	부론면 노림리 296 일원	부론면 노림리 867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765	8	특수 도로	32	부론면 노림리 239 일원	부론면 노림리 1575-3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766	8	특수 도로	55	부론면 노림리 897 일원	부론면 노림리 239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767	8	특수 도로	45	부론면 노림리 1575-8 일원	부론면 노림리 1575-6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768	8	집산 도로	214	부론면 노림리 901 일원	부론면 노림리 산64-15 일원	일반도로		"	

2) 주차장(변경없음)

(1) 주차장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3,690	
주차장	701	노림리 296번지 일원	1,845	
	702	노림리 1575-4번지 일원	1,845	

3) 녹지(변경없음)

(가)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9개소	91,755.2		
소 계				5개소	18,958		
기정	701	녹지	완충녹지	노림리 315-2번지 일원	2,372	2010. 04. 30	
기정	702	녹지	완충녹지	노림리 299-2번지 일원	9,744	"	
기정	703	녹지	완충녹지	노림리 927번지 일원	1,236	"	
기정	704	녹지	완충녹지	노림리 1507-1번지 일원	3,995	"	
기정	705	녹지	완충녹지	노림리 1555-1번지 일원	1,611	"	
소 계				3개소	69,334.2		
기정	701	녹지	경관녹지	노림리 316번지 일원	8,482	2010. 04. 30	
기정	702	녹지	경관녹지	노림리 산49번지 일원	39,354	"	
기정	703	녹지	경관녹지	노림리 산66-4번지 일원	21,498.2	"	
소 계				1개소	3,463		
기정	701	녹지	연결녹지	노림리 907번지 일원	3,463	2010. 04. 30	

4) 공원(변경없음)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계				2개소	35,308		
기정	701	공원	근린공원	노림리 산64-1번지 일원	27,000	2010. 04. 30	
기정	701	공원	소공원	노림리 1575-3번지 일원	8,308	"	

5) 배수지(변경없음)

(가) 배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702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노림리 산64-15번지 일원	3,000	2010. 04. 30	

6) 유수지(변경없음)

(가)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702	유수지	저류 시설	노림리 317-1번지 일원	10,557	2010. 04. 30	

7)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70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노림리 284-2번지 일원	7,000	2008. 09. 12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동일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701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람리 317-1번지 일원	609,289.2	-	-

다. 기반시설의 배치과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동일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계		609,289.2			
A-1	A (산업시설용지)	369,563	노람리 1491-1 일원	12,044	
A-2			노람리 1499-1 일원	12,320	
A-3			노람리 1505-1 일원	12,256	
A-4			노람리 산66-5 일원	12,268	
A-5			노람리 산1 일원	10,710	
A-6			노람리 1 일원	11,097	
A-7			노람리 산2-5 일원	12,455	
A-8			노람리 산64-15 일원	8,622	
A-9			노람리 산66-2 일원	9,136	
A-10			노람리 산1-1 일원	9,380	
A-11			노람리 산44-4 일원	12,585	
A-12	A (산업시설용지)	369,563	노람리 산45 일원	9,002	
A-13			노람리 산45 일원	10,044	
A-14			노람리 산46 일원	9,262	
A-15			노람리 산49-1 일원	10,688	
A-16			노람리 1560-7 일원	9,648	
A-17			노람리 1560-9 일원	11,596	
A-18			노람리 1560-17 일원	11,179	
A-19			노람리 1575-10 일원	14,498	
A-20			노람리 산60-1 일원	7,770	
A-21			노람리 899 일원	7,770	
A-22			노람리 905-2 일원	7,854	
A-23			노람리 산64-1 일원	7,854	
A-24			노람리 905-1 일원	7,854	
A-25			노람리 904-2 일원	7,854	
A-26			노람리 906 일원	7,854	
A-27			노람리 산64-6 일원	7,854	
A-28			노람리 산65 일원	7,798	
A-29			노람리 908 일원	7,798	
A-30			노람리 1555-1 일원	13,817	
A-31			노람리 319 일원	22,356	
A-32			노람리 330 일원	11,933	
A-33			노람리 277 일원	11,646	
A-34			노람리 산70 일원	11,048	
A-35			노람리 산48 일원	11,713	
B-1	B	19,675	노람리 1575-7 일원	1,42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B-2	(지원시설용지)		노림리 1575-7 일원	1,323	
B-3			노림리 236 일원	1,258	
B-4			노림리 239 일원	1,238	
B-5			노림리 236 일원	1,238	
B-6			노림리 867 일원	1,238	
B-7			노림리 897 일원	1,238	
B-8			노림리 868 일원	1,258	
B-9			노림리 867 일원	1,324	
B-10			노림리 236 일원	1,444	
B-11			노림리 239 일원	1,845	주차장701
B-12			노림리 1575-4 일원	1,845	주차장702
B-13			노림리 산64-15번지 일원	3,000	배수지702
C-1	C (공공시설용지)	220,051.2	노림리 산43-15 일원	3,620	대로3-707
C-2			노림리 1507-1 일원	9,290	대로3-708
C-3			노림리 산65 일원	45,316	중로1-708
C-4			노림리 산60-1 일원	3,420	중로2-704
C-5			노림리 산65 일원	5,883	중로2-705
C-6			노림리 896 일원	2,846	중로3-701
C-7			노림리 산44-4 일원	1,037	소로2-762
C-8			노림리 1488-1 일원	720	소로2-763
C-9			노림리 296 일원	360	소로2-764
C-10			노림리239 일원	438	소로2-765
C-11			노림리 897 일원	257	소로2-766
C-12			노림리 1575-8 일원	360	소로2-767
C-13			노림리 901 일원	1,731	소로2-768
C-14			노림리 315-2번지 일원	2,372	완충녹지701
C-15			노림리 299-2번지 일원	9,744	완충녹지702
C-16			노림리 927번지 일원	1,236	완충녹지703
C-17			노림리 1507-1번지 일원	3,995	완충녹지704
C-18			노림리 1555-1번지 일원	1,611	완충녹지705
C-19			노림리 316번지 일원	8,482	경관녹지701
C-20			노림리 산49번지 일원	39,354	경관녹지702
C-21			노림리 산66-4번지 일원	21,498.2	경관녹지703
C-22			노림리 907번지 일원	3,463	연결녹지701
C-23			노림리 산64-1번지 일원	27,000	근린공원701
C-24			노림리 1575-3번지 일원	8,308	소공원701
C-25			노림리 317-1번지 일원	10,557	저류지702
C-26			노림리 284-2번지 일원	7,000	폐수종말 처리장701
기타			노림리 1491-1 일원	153	지구외도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도면 : 게재 생략

마.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A-1~35	용 도	허 용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 허	○ 허용용도 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배출 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유도
		형 태		—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건축선		—
지원 시설 용지	B-1~10	용 도	허 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목 중 장의사,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나목 전신전화국, 라목 통신용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유도 ○ 공동개발 권장
		형 태		—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건축선		—
지원 시설 용지	B-11~12	용 도	허 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 허	○ 허용용도 외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B-13	용 도	허 용	○ 수도공급을 위한 배수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외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48호

－ 국도56호선 광원5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외 1개소 정비사업 －
제안서 정성적평가 결과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 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국도56호선 홍천 내 광원5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지방도446호선 미산2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제안서에 대한 정성적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 평가일시 / 장소 : 2024. 2. 15.(목) 14:00 /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2층 회의실
- ☐ 평가위원(7명): 김재현, 나병찬, 노희찬, 반호기, 송종명, 임민수, 정우영 * 가나다순
- ☐ 평가안건: 국도56호선 홍천 내 광원5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외 1건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지방도446호선 미산2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패널식옹벽)

☐ 제 안 자 : 마성이엔씨☐ 평가점수

평가항목	심사위원							비고
	1	2	3	4	5	6	7	
시공성	우	미	미	미	우	미	미	
안전성	우	우	수	우	미	우	미	
유지관리	수	우	미	미	미	우	우	
경관성	미	우	미	수	미	우	수	
합계	72	70	68	70	66	70	70	

☐ 제 안 자 : 정교건설(주)☐ 평가점수

평가항목	심사위원							비고
	1	2	3	4	5	6	7	
시공성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안전성	수	미	우	수	수	수	수	
유지관리	우	미	수	우	우	우	수	
경관성	수	미	우	우	수	수	우	
합계	78	68	76	76	78	78	78	

☐ 제 안 자 : (주)제이에이치☐ 평가점수

평가항목	심사위원							비고
	1	2	3	4	5	6	7	
시공성	미	우	우	우	미	미	우	
안전성	미	수	미	미	우	우	우	
유지관리	미	수	우	수	수	미	수	
경관성	우	수	수	미	우	수	우	
합계	66	78	72	70	72	70	74	

(국도56호선 홍천 내 광원5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낙석방호시설)

☐ 제 안 자 : (주)창광이엔씨(1인제안사)☐ 평가점수

평가항목	심사위원							비고
	1	2	3	4	5	6	7	
결과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부

* 평가위원 순서와 평가결과 위원 순서는 무관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4-0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

○ 퇴직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의회사무과		직위	의원		성명	박귀남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764,375	0	55,981	708,394		
본인	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141번지 2,192.00㎡	39,237	0	3,069	36,168	가액변동	
본인	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079-13번지 791.00㎡	23,018	0	1,503	21,515	가액변동	
본인	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079-2번지 2,075.00㎡	60,382	0	3,942	56,440	가액변동	
본인	답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429-14번지 4,130.00㎡	62,776	0	4,543	58,233	가액변동	
본인	답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429-19번지 2,000.00㎡	30,400	0	2,200	28,200	가액변동	
본인	답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472-5번지 2,615.00㎡	49,946	0	4,445	45,501	가액변동	
본인	답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773번지 4,629.00㎡	69,435	0	5,092	64,343	가액변동	
모	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079-12번지 6,064.00㎡	153,419	0	11,521	141,898	가액변동	
모	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078번지 215.00㎡	4,773	0	365	4,408	가액변동	
모	대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079-5번지 476.00㎡	16,041	0	1,190	14,851	가액변동	
모	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082번지 3,084.00㎡	35,466	0	2,467	32,999	가액변동	
모	답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63번지 413.00㎡	5,204	0	372	4,832	가액변동	
모	답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64번지 223.00㎡	2,810	0	201	2,609	가액변동	
모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산 78번지 8,529.00㎡	7,548	0	477	7,071	가액변동	
모	대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278번지 324.00㎡	7,160	0	486	6,674	가액변동	
모	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279-1번지 3,448.00㎡	54,134	0	4,138	49,996	가액변동	
모	대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279-2번지 136.00㎡	3,128	0	204	2,924	가액변동	
모	대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279-3번지 301.00㎡	8,849	0	481	8,368	가액변동	
모	대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279-4번지 165.00㎡	4,554	0	247	4,307	가액변동	
모	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279-5번지 1,018.00㎡	15,066	0	1,119	13,947	가액변동	
모	답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280번지 364.00㎡	5,715	0	437	5,278	가액변동	
모	답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405-6번지 1,785.60㎡	29,105	0	1,964	27,141	가액변동	
모	답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737번지 1,455.00㎡	22,116	0	1,455	20,661	가액변동	
모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산 103번지 43,636.00㎡	39,098	0	3,011	36,087	가액변동	
모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산 153번지 7,041.00㎡	9,294	0	634	8,660	가액변동	
모	임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산 58번지 6,645.00㎡	5,701	0	418	5,283	가액변동	
▶ 건물(소계)			135,510	99	2,100	133,509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의회사무과		직위	의원		성명	박귀남
(단위 : 천원)							
본인	단독주 택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대지 660.00㎡ 건물 104.73㎡	92,400	0	2,000	90,400	가액변동
본인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대지 660.00㎡ 건물 166.38㎡	23,410	99	0	23,509	가액변동
모	단독주 택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건물 170.50㎡	19,700	0	100	19,6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4,488	0	15,807	38,681	
본인	자동차	2012년식 봉고Ⅲ 배기량(2,497cc)	2,236	0	572	1,664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21년식 모닝 배기량(998cc)	10,467	0	2,989	7,478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23년식 팰리세이드 배기량(2,199cc)	41,785	0	12,246	29,539	가액변동
▶ 예금(소계)			390,597	185,934	161,087	415,444	
본인		농협손해보험 720(300 증가), 농협은행 12,797(5,024 증가), 농협중앙회 91,492(125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312(975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공제사업부 32,784(2,400 증가)	134,531	75,364	66,790	143,105	정기예탁, 보험료납입, 저축, 해약 등
배우자		(주)KB손해보험 15,712(1,539 증가), DB손해보험(주) 25,546(1,267 증가), 농협중앙회 87,000(2,847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2,000(500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0,693(8,362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공제사업부 14,400(2,800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0,216(252 증가)	238,003	101,720	84,153	255,570	
모		국민은행 99, 농협중앙회 16,529(1,296 감소), 산림조합중앙회 141(2 증가)	18,063	8,850	10,144	16,769	
▶ 채무(소계)			133,085	30,000	26,314	136,771	
본인	금융채 무	농협은행 50,000, 농협중앙회 86,771(8,262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0(3,576 감소), 현대캐피탈 0(1,000 감소)	133,085	30,000	26,314	136,771	채무상환
총 계			1,211,885	156,033	208,661	1,159,257	증감액: -52,628천원 (가액변동: -73,789천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37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중 2020년~2021년도에 제·개정된 조례의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순·경미한 사항(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조문 신설·삭제·정비

3. 의견제출

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 e-mail: njhlkm96@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담당자 노진희, TEL : 033-258-54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신규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교육감의 책무)”를“(교육감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에서”를 “학교 실정에 맞게”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를 “시책을 수립·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향토사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 제목“(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추진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를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그 밖에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7조)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북한 교육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와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의 교육지원”을 “교육 지원”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함으로써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세 이상 만24세”를 “6세 이상 24세”로 한다.

제3조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취급하여야”를 “취급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지원계획)”을“(지원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한다.

제6조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위탁교육)”을“(업무의 위탁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를 “교육지원기관에”로 한다.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을 “(보조금의 지원)” 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여” 를 “규정함으로써” 로 한다.

제3조 중 “청소년 유해약물” 을 “청소년유해약물” 로, “시행하여야” 를 “시행해야” 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실행계획의 수립)” 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를 “수립·시행해야” 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연수)” 를 “(교원연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11조) 중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구축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 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를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로 한다.

제3조 중 “노력하여야” 를 “노력해야”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재난지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을 “법 제64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 을 “법 제64조제3항” 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에 따라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을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으로 한다.

제5조 중 “운용하여야” 를 “운용해야” 로 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있도록 하기 위한”을 “있도록”으로, “규정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6조 제1항의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조 제1항의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을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5조) 중 “지원계획”을 “제5조의 지원계획”으로,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 수업 시수 및 교육내용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확보에 노력하여야”를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6조 제1항의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조 제1항의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중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를 “생존수영교육시”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연수 및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학예”를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민의”를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입법예고)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문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유의하여야”를 “유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정하여야”를 “상정해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9조)제2항 중 “공청회에 관하여는”를 “공청회는”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제3호·제6호,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의”를 “설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책임자 성명 및”을 “관리책임자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제1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애향심과 역사 공부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데 필요한 학교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 <u>문화재</u> 등 지역 고유의 역사 교육을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국가유산 ----- -----. 3.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향토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 단계에 적합한 향토사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향토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 ----- 학교 실정에 맞게 -----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 ② ----- ----- 노력해야 -----. ③ 학교의 장은 향토사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7. 그 밖에 향토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의 활성화 계획에 따라 향토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삭 제>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향토사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행사 등)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향토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지역사회 협력) 교육장은 향토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원,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 ----- ----- ----- ----- 있다.
제8조(행정 및 재정 지원) 교육감 및 교육장은 향토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탈북 학생의 남북한 교육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와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교육 지원----- ----- ----- 규정함으로 로써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1. -----

현행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u>만6세 이상 만24세</u>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 ----- ----- ----- <u>6세 이상 24세</u> ----- -----.
2. (생략)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u>마련하여야</u>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생략) 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u>취급하여야</u>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u>제공하여야</u> 한다. 제7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을 위하여 교육지원기관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탈북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u>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u> 교육하게 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 ----- ----- ----- <u>만</u> <u>련해야</u> -----. 제4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취급해야</u>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 ----- <u>수</u> <u>립·시행해야</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제공) ----- ----- ----- ----- ----- ----- <u>제공해야</u>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u>교육지원기관에</u> -----. 제8조(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기관의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제8조(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기관의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기관에 지원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삭 제>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하여</u>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u>청소년 유해약물</u>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u>시행하여야</u>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시행하여야</u> 한다. ② (생 략)	제1조(목적) ----- ----- <u>규정함으로써</u> ----- ----- -----. 제3조(교육감의 책무) ----- ----- <u>청소년유해약물</u> ----- ----- <u>시행해야</u>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u>수립·시행해야</u>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자문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교육의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10조 (생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제11조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역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 ----- ----- -----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 등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u>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u> 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정의) ----- -----. 1. -----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u>노력하여야</u>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 ----- <u>노력해야</u> -----.
제5조(지원대상) <u>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u>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교한 학교의 학생 3. (생략)	제5조(지원대상) <u>교육재난지원금 지원</u> ----- ----- -----. 1. <u>법 제64조제1항</u> ----- ----- 2. <u>법 제64조제3항</u> ----- ----- 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삭 제>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 ----- 운용해야 ----- -----.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초등학생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있도록 ----- ----- 규정함-----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 ----- ----- 노력해야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현행	개정안
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수립·시행해야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u>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u>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u>지원계획을</u>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영장 시설 현황·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u>조사하여야</u> 한다.	제4조(실태조사) ----- 제5조의 지원계획----- ----- ----- ----- 조사해야 -----.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u>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u>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대상자 모두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u>노력하여야</u> 한다.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 수업시수 및 교육내용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 ----- 노력해야 -----.
제7조(시설 확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장소 및 시설 확보를 위한 시·군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u>노력하여야</u> 한다.	제7조(시설 확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담당 교원 및 지도자 <u>확보에</u>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교원 연수 등) ① ----- -----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조치)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u>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u>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u>하여야</u> 한다.	제9조(안전조치) ----- 생존수영교육시 ----- ----- ----- 해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생존수영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제10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연수 및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역량을 갖춘

현행	개정안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생략)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삭 제>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생략) 3. “입법예고”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1. -----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 2. (현행과 같음) 3. -----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 ----- ----- -----. <삭 제>

따른다. ② 자치법규 입법안은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기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개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3조(입법예고)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문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을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은 별지 서식을 사용하여 도민이	<삭 제>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생 략)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u>유의하여야</u> 한다.	② ----- ----- ----- ----- ----- ----- <u>유의해야</u>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u>통지하여야</u> 한다.	③ ----- ----- ----- ----- <u>통지해야</u> -----.
④ 교육감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입법안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 <u>상정하여야</u> 한다.	④ ----- ----- ----- ----- <u>상정해야</u> -----.
제9조(공청회) ① (생 략)	제7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u>공청회에 관하여</u> 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른다.	② ----- <u>공청회는</u> ----- ----- ----- -----.
제10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 운영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 -----.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로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6. “통합관제센터”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시장·군수가 강원자치도민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자료수집, 자료제공, 공익을 위한 연계활용 등의 관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 ----- -----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 고정형 영 상정보처리기기 ----- ----- ----- -----.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 ----- -----.

현행	개정안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u>영상정보처리기기</u>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u>영상정보처리기기</u>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u>영상정보처리기기</u>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u>영상정보처리기기</u>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u>영상정보처리기기</u> 설치 근거 및 목적 2. <u>영상정보처리기기</u>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u>영상정보처리기기</u>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4. ~ 8. (생략) 9. 그 밖에 학교장이 <u>영상정보처리기기</u>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u>영상정보처리기기</u>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u>영상정보처리기기</u>를 설치하려는 학교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 감시지역) <u>영상정보처리기기</u>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1.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2.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3.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4. ~ 8. (현행과 같음) 9. -----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② -----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제7조(의견수렴)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제8조(필수 감시지역)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내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생략)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제9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 --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 -----. ② -----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 -----. ⑤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 ----- ----- -----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 1. <u>설치</u> ----- 2. (현행과 같음) 3. <u>관리책임자의</u> -----

[붙임 3]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38호

상위법 개정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규칙의 개정으로 법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교육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상위법 개정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규칙의 개정으로 법 적합성 확보
- 장기간(10년 이상) 개정하지 않은 교육규칙 현행화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교육규칙 조문의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 e-mail: njhlkm96@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담당자 노진희, TEL : 033-258-54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일괄개정규칙안 1부.
2. 신규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 호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7일 이상 공고하여야”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 중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를 “합의사항은”으로 한다.

제6조 중 “파악하여야”를 “파악해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교육현장연구원제 운영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현장연구원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현장연구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장(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이하 “정보원장”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이하 “유아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진흥원장은 선발된 자를”을 “유아교육원장은 선발된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날”을 “날”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6조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위원회에서”를 “운영위원회”로, “이송하여야”를 “이송해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입상자는 연구보고서에 의한”을 “입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보고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상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를 “입상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로 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안에 관하여는”을 “제안은”으로,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자료로서”를 “자료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완기간”을 “기간”으로,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 소속 하에”를 “교육감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심사·결정하여야”를 “심사·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안에 대해서는”을 “제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통지에 관하여”를 “통지”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를 “관계법령”으로, “제안자에 대하여”를 “제안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후 「공무원제안규정」 제14조”를 “후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로, “「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제4항”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제안자에 대하여”를 “제안자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안자에 대하여”를 “제안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20조”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0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등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보존·관리하여야”를 “보존·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제하여야”를 “공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한다.

제22조 중 “기록·관리하여야”를 “기록·관리해야”로 한다.

제23조 중 “활용하여야”를 “활용해야”로 한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위원장이그”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를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학사로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에 대하여”를 “위원회에”로 한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학교간” 을 “학교 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졸업생수” 를 “졸업생 수”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찬성” 을 “찬반” 으로 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 를 “한 번만” 으로 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의 개정) 위탁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탁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을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교육기관” 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위탁교육대상자” 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대안교육기관” 을 “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를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을” 로,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 을 “교육프로그램”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한 일반적”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 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는” 을 “경우에는”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학교내” 를 “학교 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등” 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퇴학처분 등” 으로, “고지하여야” 를 “고지해야” 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을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을 “교육과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당해 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을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 연계를 위해” 로, “운영할” 을 “설치·운영할”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를 “위탁교육기간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소속학교” 를 “원적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각호에 1” 을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를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안내)”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 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안내” 로 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장·부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 자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보관하여야”를 “작성·보관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한다”를 “심사한다.”로 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최근 3년 내”를 “해당 안전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심의”를 “심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를 회피하여야”를 “심사를 회피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를 “심사”로 한다.

제6조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우에 이를”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9조 중 “경우,”를 “경우”로, “요구하여야”를 “요구해야”로, “요구를”을 “요구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수급인은 제9조”로, “대하여 수급인이”를 “대하여”로, “변경보완”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후”를 “후 재심사를 한 날부터”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규정”으로 한다.

제9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용하여서는 아니”를 “허용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3호”를 “제1호, 제3호”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으로,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신청한 경우”를 “신청하면”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제5조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교육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하여 표창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부서 및 교육감 산하기관의 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각급 공무원의 임용령의 승진임용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희망근무지역 및 부서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우선 전보

제5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의 지급 및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매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2년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및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교육상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기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추천) 교육상 대상자의 추천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교육장, 고등학교장, 직속기관장, 본청의 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제4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상인원은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제1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 -----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해야 -----.
②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② ----- ----- ----- ----- ----- 보고해야 -----.
제4조(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생 략)	제4조(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	② ----- ----- ----- ----- ----- ----- ----- ----- 통보해야 -----.
③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했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	③ ----- ----- ----- ----- ----- ----- -----

	----- <u>통보해야</u> -----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 ----- ----- ----- <u>제출</u> <u>해야</u> ----- ----- ----- --.
제5조(협의회 회의록 등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u>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u>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회의록 등 작성) ----- ----- ----- <u>합의사항은</u> ----- -----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u>파악하여야</u>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 ----- ----- ----- <u>파</u> <u>악해야</u> ----- <u>보고해야</u> -----.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현장연구원제 운영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현장연구원의 구성) 현장연구원의 대상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제3조(현장연구원의 구성) ----- ----- <u>다음 각 호와</u> ----- -----. 1. 2. (현행과 같음)
제4조(현장연구원의 선발 등) ① <u>현장연구원을 희망하는</u>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학교장(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이하 “정보원장이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이하	제4조(현장연구원의 선발 등) ① <u>현장연구원을 희망하는</u>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장(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이하 “정보원장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이하

현행	개정안
하 “유아교육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별 교육현장연구위원운영위원회에서 제1항의 현장연구원 희망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연구원장, 정보원장 및 <u>진흥원장은 선발된 자</u> 를 현장연구원으로 위촉한다.	② ----- ----- ----- ----- <u>유아교육원장은</u> <u>선발된 사람을</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현장연구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u>날로부터</u> 과제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 <u>날</u>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u>회무</u> 를 총괄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 <u>업무</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운영위원회에서는</u> 의결한 사항을 그 소속 기관장에게 <u>이송하여야</u> 하며, 소속 기관장은 이를 확정된 후 교육감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⑤ <u>운영위원회</u> ----- ----- <u>이송해야</u> ----- ----- <u>보</u> <u>고해야</u> -----.
제8조(연구대회 입상자 선정 및 평정) ① 연구대회의 <u>입상자는 연구보고서에</u> 의한 연구과제의 수행 내용 및 연구 방법, 현장 공헌도 등을 종합·분석하여 선정한다.	제8조(연구대회 입상자 선정 및 평정) ① ----- - <u>입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보고서의</u> ----- -----.
② 연구대회의 <u>입상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및 제37조에</u> 따라 시·도규모의 연구대회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되 입상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② ----- <u>입상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u> <u>제35조</u> ----- -----.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u>제안에 관하여는</u>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u>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u>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 <u>제안은</u> ----- ----- <u>제외하고 이 규칙에서</u> -----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과 같다</u> .	제3조(정의) ----- ----- <u>다음 각 호와</u> ----- -----.
1. “제안”이란 공무원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u>아니하는</u> 것을 말한다.	1. ----- ----- ----- ----- ----- ----- ----- <u>않는</u>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 <u>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u>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가. ----- ----- -----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
나. ~ 마. (생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편·팩스 또는 「 <u>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전자메일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u>제출하여야</u> 한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라 ----- ----- ----- <u>제출해야</u> ----- ----- ----- ----- <u>제출해야</u> -----.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인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교육지원과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에 따른 제안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하고,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한 후 그 제안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미 접수된 제안과 같은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② -----

----- 기재해야 -----.

③ -----

----- 첨부해야 -----
----- 자료로 -----.

제6조(제안의 접수) ① -----

----- 해야 -----.

② -----

----- 통지해야 -----.

③ -----

----- 앞는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

----- 앞는다.

② ----- 기간 -----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제안심사회의 구성·운영) ①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제안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9조(심사기준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는 소관부서의 장이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③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 않는 -----
-----.

제8조(제안심사회의 구성·운영) ① -----

--- 교육감은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심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려해야 -----
-----.

③ -----
----- 심사해야 -----

제출해야 -----.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 심사·결정해야 -----
-----.

② -----

----- 통지해야 -----.

제안은 -----
-----.

③ -----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② (생략)

-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제10조제4항에 따른 재심 요청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과 교육지원과장이 재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 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이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소관부서의 장이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재심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불채택제안의 시행사유서를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제안의 창안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제14조(인사상 특전) ① 교육감은 아이디어제안이 채택

----- 결정해야 ----- . -----

----- .

- ④ -----

----- . -----
----- 통지 -----
----- .

제11조(의견조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범위 ----- .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

----- 통지해야 ----- .

- ② -----

----- 제출해야 -----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제안의 창안등급) ① -----

----- . -----

----- 않는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사상 특전) ① -----

되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인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안자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
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
후 「공무원제안규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 같
은 인사상 특전을 중복하여 부여하지 않으며, 제1항
에 따라 특별승진된 사람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되
어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진된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제4항과 「지방공무원 보수규
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15조(부상)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택제안
의 제안자(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
자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였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9
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
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6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
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
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 관계법령 -----
----- 제안자에게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후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
조 -----

-----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 -----

-----.

제15조(부상) ① -----

----- 에게 -----
----- 제안자에게 -----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상여금 지급) ① ----- 제안자에게 -----

-----.

1. ~ 3. (생 략)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무원채용규정」 제20조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다.

③·④ (생 략)

제1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리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1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지체 없이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0조(관리기간) ① 교육지원과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은 불채택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채택결정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무원 채용 규정」 제20조-----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등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제1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

----- 시행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출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관리기간) ① -----
--- 대하여 -----
----- 해
야 하며-----
----- 보존·관리해야 -----.

② -----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제16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2. (생 략)

제22조(제안관리기록부) 교육지원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책입안과 행정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앞는
다.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

----- 제출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제해야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앞으면 -----
-----.

1. 2. (현행과 같음)

제22조(제안관리기록부) -----

----- 기록·관리해야 -----.

제2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

----- 활용해야 -----.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학생 추첨·배정과 관련하여 <u>교육감</u> 이 의뢰하는 사항	5. ----- - <u>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u> (이하 “ <u>교육감</u> ”이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부위원장</u> 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u>부위원장</u> 이 -----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u> .	제7조(간사) ----- ----- <u>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u>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학사로 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 <u>위원</u>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 <u>위원에게</u> ----- ----- -----.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타당성 조사)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 ① ----- ----- ----- -----.

1. <u>학교간</u> 거리, 교통의 발달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2. 향후 5년간 <u>중학교 졸업생수</u>와 <u>고등학교 입학정원</u>의 적정 균형 여부 3. ~ 8. (생 략) ② (생 략) 제4조(여론조사) ① (생 략) 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u>찬성</u> 여부로 결정한다.	1. <u>학교 간</u> ----- ----- 2. ----- <u>졸업생 수</u>----- -----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여론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찬반</u> -----.
--	---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조(임기) ① ----- ----- ----- 한 번만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지정 및 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위탁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u>	<u>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당해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교육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위탁교육대상자”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 ----- ----- 기관----- -----.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을 ----- --- 교육프로그램----- ----- ----- -----.

현행	개정안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u>필요한 일반적</u>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 ----- <u>필요한</u> ----- -----.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u>각호의 1</u> 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u>자</u> 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u>학교내</u>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3. (생략) ② 학교의 장이 <u>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u> 에 의하여 퇴학처분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u>고지하여야</u> 한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생략)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u>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u> 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 <u>각호</u> -----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 ----- <u>각 호</u> ----- -----. 1. ----- ----- <u>경우에는</u> ----- ----- 2. <u>학교 내</u> ----- ----- ----- ----- ----- 3. (현행과 같음) ②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퇴학처분 등----- ----- <u>고지해야</u> -----.
제6조(위탁기간)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위탁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을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생략)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u>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u> 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교육과정</u> -----

현행	개정안
	-.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당해 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대안학급(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 연계를 위해 ----- ----- 설치·운영할 -----.
제8조(학사관리)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시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① ----- 위탁교육기간을 ----- ----- ----- -----.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 ----- ----- ----- ----- 원적교 ----- -----.
③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 ----- ----- 따른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생략)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 ----- 따라 ----- ----- ----- 각 호 ----- -----.
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1. ----- ----- 해당 -----

현 행	개 정 안
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u>열람하게 하거나 고시</u>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안내) ----- ----- ----- ----- <u>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u> <u>에 안내</u> -----.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u>위원장·부위원장</u>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 ----- <u>위원장 및 부위원장</u> ----- ----- --.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u>위촉한 자로 한다</u> .	② ----- ----- ----- ----- <u>위촉한다</u>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u>작성·보관하여야</u> 한다.	④ ----- <u>작성·보관</u> <u>해야</u> -----.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제3조(기능) ① ----- ----- ----- --.

1. (생 략)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의 100분 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4. 5.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1. 2. (생 략)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이 있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3. (생 략)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생 략)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삭 제>

4. 5. (현행과 같음)

② -----
----- 심사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

-----.1. -----
- 사람이 -----

2. 3. (현행과 같음)

4. ----- 해당 안건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 (현행과 같음)

② -----

----- 심사-----

-----.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심사요청 등) 발주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심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한 경우,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결정해야 -----
-----.

③ -----
----- 심사를 회피해야 -----.

④ -----

----- 심사 -----

-----.

제6조(심사요청 등) -----

----- 요청해야 -----
-----.

제7조(회의소집 및 심사) ① -----

----- 경우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있다.

제9조(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

----- 경우 -----
----- 요구해야 -----
----- 요구에 -----
-----.

제10조(재심사) ① 수급인은 제9조 -----
----- 대하여 -----

-----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본청에 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 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u>통지하여야</u> 한다.	----- -----. ② ----- <u>따른</u> ----- ----- ----- 후 재심사를 한 날부터 ----- ----- <u>통지해야</u> -----.
제11조(심사결과 공개)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u>공개하여야</u> 한다.	제11조(심사결과 공개) ----- ----- <u>공개해야</u> -----.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u>규정에서 정하는 바</u>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 ----- ---- <u>규정</u> ----- -----.

제9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u>허용하여서는 아니</u>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u>경우에 한정한다</u>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 ----- ----- ----- ----- ----- -- <u>허용해서는 안</u> -----, ----- 제1호, 제3호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 --- <u>경우로 한정한다</u>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u>신청한 경우</u>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u>확인하여야</u> 한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 ----- <u>신청하면</u> ----- ----- ----- ----- <u>확인해</u> <u>야</u>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u>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u>결정하여야</u>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u>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취해야-----.</u>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 ----- ----- ----- <u>결정해야</u> -----.
--	---

[붙임3]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

시 군 행 정

원주시 고시 제2024-61호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9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9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2월 29일

원 주 시 장

- 가. 변경사유: 원주시의회동 증축 및 시청 주차장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9호)의 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
- 나.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9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1) 공공·문화체육시설
- 가) 공공청사
 - (1) 공공청사9호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시청	공공청사	원주시 무실동 1번지	109,574	감) 332.3	109,241.7	강고 제2003-316호 (04.01.03)	공부 정정

- 공공청사9호 규모 변경

구분	건폐율(변경)	용적률(변경)	높이(변경없음)
기 정	10%	30%	지하2층, 지상12층이하
변 경	20%	40%	지하2층, 지상12층이하

(2) 공공청사9호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시청	• 면적 변경 (구역 변경없음) -109,574㎡ → 109,241.7㎡ (감: 332.3㎡) • 건축물 규모 변경 - 건폐율 10% → 20% 변경 (증: 10%) - 용적률 30% → 40% 변경 (증: 10%)	• 지적 공부면적 정정 및 의회동의 사무공간, 민원응대 공간 등이 부족하여 증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청사 증축 및 장래 확장성을 위하여 건폐율, 용적률 변경(상향)함

다. 도면게재: 생략

원주시 고시 제2024-62호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원주시 계획관리지역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원 주 시 장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 산업 생산 활동의 지원 및 산업기능의 합리적인 집산화 입지 유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위치: 원주시 계획관리지역 일원
- 면적: 120.7km²(구역 총 21개소)

3. 성장관리계획 수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도서 및 시행지침: 게재 생략(도시계획과 비치)

5. 성장관리계획 시행일: 2024. 3. 4.(월)부터

삼척시 고시 제2024-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삼 척 시 장

1. 사업주체 상호 및 소재지

- 상 호 : (주)하일 대표 신광식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48번길 14, 4층 421-1호(야탑동,엔즈빌오피스텔)

2.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135-1번지 외 6필지
- 대지면적 : 16,864㎡
- 건축면적 : 6,731.4227㎡
- 연 면 적 : 64,614.6130㎡
- 사업규모 : 아파트 4동 및 부대시설 15동 / 359세대
- 평형별세대수 : 84㎡형 - 309세대, 98㎡형 - 47세대
132㎡형 - 2세대, 147㎡형 - 1세대
- 층 수 : 지하2층 / 지상29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사 업 비 : (당초) 132,000백만원
(변경) 160,000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2. 06. 01. ~ 2024. 09. 30.

(변경) 2022. 06. 01. ~ 2026. 12. 31.

4.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허가

5. 의제사항 고시 목록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고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제 협의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13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9호선) 사업

나. 명칭 : 삼척 교동 도시계획도로(중로1-19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하일 [대표이사: 신 광 식]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48번길 14 (야탑동)

4. 사업의 면적 규모

가. 사업의 면적: 2,532㎡

나. 사업의 규모

구 분	총 계 획	금회 시행 계획	기점~종점	기능 / 사용형태	비 고
도시계획도로 (중로1-19호선)	B=20m, L=418m	B=20m, L=113m (일부구간 시행)	대로3-5 교동100-5도 ~ 중로2-18 교동219-1도	집산도로 / 일반도로	기부채납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착수예정일 : [기정] 2022. 6. 1. → [변경] 2024. 2. 1.

나. 준공예정일 : [기정] ~2024. 9. 30. → [변경] ~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소계	총 7필지							
삼척시 교동	100-3	잡	283	106	강원 삼척시 근덕면 문의재로 3362-***	김*화		
	100-5	도	8,602	114	국토해양부	국		
	722-4	천	4,662	406	국토해양부	국		
	722-6	대	147	35	강원 삼척시 근덕면 문의재로 3362-***	김*화		
	789	도	8,356.1	121	삼척시	공		
	산136	임	3,669	974	경기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 ***동 ****호	강*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48번길 **, ***-*호	(주)하*		
	산137	임	1,151	776	경기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 ***동 ****호	신*식		

※ 기타(물건 등):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제29조에 따름(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시계획도로(중로1-19호선) - 금회

삼척시 고시 제2024-4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가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삼 척 시 장

1. 사업주체 상호 및 소재지

- 상 호 : 신영부동산신탁(주) 대표 박순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2.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외 29필지
- 대지면적 : (당초) 26,095.0㎡
(변경) 26,068.1㎡
- 건축면적 : 4,544.32㎡
- 연 면 적 : 127,208.45㎡
- 사업규모 : 아파트 6동 및 부대시설 13동 / 736세대
- 평형별 세대수 : 74㎡형 - 218세대, 84㎡형 - 320세대
99㎡형 - 128세대, 114㎡형 - 70세대
- 층 수 : 지하4층 / 지상 36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 업 비 : 207,791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 2021. 03. 08. ~ 2024. 02. 28.

4.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5. 의제사항 고시 목록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협 의 조 건

1.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중 협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시에는 『주택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검사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미리 준공 검사 협의하고 사용 검사 후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귀속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협의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타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 또는 승인이 요구 되는 경우 사업 시행 전 반드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도로 사업 시공 시, 측량 말목 보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 사업 시행으로 타인의 재산 및 공익에 피해를 주었을 시, 시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고 제반 민원 처리 및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가(협의)권자가 별도 지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행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5. 협의 조건 미 이행 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협의) 사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실시계획 준공예정일까지 준공을 완료하셔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울 시 실시계획 변경 인가(협의) 절차를 거쳐 기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7. 이행보증금 제출 후, 인가·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8차) 승인 신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제협의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호선)
 - 나. 명칭 : 삼척시 정상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호선)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신영부동산신탁(주) [대표: 박순문]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8층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구 분	사업의 면적	노선 규모(m)	금회 시행 계획	비고
도시계획도로 (대로3-5)	3,386㎡	B=32m, L=3,163m	B=32m, L=105m	육교 위치 조정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계속)
 - 가. 토지조서(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소계	총 5필지		14,268.4	3,386			
삼척시 정상동	347	도	9,957	1,928	건설부	국	
	354-2	도	73	73	건설교통부	국	
	457-7	도	3,521.4	795	삼척시	공	
	산25-23	도	717	538	강원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	김*동	
					강원 삼척시 정상동 9*	김*열	
					강원 삼척시 남양리 1**	김*석	
					강원 삼척시 남양리 1**	김*석	
					강원 삼척시 *리*반	김*용	
					강원 삼척시 정상동 38*-*	신*갑	
					경기 안양시 호계동 994-**	신*선	
					강원 삼척시 정상동 34*-*	신*갑	
					강원 삼척시 정상동 산**	신*선	
					충북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1**	진*탁	
					강원 삼척시 정상동 2**	이*우	
					삼척시	공	
					기획재정부	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354-1	대	2,259	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 *층(여의도동)	**부동산 신탁(주)	

※ 기타(물건 등):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일 : 2020. 12.

나. 준공예정일 : ~ 2024. 2. 29.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제29조에 따름(도시계획도로(대로3-5호선) - 금회사업구간 전체)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비행정청)에 따른 이행보증금 산출근거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

■ 산출내역

가. 총사업비(공사비): 2,162,150,000원 (금 이십일억육천이백일십오만만원)

나. 이행담보금: 432,430,000원 (금 사억삼천이백사십삼만원)

→ 총사업비의 20% : $2,162,150,000 \times 20\% = 432,430,000$ 원

■ 납부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시 보증보험의 기간은 허가기간 만료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시행 기간에 따름)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

삼척시 고시 제2024-50호

조비천 재해 예방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삼척시 공고 제2023-775호로 소하천정비 시행 계획 공고되고,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하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조비천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삼 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분동 2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소하천정비) 사업

나. 명칭 : 조비천 재해 예방 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삼척시장(도시과장, 건설과장)

나.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가. 사업의 면적: 8,341㎡

나. 사업의 규모

시 설 명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금회 사업 규모			비 고 (집행 구분)
	연장(m)	폭원(m)	면적(㎡)	연장(m)	폭원(m)	면적(㎡)	
합 계	-	-	-	-	-	8,341	
하천178(조비천)	462	22~25	10,761	462	7~23	6,116	건설과장 시행
소로1-18(동해대로)	204	10	-	37	10	615	
소로2-113(오분1길)	561	8	-	66	8	770	
소로2-166(오분길)	391	8	-	88	8	840	도시과장 시행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사업착수일 : 2023. 05. 12.

나. 준공예정일 : 2025. 12. 31.

[당초] ~ 2023. 12. 31. → [변경]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변경)

순 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위치	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오분동	166-11	도	136	122	삼척시	공				
2	오분동	166-10	대	245	165	국토교통부	국				
3	오분동	166-9	대	198	87	국토교통부	국				
4	오분동	166-8	대	205	63	국토교통부	국				
5	오분동	166-7	대	212	62	국토교통부	국				
6	오분동	166-6	대	106	36	국토교통부	국				
7	오분동	166-5	대	248	102	삼척시	공				
8	오분동	166-4	대	344	156	국토교통부	국				
9	오분동	166-15	대	258	98	국토교통부	국				
10	오분동	166-13	대	122	3	국토교통부	국				
11	오분동	166-12	대	188	170	국토교통부	국				
12	오분동	168-2	도	36	1	건설부	국				
13	오분동	166-1	대	95	95	강원 삼척시 정상동 455-2, ***아파트 *-***	김*호				
14	오분동	168-1	도	30	30	건설부	국				
15	오분동	167-3	대	64	2	국토교통부	국				
16	오분동	167-4	천	105	105	건설교통부	국				
17	오분동	167	전	987	450	삼척시	공				
18	오분동	169-4	전	246	246	삼척시	공				
19	오분동	169-5	전	106	106	삼척시	공				
20	오분동	169-3	전	217	217	삼척시	공				
21	오분동	170-2	대	258	195	삼척시	공				
22	오분동	170-1	대	137	5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7*-** **아파트 ****-***	장*훈	강원 삼척시 남양동 **-102	삼척**** 조합	근저당권	
23	오분동	171-3	답	66	38	삼척시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1길 **, ***호(마전동)	장*훈	강원 삼척시 남양동 **-102	삼척**** 조합	근저당권	
24	오분동	171-2	도	218	217	기획재정부	국				
25	오분동	171-1	답	929	471	삼척시	공				
26	오분동	137	대	2,367	514	삼척시	공				
27	오분동	137-7	잡	91	91	삼척시	공				

순 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위치	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28	오분동	137-8	도	408	407	삼척시	공				
29	오분동	137-12	도	113	79	삼척시	공				
30	오분동	134-2	도	404	41	삼척시	공				
31	오분동	137-1	잡	99	91	삼척시	공				
32	오분동	135	잡	8,778	458	삼척시	공				
33	오분동	245-1	전	568	16	환경부	국				
34	오분동	245-2	전	992	479	환경부	국				
35	오분동	236-5	도	61	43	삼척시	공				
36	오분동	282-3	도	336	198	건설부	국				
37	오분동	236-7	전	89	57	삼척시	공				
38	오분동	236-2	전	1,878	13	강원 삼척시 오분동 **2	권*열				
39	오분동	236-6	전	428	34	강원 삼척시 중앙시장길 58, *동 ***호(남양동)	하*수				
40	오분동	236-8	전	172	144	삼척시	공				
41	오분동	283-5	천	696	133	환경부	국				
42	오분동	283	천	16,230	1,443	환경부	국				
43	오분동	284-3	구	52	1	환경부	국				
44	오분동	144-2	도	906	162	강원 삼척군 삼척읍 오분리 **	김*수				
45	오분동	174-1	대	114	90	삼척시	공				
46	오분동	176-6	대	64	64	삼척시	공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	심*중				
47	오분동	174	대	61	40	삼척시	공				
48	오분동	282-4	도	41	13	건설부	국				
49	오분동	176-1	대	184	107	강원 삼척시 마달길 215, 10*동 ***호(마달동, 세영리첼아파트)	김*화	삼척시 · 수원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	심*중 지분압류 (2021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	심*중				
50	오분동	177-2	도	132	7	건설교통부	국				
51	오분동	282-5	도	6,485	22	건설부	국				
52	오분동	176-2	도	304	249	강원도지사	공				
53	오분동	176-5	대	648	54	경기도 시흥시 상직길 4, ***동 ****호(하상동, 연꽃마을 태평아파트)	박*균				

순 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위치	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4-2*	박*규				
						강원 삼척시 오분길 *1(오분동)	이*덕				
합 계				48,457	8,341						

※ 기타(물건 등):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횡성군 공고 제2024-373호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7)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안) 열람 · 공고

벨라45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안)을 열람 ·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 공고 기간 내 횡성군청 도시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횡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산1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7)사업
- 명 칭 : 벨라45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시설명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향후시행면적(㎡)	비 고 (사업분할구분)
체육시설⑦	2,176,397	1,274,077	—	대중제 27홀 (사업시행자 : 우리자산신탁(주))
		902,320	—	회원제 18홀 (사업시행자 : (주)벨라비손)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사업시행자		비고
	성명	주소	
기정	우리자산신탁(주) 대표 이창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삼정빌딩)	대중제골프장
	(주)벨라비손 대표 원종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693, 2층	회원제골프장
변경	우리자산신탁(주) 대표 이종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삼정빌딩)	대중제골프장
	(주)벨라비손 대표 조형도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693, 2층	회원제골프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22. 4. 29.(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 2. 29. ~ 2024. 3. 14. (15일간)
- 장소 : 횡성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 (☎ 033-340-2622)

7.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횡성군청 도시교통과 서면제출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협의완료(붙임 생략)

9.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협의사항 : 해당없음

횡성군 공고 제2024-379호

횡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37호)사업 실시계획 인가(안) 열람 · 공고

횡성읍 중심시가지(등기소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 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횡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26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횡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37호)사업
 - 명 칭: 횡성읍 중심시가지(등기소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구 분	총 면적	기시공	금회시공	향후계획	비 고
주차장 37호	2,821㎡	-	2,821㎡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횡성군수(도시교통과)
 - 주 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4. 12. 31.
6. 열람장소: 횡성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 033-340-2622)
7. 열람기간: 2024. 2. 29. ~ 3. 19.(20일간)
8. 관계도면: 게재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10. 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횡성군청 도시교통과(☎033-340-2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권 리 자		
									주소	성명	
	계	-	-	2,855	2,821	-	-	-	-	-	
1	횡성읍 읍상리	269-1	대	869	855	-	횡성군	-	-	-	
2	횡성읍 읍상리	269-7	대	422	402	-	횡성군	-	-	-	
3	횡성읍 읍상리	514-9	대	180	180	-	횡성군	-	-	-	
4	횡성읍 읍상리	515-6	대	210	210	-	횡성군	-	-	-	
5	횡성읍 읍상리	269-3	대	1,174	1,174	횡성군 횡성읍 교항리 109 보람더하임아파트 103-1103	신형철	-	-	-	

○ 지장물조서

연번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단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권 리 자		
									주소	성명	
1	269-7 (공부상 269-1)	주택	경철강판 지붕 10*5	50.12	m2	횡성군 횡성읍 문정로 47	김염숙	-	-	-	
		점포	경철강판 지붕 7*8	56	m2						
		차양	(알)샷시 카보네이트 2*8 (테크포함)	16	m2						
		차양	목조판넬 3*13	39	m2						
		화장실 및 창고	경철판넬 4.5*3	13.5	m2						
2	269-7	식당	목조강판 지붕 (4.5*6.5)*(8*6.4)	80.45	m2	횡성군 횡성읍 읍상로 27	모경희	-	-	-	
		주택	목조강판 지붕	33.62	m2						
		간이주점	목조 쉼라이트 6.4*3.3	21.12	m2						
		창고	목조함석 5*8.5	42.5	m2						
		창고	목조함석 5*1.5	7.5	m2						
		차양	목조함석 5*8.5	12	m2						
		가추	목조 스테트 5*2.7/1.2	6.75	m2						

영월군 고시 제2024-4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영월군 고시 제2021-256호 (2021.11.16.)로 지정 고시된 “영월 광물자원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영 월 군 수

1. 해제지역

- 명칭: 영월 광물자원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치: 영월군 산술면 화원리 476-4번지 일원
- 면적: 301,643㎡

2. 해제시기

- 제한지역 지정일: 2021. 11. 16.
- 제한지역 해제일: 2024. 2. 22.

3. 해제사유

- 광물자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 후보지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영월군청 도시과 비치)

5. 기타

-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영월군청 도시과(☎033-370-287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고시 제2024-45호

영월 군계획시설(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영월군 고시 제2020-276(2020.12.04.)호로 최초 결정되고 영월군고시 제2024-123(2023.06.13.)호로 변경 결정된 영월 군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영 월 군 수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574-4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영월 군계획시설(공원)사업
- 명칭: 덕포 어린이공원

다.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 2,380㎡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대			전	
	면적	1,670			710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도로,광장	휴게시설	어린이놀이기구	화장실	녹지 및 기타
	면적	392.5	117	757	77.5	1,03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

- 성명: 영월군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자 외의 권리의 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 계		9필지	－	3,301	2,380	－	－	－	－	－
1	덕포리	574-49	대	1,134	1,134	영월군		－	－	－
2	덕포리	574-52	전	363	363	영월군				
3	덕포리	574-165	대	327	327	영월군				
4	덕포리	574-190	전	30	30	영월군				
5	덕포리	574-214	대	147	8	국토교통부				
6	덕포리	574-392	대	484	201	국토교통부				
7	덕포리	574-393	전	289	45	국토교통부				
8	덕포리	574-404	전	292	37	국토교통부				
9	덕포리	574-418	전	235	235	영월군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관리청인 영월군에 무상귀속. 끝.

고성군 공고 제2024-213호

고성 군계획시설(도로: 토성도시계획도로 소2-26)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성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고 성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5-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토성도시계획도로(도로: 소2-26) 개설사업
- 명 칭 : 토성도시계획도로(소2-26)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사업규모

(단위: m)

사 업 명	위 치	총 결정면적	기 시 공	금회시공	미시공
토성도시계획도로 (소2-26)개설공사	토성면 봉포리 산5-2번지 일원	L=1,461 B=8	L=133 B=8	L=510 B=8	L=833 B=8

- 금회 사업면적 : 5,285㎡

※ 기시공의 일부가 금회시공에 포함됨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성군수
- 주 소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마.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 착공일 : 2020. 12. 2.
- 준공일 : 2021. 5. 18.

바. 법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양양군 공고 제2024-194호

주청리 군관리계획[시설도로(중로1류)] 확·포장공사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 “주청리 군관리계획[시설도로(중로1류)]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열람을 실시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안의 토지 또는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양 양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7번지 외 2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양양 군계획시설(도로 : 중로1-13호)사업
- 명 칭 : 주청리 군관리계획[시설도로(중로1류)] 확·포장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총 면적 19,892㎡)

시 설 명	결정현황		기 시 공		금회시공		이후계획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중로1-13	1,489	20	-	-	994	20	495	20	양양군 고시 제2022-192호 (2022. 9. 2.)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양양군수
- 주 소 :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군행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강현면 전진리>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7	차	5,136	1,060	공	양양군			
2	7-64	임	216	216	공	양양군			
3	7-38	잡	519	7	공	양양군			
4	7-13	도	2,142	921	공	양양군			
5	7-63	임	3,722	1,088	공	양양군			
6	7-62	도	840	840	공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1-4	도	928	919	공	양 양 군			
2	1-3	임	665	375	공	양 양 군			
3	1-6	도	505	505	공	양 양 군			
4	1-5	도	317	317	공	양 양 군			
5	2-47	잡	7,094	1,559	공	양 양 군			
6	2-43	잡	165	130	공	양 양 군			
7	1-1	임	20,783	4,232	공	양 양 군			
8	2-62	잡	354	5	주식회사 무궁화신 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퍼센에스타워)	양양군	양양군 군청길 1	
9	2-35	잡	168	130	공	양 양 군			
10	2-49	도	20,129	82	공	양 양 군			

<양양읍 조산리>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440-1	잡	42	42	공	양 양 군			
2	440-11	잡	241	241	공	양 양 군			
3	433-32	임	24,605	4,409	공	양 양 군			
4	433-22	도	3,402	1,961	공	양 양 군			
5	433-40	임	6,379	530	공	양 양 군			
6	433-41	임	4,860	10	공	양 양 군			
7	433-38	도	2,491	208	공	양 양 군			
8	433-35	차	361	105	공	양 양 군	양양군	양양군 군청길 1	

○ 지장물조서

순번	위치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강현면 전진리	가로등		10	EA	양양군		
		CCTV		7	EA	KT		
		변압기		2	EA	한국전력		
2	강현면 주청리	통신주		1	EA	KT		
		가로등		16	EA	양양군		
		CCTV		4	EA	KT		
		변압기		5	EA	한국전력		
3	양양읍 조산리	통신주		2	EA	KT		
		가로등		9	EA	양양군		
		CCTV		4	EA	양양군		
		변압기		2	EA	한국전력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양양군 공고 제2024-203호

양양 군계획시설(시설: 시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1. 양양군 공고 제2021-74(2021. 4. 9)호, 양양군 공고 제2023-948(2023. 8. 25.)호로 고시된 ‘군계획시설(시설: 시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열람을 실시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안의 토지 또는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양양군 청 도시계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양 양 군 수

1. 위 치: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15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군계획시설(시설: 시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 나. 명 칭: 강현농협 본점(하나로마트) 설치 및 소로2-38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1) 시장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결정현황	기시공	금회시공	이후계획	비고
시장	대규모 점포	5,198㎡	-	5,198㎡	-	

2) 도로

시 설 명	결정현황	기시공	금회시공	이후계획	비고
도로 (소로2류38호선)	·L=88m ·B=8.0m	-	·L=88m ·B=8.0m	-	사업규모 (A=723㎡)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변경 예정: 9㎡(당초: 732㎡)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강현농업 협동조합
 - 나.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55 (물치리)
5. 사업기간(변경)
 - 가.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2년

6. 공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033-670-2284]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 시장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면	리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1	강현	물치	131-15	대	5,198	5,19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55	강현농업 협동조합				
소 계					5,198	5,198							

2) 도로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면	리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1	강현	물치	151-5	도	405	40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55	강현농업 협동조합				
2	"	"	131-16	도	294	29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55	강현농업 협동조합				
3	"	"	217-5	구	17	17		"	"				
4	"	"	131-11	전	7	7		"	"				
소 계					723	723							

■ 편입 지장물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1	물치리	130-1	데 크	7.0 × 2.5	36.4	m ²	조*화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웬 스	메쉬웬스	10	m	조*화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감 나 무	유실수	3	주	조*화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3	물치리	130-1	한전주	한전주	1.0	주	-	8358A 861				
			한전주	한전주	1.0	주	-	8358A 871				
			한전주	한전주	1.0	주	-	8358A 872				
			한전주	한전주	1.0	주	-	8358A 976				
4	물치리	130-1	채신주	채신주	1.0	주	-	-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38	8	국지 도로	88	중2-4 물치리131- 4도	물치리151- 1도	일반 도로	-	양양군고시 제2020-208호 (2020.8.14.)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도시계획과(☎033-670-2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